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대중국 종합연구 협동연구 총서 10-03-10

2010년 대중국 종합연구

중국 동포 자녀양육 지원 방안 연구

서문희 이윤진

김진경 최윤경

이정원 박금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10년 대중국 종합연구”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10-03-10	중국 동포 영유아 양육지원 방안연구	육아정책연구소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연구기관 육아정책 연구소	서문희	이윤진, 김진경, 최윤경, 이정원
협력연구기관 중국 연변대학교 조선족 교육연구소	-	박금혜

목 차

표 목 차	iii
그림목차	ix
요 약	x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2절 연구내용 / 3	
제3절 연구방법 / 4	
제4절 연구의 제한점 / 12	
제2장 연구의 배경	13
제1절 국외 외국인 정책의 방향과 유형 / 13	
제2절 선행연구 / 22	
제3장 관련 법 제도 및 정책	37
제1절 국내법 / 37	
제2절 국제협약 / 44	
제3절 지원 정책 / 53	

제4장 국내 거주 중국동포의 육아실태	57
제1절 국내거주 중국 동포 및 자녀 현황 / 57	
제2절 영유아 특성과 발달 / 85	
제3절 자녀양육 가치관과 만족감 / 92	
제4절 보육 및 교육 실태 / 105	
제5절 자녀양육 지원 및 요구 / 122	
제6절 시사점 / 140	
제5장 중국 거주 중국동포의 영유아 육아실태	143
제1절 중국 조선족 인구나 육아지원기관 개요 / 143	
제2절 중국거주 동포의 영유아 자녀 양육자 / 155	
제3절 자녀양육방식 및 가치관 / 169	
제4절 유아교육 실태 / 177	
제5절 시사점 / 183	
제6장 정책 건의	185
제1절 정책 건의의 타당성 / 185	
제2절 국내 조선족 자녀양육 지원 정책 건의 / 187	
제3절 중국 조선족 유치원 지원 정책 건의 / 198	
참고문헌	203
부 록	207
Abstract	225

표목차

〈표 I-3-1〉	국내거주 중국동포 영유아자녀 양육실태조사 항목	5
〈표 I-3-2〉	조사된 부모 및 아동 연령별 수	6
〈표 I-3-3〉	영유아 자녀가 있는 조선족가정 조사 항목	7
〈표 I-3-4〉	가구조사 응답자 특성	8
〈표 I-3-5〉	총 자녀 수	9
〈표 I-3-6〉	자녀 연령 및 성별	9
〈표 I-3-7〉	자녀 출생국가 및 한국거주 경험	9
〈표 I-3-8〉	심층면접 대상자 특성	10
〈표 I-3-9〉	중국 심층면접 대상자 특성	11
〈표 III-3-1〉	재외동포 관련 정책	54
〈표 III-3-2〉	중도입국자녀 학력 지원	55
〈표 IV-1-1〉	재외동포 규모 및 국적	58
〈표 IV-1-2〉	재외동포 체류자격별 현황	58
〈표 IV-1-3〉	재외동포 불법체류 현황	58
〈표 IV-1-4〉	중국동포 자녀 성별 및 연령	58
〈표 IV-1-5〉	중국 외국인 부모 자녀 현황	59
〈표 IV-1-6〉	가구 규모 및 영유아 수 특성	60

〈표 IV-1-7〉 부모 연령	61
〈표 IV-1-8〉 부모 민족	61
〈표 IV-1-9〉 부모 국적	61
〈표 IV-1-10〉 부모 거주국가	62
〈표 IV-1-11〉 한국에 있는 친인척 여부	62
〈표 IV-1-12〉 부모 건강	62
〈표 IV-1-13〉 입국시 사증종류	63
〈표 IV-1-14〉 현재 체류시 사증종류	63
〈표 IV-1-15〉 부모 학력별 한국에 온 이유	64
〈표 IV-1-16〉 부모 한국 체류기간	65
〈표 IV-1-17〉 한국국적 취득 희망여부	66
〈표 IV-1-18〉 한국국적 희망하지 않은 경우 중국으로 갈 시기 ...	66
〈표 IV-1-19〉 자녀의 한국국적 취득 희망여부	67
〈표 IV-1-20〉 부모 최종 학력	69
〈표 IV-1-21〉 부모 직업	70
〈표 IV-1-22〉 부모 1일 노동시간	71
〈표 IV-1-23〉 부모 1주 노동시간	72
〈표 IV-1-24〉 부모 취업 지표	72
〈표 IV-1-25〉 부모 소득	73
〈표 IV-1-26〉 가구 소득 및 지출	74
〈표 IV-1-27〉 가구소득에 따른 취업 지표 현황	75
〈표 IV-1-28〉 현재 주거 형태	76
〈표 IV-1-29〉 주거 형태별 주거 비용	76
〈표 IV-1-30〉 건강보험 및 사회보험 가입 현황	78
〈표 IV-1-31〉 건강보험 가입률 비교	78
〈표 IV-1-32〉 부모 건강보험 월납입액	78

〈표 IV-1-33〉 건강보험 미가입이유	79
〈표 IV-1-34〉 배우자와의 동거여부	80
〈표 IV-1-35〉 자녀의 거주 국가	81
〈표 IV-1-36〉 한국에서의 가족 형태	81
〈표 IV-1-37〉 국내거주 중국동포 가족이 직면한 당면문제	83
〈표 IV-2-1〉 출생순위	85
〈표 IV-2-2〉 막내자녀 부모 결혼상태	86
〈표 IV-2-3〉 자녀의 건강보험 가입여부	86
〈표 IV-2-4〉 자녀의 현재 국적	87
〈표 IV-2-5〉 부모 (최초) 입국시 자녀 동반여부	88
〈표 IV-2-6〉 부모 (최초) 입국시 자녀 연령과 자녀가 한국에서 지낸 총 기간 ..	88
〈표 IV-2-7〉 부모가 인식한 아동 영역별 발달	89
〈표 IV-2-8〉 영유아 국적 특성별 발달에 대한 부모 의견	90
〈표 IV-2-9〉 언어 사용 충분성	91
〈표 IV-3-1〉 자녀양육관	93
〈표 IV-3-2〉 자녀 및 모 특성별 ‘육아와 나의 인생의 중요성’ 인식 차이 ..	96
〈표 IV-3-3〉 자녀 및 모 특성별 ‘엄마의 직접 양육의 중요성’	97
〈표 IV-3-4〉 자녀 및 모 특성별 ‘아이 의사존중 여부’	97
〈표 IV-3-5〉 자녀 및 모 특성별 ‘훈육방법’	98
〈표 IV-3-6〉 자녀 및 모 특성별 ‘아이 능력 계발’	99
〈표 IV-3-7〉 자녀양육시 느끼는 정서	100
〈표 IV-3-8〉 자녀 및 모 특성별 ‘자녀양육시 느끼는 정서’	102
〈표 IV-3-9〉 현재 생활 및 자녀 성장에 대한 만족도	104
〈표 IV-3-10〉 자녀의 성별 및 출생순위 따른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도’	105
〈표 IV-4-1〉 주양육자	107

〈표 IV-4-2〉	제특성별 중국동포 가정의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여부	108
〈표 IV-4-3〉	현재 이용 반일제 이상기관	109
〈표 IV-4-4〉	자녀를 기관에 보내는 이유	110
〈표 IV-4-5〉	자녀를 기관에 보내는 이유(한국)	110
〈표 IV-4-6〉	기관 미이용 이유	112
〈표 IV-4-7〉	중국동포 가정의 현재이용기관 최초이용시기	114
〈표 IV-4-8〉	현재 이용기관의 하루 평균 이용시간	114
〈표 IV-4-9〉	현재 이용 기관 선택 이유	115
〈표 IV-4-10〉	운영주체별 현재 이용 기관 선택 이유(한국)	116
〈표 IV-4-11〉	월평균 기관 이용 비용	117
〈표 IV-4-12〉	월평균 특별활동 비용	117
〈표 IV-4-13〉	기관 이용비용 지원 수혜 여부	118
〈표 IV-4-14〉	기관 이용비용 부담 정도	118
〈표 IV-4-15〉	월평균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비용(한국)	119
〈표 IV-4-16〉	보육·교육 비용 지불 아동 비율	119
〈표 IV-4-17〉	외국인 특별프로그램 혜택 여부	120
〈표 IV-4-18〉	적응정도	120
〈표 IV-4-19〉	기관이용 만족도	121
〈표 IV-5-1〉	자녀양육관련 서비스 제공 충분성_아동에 대한 보호/돌봄	124
〈표 IV-5-2〉	자녀양육관련 서비스 제공 충분성_영양	125
〈표 IV-5-3〉	자녀양육관련 서비스 제공 충분성_진료	126
〈표 IV-5-4〉	자녀양육관련 서비스 제공 충분성_예방접종	127
〈표 IV-5-5〉	자녀양육관련 서비스 제공 충분성_교육	128
〈표 IV-5-6〉	자녀양육관련 서비스 제공 충분성_양육정보	131
〈표 IV-5-7〉	자녀 양육 정보를 구하는 곳	132
〈표 IV-5-8〉	자녀양육관련 서비스 제공 충분성_상담	132

〈표 IV-5-9〉 한국에서 자녀양육의 어려운 점 (1,2 순위)	134
〈표 IV-5-10〉 양육지원 여부 및 지원내용	137
〈표 IV-5-11〉 정부에 바라는 지원 (1, 2순위)	137
〈표 IV-5-12〉 자녀가 한국에서 계속 살기를 바라는 지	139
〈표 V-1-1〉 중국 보육, 유아교육 관련 정책 변화	147
〈표 V-1-2〉 연변조선족자치주 유치원숫자통계 : 2008-2009학년도	148
〈표 V-1-3〉 연변조선족자치주 유치원생 현황 : 2008-2009학년도	148
〈표 V-1-4〉 활동시간표(S시 조선족유치원) : 2010~2011년 1학기	152
〈표 V-1-5〉 교육내용(S시 조선족유치원)	152
〈표 V-1-6〉 S시 H구 조선족유치원 환경 평가표	153
〈표 V-1-7〉 특별활동수업시간표 : 2010-2011년 1학기	154
〈표 V-2-1〉 현재 부모 거주 국가	156
〈표 V-2-2〉 한국에 거주하게 된 이유	156
〈표 V-2-3〉 한국 거주 이유별 자녀를 한국에 데려가지 않은 이유	157
〈표 V-2-4〉 모 학력별 제도적, 경제적 지원 시 한국 거주 여부	160
〈표 V-2-5〉 가족유형	161
〈표 V-2-6〉 현재 영유아 주 양육자	161
〈표 V-2-7〉 한국 거주 이유별 영유아 양육자	162
〈표 V-2-8〉 가구 소득별 영유아 대리 양육인 월평균 임금	163
〈표 V-2-9〉 월평균 시설 이용비: 전문 보모	163
〈표 V-2-10〉 모 학력별 영유아 돌보는 방법	164
〈표 V-2-11〉 부모와 떨어진 후 영유아 영향에 대한 의견	165
〈표 V-2-12〉 모 학력별 대리 양육시 걱정되는 사항	166
〈표 V-3-1〉 내 인생의 중요성 및 직접 양육의 중요성	171
〈표 V-3-2〉 아이 의사존중 여부 및 훈육방법	172
〈표 V-3-3〉 아이 능력 계발	173

〈표 V-3-4〉 자녀 양육시 느끼는 정서	174
〈표 V-3-5〉 현재생활 및 자녀양육 만족도	176
〈표 V-4-1〉 조사대상자가 현재 다니는 기관	177
〈표 V-4-2〉 가구소득별 월평균 유치원 교육비: 부모조사	179
〈표 V-4-3〉 연변·심양 소재 조선족 유치원 사례	179
〈표 V-4-4〉 중국 내 육아지원기관 평가	180
〈표 V-4-5〉 비용부담별 중국 내 육아지원기관 평가 점수	181
〈표 V-4-6〉 가구소득별 3세 이상아 사교육 종류 수	182
〈표 V-4-7〉 가구소득별 사교육 월평균 비용	183

그림목차

[그림 IV-5-1] 자녀양육관련 서비스 및 정보제공 충분성 평균 비교	123
[그림 V-3-1] 중국 동포 자녀 양육관 비교	170
[그림 V-3-2] 자녀 양육 시 정서 비교	175
[그림 V-3-3] 생활 및 자녀양육 만족도 비교	176

요 약

1. 서론

가. 연구목적

- 자녀를 출산·양육하는 중국 동포 가정을 대상으로 자녀 양육 실태 및 관련 가치관을 파악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
 - 또한 저출산·글로벌 시대에 주요한 인적자원이 될 수 있는 중국 동포의 자녀양육 실태 파악 및 지원 방안 모색

나. 연구내용

- 첫째, 국내 거주 중국동포 관련 제도와 정책 실태 파악
- 둘째, 국내 거주 중국동포의 영유아 양육 실태와 자녀 관련 가치관 분석
- 셋째, 중국 거주 동포의 영유아 양육실태와 가치관을 파악하여 국내거주 중국동포와 비교
- 넷째, 외국 외국인 자녀양육 지원 현황을 파악하여 시사점 도출
- 다섯째, 국내 거주 중국동포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서 중국 동포의 자녀 양육 지원 방안을 모색

다. 연구방법

- 국내외 문헌 및 통계자료 수집 정리
- 설문조사 실시
 - 국내 거주 영유아 양육중국 동포 12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실시
 - 중국 거주 영유아 양육 동포 22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실시
- 국내 및 중국 거주 동포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설문 조사 보완 자료로 활용
- 대상 국가(중국) 전문가 및 유관 기관과의 network 구축
 - 중국 연변대학교 민족연구원 조선족교육연구소(소장 박금해)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중국 조선족 대상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실시

2. 연구배경 및 관련 법제도 검토

- 국외 외국인 정책의 방향과 유형 검토
 - 각 국의 이주민 정책은 '사회통합'을 공통적으로 추구하면서 자국의 노동력 충당과 인구증가라는 국력유지를 목적으로 함.
 - 각 국의 시대적 상황과 국민적 요구에 따라 동화주의 또는 다문화주의를 선택하는 양상을 보임.
 - 각 국의 이주민 정책은 자국의 상황에 맞고 국민적 합의에 기반을 둘 때 사회통합 발전에 긍정적일 수 있음.
- 외국인 근로자 아동 관련 연구, 중국 조선족 아동, 가족 관련 연구. 국내 중국동포 관련 연구 검토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함.

- 관련 법·제도 및 정책 검토
 - 제한 외국인을 다룬 관련 법령 및 재외동포 관련 국내 법령 검토
 - 아동권리협약 등 관련 국제협약 검토
 - 국내지원정책으로는 1)해외동포 지원정책과 2)해외동포 자녀양육 지원정책 검토

3. 국내 거주 중국동포의 영유아 육아실태

가. 중국동포 가족 및 자녀현황 특성

- 2009년 기준 한국계 중국인 부모의 영유아 자녀는 약 2,000명 정도로 추정
 - 중국동포의 6.8%는 불법 체류 상태로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거의 대부분이 중국동포임.
- 국내 중국동포 가정은 대부분 '부부+자녀 1인'으로 구성되었음.
- 입국시 사증은 아버지 방문취업(H-2) 31.7%, 어머니 가족초청이 35.8%으로 가장 많았으며 현재는 모두 방문취업(H-2)이 가장 많음.
 - 한국에 온 주된 이유는 부모 모두 '돈 벌기'가 압도적으로 많음. 일부 전문대졸 이상 어머니그룹에서 '자녀교육' 응답비율이 높음.
 - 아버지의 41.7%가 한국국적 취득을 희망하는 반면, 어머니는 16.7%에 그침. 자녀의 한국국적 취득(회복)은 아버지 56.8%, 어머니 60.8%가 희망함.
- 부모의 최종학력은 과반수 이상이 중국 고등중학교 이상이며, 현재 아버지의 85%가 기능·기술·단순노무직에 종사하며, 어머니는 47%가 무직이고, 기능·기술·단순노무직 28.6%, 조리/서빙 12.6%임.
 - 소득은 아버지는 평균 약 168만원, 어머니 약 100만원임.

- 주거형태는 월세가 63.3%로 가장 많으며, 월세 평균은 약 29만원임.
- 건강보험 가입률은 아버지 67.0%, 어머니 64.4%이며, 고용보험에는 아버지 33.9%, 어머니 10.1%만이 가입되어 있음.
- 건강보험 미가입이유로는 '월납입액이 비싸서'가 가장 많았음.
- 국내 거주 중국동포 가족의 당면문제는 경제적 어려움 55.0%, 자녀 양육의 어려움 22.5%, 자녀교육의 어려움 9.2%의 순으로 조사됨.

나. 영유아 특성과 발달

- 조사대상 영유아의 출생순위는 첫째아가 72.1%로 연령이 어릴수록 첫째아 비율이 높음. 어머니의 재혼비율이 아버지의 2배 정도임.
- 영유아의 건강보험 미가입 비율이 32.3%임.
- 영유아는 중국국적이 84.5%이며 14.0%는 무국적임. 이들은 한국 태생 한국 거주가 81.3%이고 중국태생 한국거주는 17.2% 정도임. 중국태생 영유아의 77.3%는 부모와 동반 입국하였음.
- 자녀의 발달·성장의 만족도는 4점 만점 기준으로 신체발달 3.52, 언어발달 3.04, 인지발달 3.09, 정서발달 3.00, 사회성발달 2.94점으로 신체발달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사회성 발달이 가장 낮음.
- 영유아의 26.5%가 한국어 사용능력이 부족하고, 전혀 구사하지 못함도 15.8%임. 중국어는 70%가 전혀 사용하지 못함.

다. 자녀양육 가치관과 만족감

- 응답자의 91%는 '아이를 키우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라고 생각하

지만, 반면에 ‘아이 양육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혼란스럽다’라는 항목에도 약 80% 정도, ‘아이가 장래에 잘 성장할지 걱정된다’는 항목에 92%가 그렇다는 쪽으로 응답하였고, ‘아이가 귀찮고 짜증스러울 때가 많다’에 53%인 절반 이상이 그렇다고 응답하였음.

- 현재 생활에 대해서는 약간 만족과 매우 만족이 69% 정도이고, 자녀 성장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쪽이 거의 90%로 파악되었음.

라. 보육 및 교육 실태

- 설문조사 대상의 영유아 자녀의 60%가 기관을 이용하지 않았음.
 - 한국아동들보다 중국동포 가정의 아동들의 기관 이용률이 낮음.
 - 미취업모는 75.0%, 취업모는 46.0%가 기관을 이용하지 않음.
- 기관은 이용하는 이유 ‘자녀의 교육차원에서’가 52.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부모 취업 등으로 돌볼 사람이 없어서 35.4%’, ‘자녀에서 친구를 사귀게 해주고 싶어서 12.5%’ 순임.
 - 기관을 미이용 이유 1순위는 ‘자녀가 어려서 적응하기 힘들까봐’가 61.1%로 가장 많았고 ‘비용부담’이 34.7%로 주된 이유임.
- 기관 이용시 하루 이용시간은 평균 약 9시간으로, 한국 가정 하루 기관 이용시간이 평균 7시간 21분과 비교하여 길음.
- 기관 이용시 월평균 비용은 약 268,485원이며 특별활동프로그램 이용비용으로 월 평균 28,611원을 추가로 지불함. 기관 이용 비용은 월평균 소득 대비 12.7%임. 한국 가정의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월평균 비용 189,500원, 가구소득 대비 비율 6.4%와 비교됨.
 - 기관 이용 비용 지원은 ‘없다’가 89.6%임.

- 기관 이용시 ‘외국인특별프로그램’의 혜택은 거의 없으나(85.4%), 기관의 적응은 대체로 잘 하며 기관 이용에 있어서도 대부분 만족한다고 응답함(81.3%).

마. 자녀양육 지원 및 요구

- 영유아 자녀에게 제공 서비스의 충분성에 대하여 안정적 보호/돌봄, 균형 잡힌 영양섭취, 아플 때 의료 진료 이용, 예방접종, 아동 교육 등 5개 영역에서 ‘교육’을 제외한 4개 영역에서 평균 3점 이상으로 나타남. 특히 예방접종서비스의 제공에서 약 62% 부모가 ‘매우 충분’하다고 응답한 반면, 자녀 ‘교육’과 ‘영양’의 제공은 때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음.
 - 그러나 부모의 정보제공에 대해서는 불충분이 거의 90%에 달함.
- 한국에서 자녀 양육 시 어려운 점은, 1순위 응답은 ‘양육비 및 병원비 부담’을 70.8%로 가장 많고, 2순위 응답으로는 양육비/병원비 부담 23.7% 외에 부모가 바빠서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적은 것과 ‘아이의 장래에 대한 불안’ 등으로 응답하였음.

바. 시사점

- 중국동포는 대부분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면서 장시간 근로로 월 가구 소득은 100~200만원대인데, 이들의 87%가 한국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하여, 이들 자녀들이 우리의 미래인적 자원이 될 것임을 시사함.
- 중국동포의 전반적 생활여건, 특히 장시간 근로로 자녀 양육환경 역시 열악하지만, 저소득층과 중산층, 합법체류와 불법체류, 건강

보험 가입 가정과 미가입 가정, 맞벌이와 외벌이 가정 등 경제력과 생활상의 차이가 존재함.

-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동포가정 지원 정책과 함께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제공되는 지원정책으로 구분한 접근 필요
- 영유아의 80%이상이 한국 태상이며, 무국적 아동이 14%정도임.
 - 일부 부모의 불법체류 신분으로 인한 자녀의 의료 지원, 심리적 적응과 정체성, 학업의 지속성 등에 어려움이 많았음.
- 건강보험의 가입률이 약 60%대로, 건강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자녀 양육의 어려움과 자녀양육환경의 충분성의 의견에 차이가 있었음.
- 경제적 어려움과 자녀교육의 어려움을 당면문제로 들었음.
 - 동포가정 중 자녀양육지원의 수혜율이 약 4% 수준으로 미미하며, 이도 개별적으로 찾고 구하는 노력에 의한 수혜가 대부분임.
- '부모 대상' 자녀양육 및 교육의 정보 제공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하여 아동 보육·교육서비스 뿐 아니라 부모들에게 구체적 정보 알림과 양육지원의 노력이 요구됨.

4. 중국 거주 조선족의 영유아 육아실태

가. 중국 조선족 인구나 육아지원기관 개요

- 2005년 기준 중국 조선족은 1,923,842명으로 전체 중국 인구의 0.16%, 소수민족의 약 1.8%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
 - 조선족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길림성내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조선족인구수는 842,135명으로 연변주 전체 인구수의 38.6%를 차지
- 2008년~2009년 기준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유치원수는 총 305개이며

민영(개인)유치원은 총 226개로 총 유치원수의 74%임. 이 중 조선족유치원은 19개로 집계되었음.

- 2008년~2009년 연변조선족자치주 유치원 재원아는 32,936명이며 이 중 조선족유치원 재원아는 6,408명으로 19% 정도를 차지함.

- 연변 조선족 유치원에 적용되는 관련 법규로는 「유치원사업규정」, 「연변조선족자치주 유치원 관리규정」, 「연변조선족자치주 개체유치원 관리세칙」 등이 있음.

나. 중국 조선족의 영유아 자녀 양육자

- 영유아의 주양육자는 어머니 35.2%, 조부모 18.6%, 전문보모 6.3%임, 가족유형은 핵가족 58.1%, 한부모가족 15%, 조부모가족 10%임.
- 대리양육 비용은 대체로 월 평균 2,000원미만(한화로 약 40만원)인 것으로 나타남. 조부모는 38.2%가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음.
- 본 조사 대상 가구 중에서도 아버지의 18.5%, 어머니의 12.9%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또한 현재 중국 거주자 중 과거에 한국에 살았던 경험이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약 27%인 것으로 나타남.
- 한국 등에 자녀를 데리고 가지 못한 이유로는 “중국에 두는 것이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더 나을 것 같아서”가 약 40%로 가장 많았음. 그 다음으로 “제도적으로 데리고 나가기가 어려워” 23.5%, “경제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아서” 16.3%, “한국에서 자녀 양육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12.2% 순임.
- 자녀가 초등 4학년 되기 이전에 돈을 벌어서 자녀가 공부할 때는 부모가 뒷바라지해야 한다는 생각 보편적임.

- 부모-자녀의 장기간 별거에 대해 63.3% 정도가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하였음.
 - 질병, 정서적 결함, 외부적 사고가 각각 30% 내외로 걱정된다고 답했고, 6.3%는 학업부진을 지적함.
- 부모와 자식, 부부간의 긴 별거는 어린 아동의 침울 등 정서발달, 영양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가족 해체를 가져오는 사례도 있음.

다. 자녀양육방식과 가치관

- '육아와 나의 인생의 중요성'에 대한 항목에서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육아를 위해 희생가능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이는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동포의 인식과도 일치하는 결과임.
 -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내 인생도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됨.
- 비교적 학력이 높을수록 '3세까지 어머니가 직접 양육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자녀 훈육방법에 대해서도 비교적 체벌보다는 말로 타이르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다소 많았음. 아이능력개발에 대한 결과에서도, 어머니의 90%이상이 대부분 아이 능력은 자라는 환경에 따라 향상된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여 국내조사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남.

라. 유아교육 실태

-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가 빨라지면서 조선족 유치원보다는 조선어와 중국어를 동시에 습득할 수 있는 조선족·한족 연합유치원

이용자가 점차 증가함.

- 조선족 유치원들간의 비용의 격차가 매우 커서, 월 200원 미만을 낸다는 비율이 8%인 반면에 14.7%는 월 1000원 이상을 내고 있음. 정부의 기관 비용에 대한 규제나 지원은 거의 없음.
- 기관 이용 만족도는 4점 만점에서 3.37점으로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응답함. 교사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3.51점도 가장 높았고 시설부문에서는 3.13점으로 가장 낮게 나옴.
- 학업경쟁이 날로 치열해 지면서, 조기교육의 열풍이 뜨거워지고 있음.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 이용이 많아지는 경향을 보임.

마. 시사점

- 부모와의 애착이 형성되어야 하는 시기에 장기간 별거나 자녀에 대한 관심부족은 아동 정서발달 등 아동이 성장이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는 학업 성취에도 영향을 줌.
 - 민간 치원에서 자녀를 중국에 두고 있는 취업 동포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하여 떨어져 있어도 부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이 필요함.
 - 아동이나 가족을 직접 지원하기 어려우므로 유치원을 통한 간접적 지원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5. 정책건의

가. 정책 건의의 타당성

- 국제아동권리협약 등에 의한 아동권리 보장 차원의 접근이 필요
 - 체류 신분 불안정과 낮은 소득으로 자녀 양육 환경이 아동의 성

장과 발달에 필요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에 충분한 환경 조성이 어려움.

-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 인적 자원 개발 차원의 접근
 - 한국에서 자라는 영유아들은 중국인보다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한국 사람으로서 살아갈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들 가정에 대한 양육 지원은 잠재적 한국인에 대한 지원이 됨
- 범 민족적 국가역량 결집 측면에서 접근
 - 우리나라 중국동포 정책의 수립은 동포의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국가역량 결집 차원에서 접근을 요함.

나. 국내 조선족 자녀양육 지원 정책 건의

- 신분의 안정
 - 모든 아동은 어떠한 구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기본 권리를 존중 받고 보장받아야 한다는 보편적인 가치에 근거하여 국내 불법체류자의 자녀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교육이나 건강 관련 정책대상으로 인지할 필요
 - 장기적으로는 동포 자녀의 한국국적 취득을 돕는 절충 방안 고려
- 보육 및 교육 기회 확대
 - 모든 아동에게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보육시설·유치원을 이용시 비용을 일부분 지원하고, 동포 자녀에게 단기적으로 주민번호에 준하는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상급학교 진학 등 공식적 교육과정 이수 관리 방안을 고려
 - 중기적 정책방안으로서 '영주권'만을 취득한 경우에도 자녀에게 한국인과 동일한 교육적 지원을 제공

- 중국 출생 입국 자녀들에 대해서 한국어, 한국 문화, 부모교육,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하고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또는 공공기관을 통해 보급하여 이들의 적응을 지원

□ 의료 지원 방안

- 단기적으로는 영유아 예방접종이나 전염성 질환 예방 정책 대상에 국내 거주하는 모든 영유아를 포함시키고, 동포가정 영유아 자녀의 건강보험 가입을 제고하며, 민간 공제 제도 등 외국인을 위한 의료관련 지원 활동을 적극 안내
- 중장기적으로는 영유아에 한해서 만이라도 국적과 관계없이 기본 의료 서비스 보장 방안 강구

□ 부모 정보, 상담 등 육아 지원 방안

- 보육·교육 기관을 다니고 있는 기관이용 부모 대상의 자녀 양육에의 안내 및 상담 서비스 및 멘토링 제공
- 중국동포 밀집 거주지역 관공서 등에 안내 데스크를 설치하여 영유아기 자녀 양육 정보제공, 상담 등 보다 적극적 지원하고, 중국동포가정이 공동체 네트워크 구성으로 자발적인 원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
- 장기적으로 국내 부모들에게 제공되는 육아 정보 제공과 상담, 안내 등의 모든 서비스가 중국동포가정에도 제공되도록 편입, 확대 과정 필요

□ 전달체계의 거점 마련

- 중국동포가정 지원이 다른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과 구분되는 고유한 영역으로 자리 잡도록 하여 거점 기관과 협력
- 민간 중국동포 지원활동이 자생적으로 성장하여 중국동포가정의 요구와 수요에 적절히 응대할 수 있도록 포용하고 지지

다. 중국 조선족 유치원 지원 정책 건의

- 조선족유치원을 통한 민간 지원으로 간접적 지원 방법을 모색함.
 - 우리의 영어프로그램을 중국 조선족유치원에 보급, 지원하여 영어과 더불어, 우리말도 지속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함.
 - 한국전래, 한국전통놀이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된 교재교구 및 도서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
 -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재조직한다거나 개발하여 보급할 것을 제언
 - 프로그램·교재교구·부모교육 지원은 한국의 유치원·보육시설과 조선족유치원 간에 자매결연 등 민간차원에서 실시할 것을 제언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09년 행정안전부 통계에 의하면 국내 체류외국인이 121만명에 이르고, 재외동포는 약 44만명에 이른다. 재외 동포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자녀수도 증가하고 있다. 국내 거주 재외동포¹⁾ 가정의 구체적 생활상과 양육실태는 이주목적과 정착경로, 특히 출신국가 배경에 따라 다양한 사회문화적 차이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가정의 자녀양육에 대한 국가의 관심도는 매우 낮다.

정부도 늦은 감은 있으나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규모가 점차 확대되면서 정부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로 변경하고 범부처적 작업을 통하여 2008년 12월 「제1차 외국인정책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의하면 재외동포를 1항의 재외국민과 2항의 외국국적동포 등 두 분류로 구분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다루려는 재외동포 범위는 2항을 중심으로 함. 동법 제2조 2항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로 정의되어 있음. 요컨대, 본 연구에서는 해방 이전 식민지 조선을 떠난 조선인들 중에서 현재 외국국적을 취득한 국내 거주 동포들의 육아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9년부터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다문화 관련 사업을 총 망라하여 수록하는 사업시행계획안을 공표하고 있다. 이는 2007년에 제정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에 따라 시행되는 매5년 단위 계획으로, 제3조와 제6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성과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범부처적으로 결혼이민자와 해외동포를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 외국인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에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는 다문화가족은 배우자 중 한 사람이 한국인인 경우로 소극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외국국적 가정은 법 적용에서 배제되며, 자녀가 한국에서 출생했으나 부모 모두 외국 국적자이면 보육료 지원 등의 양육지원 혜택에서 배제되어 있는 등 국내 정책은 재외동포가정에 내재된 다양성과 뿌리 깊은 간극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재외동포 중에서 일제 식민지 시기 만주 지역으로 '이주'(diaspora)한 중국 조선족 동포에 집중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재외동포에서 차지하는 이들의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한국의 재외동포는 2007년 현재 전 세계에 7,044,716명으로 남북한 인구의 약 10%, 그리고 한국 인구의 약 15%에 해당된다. 이 중에서 중국에는 조선족으로 규정된 중국동포가 2000년 기준으로 1,923,800명이 있다²⁾.

국내에 거주하는 해외동포가 최근에 크게 증가하였는데, 국내 거주 해외 동포 중 87%가 중국 동포이다. 해외동포의 국내거주 증가는 2000년 이후 우리나라 해외동포 정책에서 기인한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동포에게 출입국과 체류에 있어서 준 국민에 해당하는 혜택을 받게 한 것은 2001년 11월 29일 헌법재판소에서 "재외동포의 출입

2) 2000년 제5차 인구조사 결과임.

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와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대해 해외로 진출한 동포를 정부 수립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차별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 불일치 판정을 내린 이후부터로, 해외동포 관련법에서 배제된 동포들에게는 2002년 12월 취업관리제(특례고용허가제)가 도입되어 방문동거(F-1-4)로 입국 후 취업자격(E-9)으로 전환하였으며 이어서, 2007년부터는 32개 단순노무직 종사를 전제로 하는 방문취업제(H-2)를 도입하여 이로 한국에 친척이 없는 동포들도 비교적 쉽게 한국에 올 수 있게 되었다.

국내 거주 중국 동포 가정은 한국어를 쓴다는 장점은 갖고 있으나 외국인노동자 가정과 마찬가지로 주로 저임금 비정규직의 노동시장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고, 주거환경도 열악한 경우가 많다. 또한 한국에 친인척이 있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자녀를 출산·양육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현재 국내에 거주하면서 자녀 출산 및 양육을 하고 있는 중국 동포 가정을 대상으로 자녀 양육 실태와 관련된 가치관을 파악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데 일차적 목적을 둔다. 아울러 국내 거주 중국 동포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의 동포들의 자녀양육 실태도 파악하고자 한다. 이들 해외동포의 자녀는 저출산·글로벌 시대에 향후 우리의 주요한 인적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2절 연구내용

연구목적에 따른 구체적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국내 거주 중국동포 및 자녀 관련 제도와 정책 실태를 알아본다.
- 둘째, 국내 거주 중국동포의 영유아 양육 실태와 자녀 양육 관련 가치

관을 분석한다. 주양육자, 가족의 양육참여, 유치원·보육시설 등의 육아 지원 서비스 이용, 양육관련 지원 수혜, 영유아 자녀의 양육비 지출, 영유아 양육의 어려운 점 및 요구, 앞으로의 자녀 양육 계획 등을 파악한다. 또한 자녀 양육관련 가치관, 자녀에 대한 기대 및 신념, 교육관 등의 식을 파악한다.

셋째, 중국 거주 동포의 영유아 양육실태와 양육 가치관을 파악하여 국내거주 중국동포와 비교한다. 이는 국내거주 중국 동포의 양육실태와의 비교 정보로서 활용한다.

넷째, 외국의 외국인 자녀양육 지원 현황 등을 파악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다섯째, 국내외 중국 동포 가정을 위한 영유아 양육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국내거주 중국동포 자녀양육 실태 및 요구도에 기초하여 국내 거주 중국동포 및 재외동포 가정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나가서 중국을 포함한 외국 해외동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제3절 연구방법

1. 문헌 등 자료 수집·분석

관련 선행연구를 수집 분석하고, 현재 우리나라 양육지원 관련 정책 및 법령, 국내 거주 재외동포 현황 등의 통계를 수집·분석한다. 또한 인터넷 검색 등으로 국내외 재외동포 및 외국인 가정 자녀양육 지원 정책 관련 자료 수합·정리·분석한다.

2. 설문조사

가. 한국 거주 중국동포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동포 가정 중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정 129가정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동포 영유아 수는 약 2,100여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들이 본 설문조사의 모집단이다. 그러나 이들의 거주지 관련 정보가 없기 때문에 임의 표집으로 설문조사 대상을 확보하였다. 즉,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 서울시 구로구 조선축교회 등 중국동포가 밀집한 지역과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영유아 가정을 확보한 후, 전문조사원의 방문조사로 실시하였다.

〈표 1-3-1〉 국내거주 중국동포 영유아자녀 양육실태조사 항목

구분	내용
자녀 가족특성 및 일반 현황	- 자녀 건강상태, 국적, 출생 및 거주 국가, 부모 결혼상태 등
자녀의 부모와 가족 일반 사항	- 부모 나이, 민족, 국적, 거주국가, 건강상태, 최종학력, 직업, 월 평균 소득 및 지출, 한국 친인척 가족 유무, 최초 한국 입국 및 체류용 사증, 입국 이유, 한국국적 취득 희망 여부, 보험 가입 여부 - 배우자와 동거 여부, 자녀 거주 국가, 한국 거주 자녀 동거 여부, 가족형태, 가족이 직면한 문제 등
자녀 발달 상태	- 인지발달 등 자녀 발달 상태, 한국어·중국어 사용 능력
자녀양육 방식과 가치관	- 자녀양육관, 자녀 양육 관련 정서, 생활 및 자녀양육 만족도
자녀 양육 지원 및 요구	- 의료서비스·상담·교육 혜택, 양육 애로사항, 양육 지원서비스, 육아정보 취득 경로, 육아지원 관련 요구, 한국 거주 희망 여부, 외국국적 해외동포 자녀에 대한 한국정부의 육아지원정책
육아지원기관 이용 실태	- 주양육자, 이용 육아지원기관, 기관 이용 이유, 선택시 고려 점, 이용 시간, 비용 및 비용에 대한 부담, 특별지원프로그램 수혜, 또래 적응, 기관 이용 만족도

〈표 1-3-2〉 조사된 부모 및 아동 연령별 수

단위: 명

구분	부모		구분	막내 자녀		
	아버지	어머니		전체	남	여
전체	120	120	전체	129	74	55
30세 이하	14	38	0세	25	19	6
31-35세	39	46	1세	39	21	18
36-40세	37	15	2세	29	16	13
41-45세	16	17	3세	12	5	7
46-50세	9	3	4세	13	4	9
51세 이상	9	1	5세	8	5	3
			6세	3	-	3

조사 내용은 일반적 가구 및 부모 사항, 자녀 양육 실태, 자녀 양육 관련 가치관, 향후 계획 등으로 구성되었다(표 1-3-1 참조).

조사에서 파악된 어머니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아버지인 경우 31~40세가 다수이지만 40대, 50대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어머니인 경우에는 아버지보다는 연령대가 젊으나 이 역시 40대가 상당수이다. 조사된 영유아는 영아가 다수이고 유아는 소수였다(표 1-3-2 참조).

나. 중국 거주 동포

중국거주 조선족 가정 중 영유아가 있는 228 가정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는 중국 연변대학교 민족연구원 조선족 교육연구소의 협조로 중국 지린성(吉林省)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내 옌지(延吉)시, 룡진(龍井)시, 투먼(圖門) 3개 시와 요녕성 선양(沈陽)시에서 이루어졌다.³⁾ 조사방법은 조선족 유치원⁴⁾의 협조를 받아서 이를 이용하는

3) 지역명은 이후 편의상 한국식 발음으로 표기하고자 함.

4) 설문조사에 협조한 유치원은 연변대 부속유치원, 투먼시 조선족유치원, 용정시 조선족유치원, 선양시 조선족유치원임.

영유아와 그 가정을 대상으로 부모가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특히 심양시에서는 교육청의 협조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 내용은 한국에서의 조사와 같이 일반적 가구 및 부모 사항, 자녀 양육 실태, 자녀 양육 관련 가치관, 향후 계획 등으로 구성하였고, 부분적으로 중국 현실에 적합하도록 보완하였다(표 I-3-3 참조).

〈표 I-3-3〉 영유아 자녀가 있는 조선족가정 조사 항목

구분	내용
학부모 및 가족 일반 특성	- 부모 나이, 민족, 학력, 현재 거주국, 직업, 월평균 가정 수입, 자녀 수 등
자녀 일반 특성	- 자녀 나이, 출생 국가, 성별, 한국 거주 경험 여부 - 주양육자, 대리 양육비, 육아지원 기관 이용, 기관 이용 비용, 사교육 이용 및 비용 등
자녀양육 방식과 가치관	- 자녀양육관, 자녀양육에 대한 만족도, 자녀 양육 관련 정서, 중국내 양육기관에 대한 의견
부모 한국 거주 시 자녀 양육 실태	- 부모 한국 거주 이유, 양육자, 자녀 미동반 이유, 부모와의 격리가 자녀에게 미친 영향, 대리양육시 우려 사항 등 - 자녀 동반시 육아지원기관 이용 경험, 사교육 이용 경험, 주 사용 언어, 중국으로 돌아온 경우 그 이유, 한국에서 자녀 양육시 어려움 등
한국 육아지원기관 및 정책에 대한 요구	- 한국 육아지원기관 이용 희망 여부, 한국 기관에 대한 의견, 육아지원 요구 등

조사된 가정 부모의 특성은 연령은 30대가 다수이며 일부가 모 또는 부가 한족 등 조선족 이외 민족이며,⁵⁾ 학력은 부는 약 47%정도가 3년제 대학이상이며 모 역시 40.6%가 3년제 대학이상으로 고학력자가 다수 조사에 포함되었다. 그러므로 직업 역시 부의 경우 전문직과 사무직이 약 50% 정도가 되었고, 어머니도 약 75%가 취업중이었는데, 36.8%가 전문직과 사무직이었다(표 I-3-4 참조).

5) 부의 3.3%, 모의 5.6%만이 조선족 이외 민족임.

가구 월 평균 소득은 응답자 중국화폐로 평균 5,405원으로 조사되었다. 6) 분포상으로는 4,000원~6,000원 미만이 다수이지만 10,000원 미만도 13%이다. 7)

〈표 1-3-4〉 가구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명)		
구분	부	모	구분	부	모
부모 나이			부모 직업		
30세 미만	4.5	15.2	전문직	24.4	26.2
30~40세 미만	62.9	69.8	사무직	24.5	10.6
40~50세 미만	30.6	14.7	판매서비스	11.5	9.1
50세 이상	2.0	0.5	농업	2.0	0.7
계(수)	100.0(203)	100.0(205)	기술 기능	6.7	1.4
부모 학력			단순노무	4.0	2.1
무학소학교	0.5	0.5	무직	4.1	23.4
초중	13.6	16.0	기타	0.7	0.7
고중	26.3	26.4	자영업자	21.8	25.5
중등전문학교	13.1	16.5	계(수)	100.0(147)	100.0(141)
대학전과 (3년제이하)	14.6	13.7	가구 월평균 수입		소득
대학교 (4년제본과)	20.7	13.2	2000원 미만		4.3
인민대학교	8.9	9.0	2000~4000원미만		28.8
연구생 이상	2.3	4.7	4000~6000원미만		34.0
계(수)	100.0(213)	100.0(212)	6000~10000원 미만		19.1
			10000 이상		13.3
			계(수)		100.0(156)

한편 가정의 자녀는 1명이 71.9%, 2명 이상이 27.9%로 모두 255명의 자녀가 조사되었다. 조사는 유치원을 중심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유아가 다수이었다. 성비는 약 50:50으로 균형을 이루었으며 3.1%가 한국에서 태어났고, 9.8%가 한국에 살았거나 다녀온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6) 무응답자가 많은데,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들이 무응답 가능성이 높아서 응답자 특성 참고 이외의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움.
7) 중국 1인당 GDP는 4,000달러 정도로 추정함.

〈표 1-3-5〉 총 자녀 수

단위: %(명)

구분	1명	2명	3명	계(수)
전체	71.9	27.2	0.9	100.0(228)

〈표 1-3-6〉 자녀 연령 및 성별

단위: %(명)

구분	연령							성별		계(수)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이상	남	여	
전체	1.6	2.0	6.8	15.1	24.3	25.9	24.3	49.6	50.4	100.0(251)

〈표 1-3-7〉 자녀 출생국가 및 한국거주 경험

단위: %(명)

구분	자녀 출생국가			한국거주 경험		계(수)
	중국	한국	기타	경험 있음	없음	
전체	94.9	3.1	2.0	9.8	90.2	100.0(255)

3. 심층면접조사

심층면접조사는 국내 거주 중국 동포 10사례, 중국거주 동포 영유아가 구 10사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심층 면접 대상자 선정은 한국에서는 서울시 영등포구 어린이집, 구로구 조선족교회, 안산시 외국인 주민센터의 지원을 받았으며, 중국에서는 중국 연변대학교 민족연구원 조선족 교육연구소의 협조로 연길시와 심양시에서 실시하였다.

심층면접 대상은 한국에서는 주로 부모와 양육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하였고, 중국에서는 부모 이외에 주 양육자로 보모, 그리고 유치원 교사와 원장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였다. 특히 중국에서의 심층면접

은 현재 자녀 양육 실태 이외에 일부 과거 국내 거주 경험이 있는 가정 사례를 발굴하여 당시 한국에서의 자녀양육 실태, 어려운 점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표 1-3-8〉 심층면접 대상자 특성

번호	연령	자녀	직업	사증상태	배우자	기타 가족
어머니 1	만38세	여(11세)	식당일	불법체류	건설 근로자	사망한 친정어머니가 한국국적 획득
어머니 2	만36세	남(8세)	주부	불법체류	산재판정	시누이 한국국적 획득
어머니 3	만29세	여(0세)	식당일	불법체류	건설 근로자	시누이 한국 거주
어머니 4	만46세	여(4세)	식당일	영주권 획득	한국거주 일용직	아들(20세) 중국 거주
어머니 5	만35세	남(13세)	식당일	불법체류	한국에서 강제출국	시어머니 한국 거주
어머니 6	만40세	남(13세)	식당일	불법체류 국적취득희망	합법 체류	할머니(주양육자)와 함께 거주
어머니 7	만48세	남2(5세, 7세), 여1(11세)	식당일	합법체류	건설 근로자	자녀 1명 중국 거주 한국에 친인척 없음
어머니 8	만39세	남2 (만1세, 만12세)	주부	본인 H-2 배우자 불법 체류	건설 근로자	12세 아들은 중국 거주 큰어머니 한국거주
어머니 9	만32세	남(4세)	사무직	방문취업H-2 국적취득중	건설 근로자	친정어머니과 함께 거주
어머니 10	만42세	남(1세), 여(17세)	식당일	불법체류	건설 근로자	중국에 자녀 두고 옴
어머니 11	만32세	남(4세), 여(6세)	주부	합법체류	식당 일	-
아버지 1	만34세	여(만5세)	프리 랜서 번역	합법체류	회사원	-
조모 1	만62세	남(5세)	주부	국적취득 또는 영주권 취득 중	배우자 없음 딸과 거주	사위 사망

〈표 1-3-9〉 중국 심층면접 대상자 특성

구분	지역	연령	특성
어머니 1	2	연길시	35 - 4세 자녀 양육하는 취업모
어머니 2	3	연길시	42 - 아버지는 장기, 어머니는 1년 6개월간 한국 방문, 한국에서 자녀 양육 유경험
어머니 3	4	연길시	42 - 부부 유학생으로 한국 거주 경험
어머니 4	5	도문시	34 - 1년 6개월간 한국 방문
어머니 5		심양시	32 - 자녀 양육하는 주부
어머니 6		심양시	28 - 자녀 양육하는 주부
아버지 1	9	심양시	46 - 부인이 한국에서 취업 중 - 아들 1명 양육 중
조모 1	1	연길시	60 - 두 아들의 자녀 각 1명씩 2명 양육 큰 아들 사망, 며느리는 한국에서 재혼, 작은 아들 부부는 한국에서 취업 중으로 4세 여아만 데리고 있고 3세 아들은 외가에서 양육
보모 1	6	도문시	53 - 한국에 취업중인 부모의 3세 자녀 데리고 삶. - 남편이 한국에 취업중
유치원 교사 1	7	심양시	30 - 조선족 유치원 교사 - 오빠가 한국에서 취업 중
유치원 교사 2	8	심양시	26 - 조선족 유치원 교사
유치원 원장 1		연길시	54 - 조선족 유치원 원장
유치원 원장 2		도문시	55 - 조선족 유치원 원장

4. 전문가 자문회의

중국 동포 가족 및 아동 양육 관련 문제를 파악하고 정책 대안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연구 초반부와 후반부에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였다. 연구 초반에는 주로 설문 구성을 위한 현황 및 문제 파악에 중점을 두었고, 후반부에 정책대안의 타당성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5. 대상 국가의 전문가 및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중국에서는 연변대학교 민족연구원의 조선족 교육연구소(소장 박금해)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중국 조선족 대상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수행하였다.

제4절 연구의 제한점

본 보고서의 제한점은 설문조사 대상의 대표성이다. 국내 거주 중국동포 영유아 가정 조사는 모집단은 규모는 추정되었으나 그 대상 거주지는 파악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이나 중국동포가 모이는 장소를 중심으로 조사 대상자를 확보하였다. 또한 중국에서의 조사도 중국 연변, 도문, 용정, 심양시 조선족 유치원을 다니는 아동 가족을 중심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중국동포 영유아 가정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본 연구의 제한점이며, 동시에 추후에 충족시켜야 할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제2장 연구의 배경

제1절 국외 외국인 정책의 방향과 유형

글로벌 지구촌의 형성으로 경제적 자원과 삶의 터전을 찾아 국경을 넘는 이주민의 수는 전 세계적으로 가파르게 증가해왔으며, 이러한 추세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이주민의 속성은 다양하여, 유입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민, 난민, 외국인 근로자 등으로 구분되나, 이주민 본국의 입장에서 해외로 삶의 터전을 옮긴 자국의 동포가 된다.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이주민은 크게 결혼이민자와 외국 국적의 이주근로자,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조선족 중국동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이들은 현재 외국국적 소유의 이주민임과 동시에 과거 역사적 고락을 공유한 한국인 후손인 동포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국제결혼에 의한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이주근로자 가정의 범주 구분만으로는 부족한, 제3의 시각이 필요하다.

이 절에서는 중국동포 가정에 대한 정책적 고려를 위해 외국에서의 이주민 및 동포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중국동포가정 대상의 구체적 정책 방안의 모색에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1. 이주민 정책⁸⁾

외국의 이주민 정책은 다문화 통합 정책에 해당한다. 우리보다 앞서 주변국으로부터 다양한 이주민을 받아들여온 사례들을 통해 각 국의 정책기조와 그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중국동포 정책의 수립과 구체적 지원 프로그램 마련에 유용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가. 유럽국가의 이민자 통합정책

프랑스는 18세기 후반 전쟁 이후 약화된 국력을 인구증가를 통해 해결하고자 한데서 비롯하여 20세기 초 이민이 증가, 70년대 ‘공화국 통합 모델’로의 전환을 통해 강력한 통합주의를 추진한다. 이주민의 완전 동화에 기반한 귀화를 전제로 교육을 통한 사회문화적 차이의 극복에 중점을 두는데, 이러한 이주민 정책은 강한 반발을 가져와 무슬림 소요사태 등으로 표출되었으며 프랑스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프랑스의 이주민 정책은 사회통합·기회균등 부처를 중심으로 직업교육과 교육격차해소와 같은 실질적 지원방안에 중점을 두었으며, 독립된 다문화 기관을 통한 지원체계를 갖고 있다. 영국은 60년대 이후 영국 특유의 자유주의 전통에 입각하여 수용적 다문화주의로 선회하였으나 런던 테러 등으로 다문화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 그 간의 다문화주의 정책이 다양한 정책수행에도 영국민들의 의식 변화까지 이끌어내지 못해 사회통합에 실패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영국의 다문화 정책의 대표적 예는 미국과 유사하게 저소득층 대상의 사회적·교육적 격차 해소를 위한 Sure Start 교육복지 프로그램이 있다.

8) 박성혁·곽한영(2009), 이선주·민무숙·신현옥·이태정(2009), 설동훈·이혜경·조성남(2006) 연구 참조.

독일은 소수 인종 및 이민족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갈등을 미연에 차단하고자 하는 구별주의 정책 기조를 유지해왔으나, 2000년 이후 속지주의의 수용과 지방정부의 역할 증대 등으로 다문화 통합정책으로의 변화를 꾀하였다. 일례로 2004년 신이민법의 제정을 통해 이주민과의 통합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이민청'을 설립하여 종합적인 통합관리시스템을 마련하였다. 최근 들어 터어키, 아랍계의 이주민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이주민의 언어장벽과 사회통합저해가 심각하다고 판단, 독일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다문화 정책의 실패로 규정하는 분위 속에서 이주민에 대한 독일어 테스트 등 언어구사예의 규제안을 마련하였다. 네델란드 역시 다문화주의에서 동화주의로의 정책적 전환을 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민자의 평등한 사회 참여와 차별 철폐를 추구하였으나 이슬람계 이주민의 수가 많고 이들의 이질적 성격과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및 교육 수준이 사회적으로 고착되고 이슬람계 이주민들의 동화 거부로 상호배척과 차별이 계층 격차로 인한 사회적 위험으로 대두되어 민족 분리주의의 형태를 띠자, 완전 동화를 지향하는 동화주의 통합정책으로 변화를 시도하였다. 1998년 새이민자통합법을 제정, 2000년 이후부터는 12개월짜리 이주민 동화교육을 실시하고 이주민 테스트를 시행하고 있다.

나. 북미 및 오세아니아 국가의 다문화 이민 정책

미국은 초기에는 영국 청교도에 의한 백인문화전수를 이루고자 하는 용광로(melting pot) 관점의 동화주의 정책이 기조를 이루었으나, 인종적 차별과 격차의 심화로 인권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20세기에 들어 개방적 이민정책과 함께 문화적 다원주의를 표방, 용광로에서 샐러드 그릇(salad bowl)의 관점으로 전환하게 된다. 인권운동의 전개로 미국의 이주

민 정책은 다인종 통합을 목표로 하는 이주민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으로 구체화되었다. 연방정부가 입법과 재정적 지원을 하고 각 주 정부가 주별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이원 방식으로 운영되며, 소수민족의 문화와 언어적 정체성의 유지를 돕는 다양한 민간 사회기구들의 활동이 활발한 편이다. 또한 미국의 다문화교육 정책은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학생의 학업준비도와 학력 증진, 균등한 교육기회의 제공을 강조하는 NCLB법(No Child Left Behind)과 Even Start 프로그램과 같은 계층 간 격차 해소 차원의 보편적 복지 정책의 성격을 띠고 있다.

호주는 초기 반인권적 원주민 정책과 백호주의를 통해 20세기 초까지 완전 동화의 동질성 확보를 고수하였으나, 2차대전 이후 노동력 감소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이주민 수용 정책으로 선화하면서 숙련노동자 위주의 체계적인 다문화주의를 채택하였다. 호주 역시 주별로 특성화된 이주민 프로그램들이 수행되고 있으며, 주로 언어 관련 프로그램과 문화간 상호이해의 시민성 강화의 교육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다. 캐나다는 다양성에 기초한 국가 결속력의 추구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수행하여왔으며, 숙련노동자 유입과 해당 가족 중심의 광범위한 이민정책을 수행했다. 문화유산부를 통해 소수집단의 언어와 문화를 국가가 지원함에 따라 캐나다식 모자이크 다문화주의라고도 일컬어진다. 원주민 교육, 이민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반인종주의 등을 중심으로 지자체별로 다른 다양한 다문화 정책이 수행되고 있다.

다. 아시아 국가의 다문화 정책

아시아 국가의 다문화 정책은, 서구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국인 체류자에 대해 엄격하고 세밀하게 구분하여 활동의 제한을

두는 구별주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은 중앙정부 주도의 다문화 통합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모든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의 적용보다는 지원대상의 선별을 통해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하는 양상을 보인다.

중국은 한족 외 56개 소수민족이 공존하는 다민족 국가로서, 소수민족에 대한 지원과 공존의 정책을 통해 다문화 정책이 국가존립의 중요한 축으로 시행되고 있다. 근대 이후 중국의 발전과정에서 국가유지를 위해 개별 민족의 거주지 자치실시를 보장하는 ‘민족구역 자치제도’를 시행해왔다. 구체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에는 소수민족 교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해당 민족 언어의 보존, 의무교육 보장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교육과 문화의 영역에서 소수민족의 자율적 관리를 보장하고 있다. 각 소수민족집단의 정체성을 보존하면서도 국가통합을 유지하는 성공적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일본은 50여개의 소수민족이 공존하고 식민지배의 영향으로 이주민의 숫자도 적지 않으나, 이주민에 대해서는 여전히 외국인등록법, 입관법 등과 같이 소극적, 폐쇄적 대응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세계화의 변화와 일본내 저출산 문제 등으로 기존 이민정책에서 변화, 현재 일본의 이주민 지원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주체인 주민으로서의 이주민의 위상을 갖게하는 다문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사는 공존을 지향하며, 구체적으로 언어 중심의 다문화 공생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다문화 정책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싱가폴의 경우 영국의 식민지 통치와 이민자 사회라는 역사적 특징을 바탕으로 다인종·다민족주의 표방하며 동시에 민족을 통한 사회적 분류와 구분을 시도한다. 중앙정부 주도의 다문화 정책은 인종간의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현행 인구구성비율을 유지하는 4분의 CMIO (Chinese,

Malay, Indian, and others) 다인종 민족체 모델과 이중언어교육의 정책으로 구체화된다. 대표적 예로 다언어-다종교정책, 소수민족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는 선거구제도, 공동주택의 배분 및 자립 조직체의 구성 등이 있다. 이로써 기타인(백인)-중국인-인도인-말레이인의 계층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다인종주의에 근거한 CMIO 모델은 민족간 충돌을 완화하는 효과 외에 문화간 상호교류와 발전을 저해하고 인종적 계층화를 고착시킨다는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안고 있다. 마찬가지로 여러 민족의 다양한 문화적 특성을 지닌 대만은 원주민과 외국인, 대륙인을 구분하는 정책 추진하였다. 기존 대만 사회를 구성하는 원주민과 개인에게는 사회통합정책을, 외국인과 대륙의 배우자에게는 신이민정책을 적용하는 등, 정책대상의 제한과 구분을 통한 이원적 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2. 자국 동포 정책⁹⁾

가. 중국

전 세계 화교의 규모가 3,500~5,000만명 정도로 추정되며, 최대치 대비 중국인구의 약 4%에 해당한다. 중국은 입법부에 해당하는 인민대표대회 내 5개 상임위원회 중 하나로 화교위원회를 둬으로써 중국의 자국 동포 대상 정책이 중요한 정책우위를 가지고 있다. 중국정부 화교정책의 기본 원칙은 중화의식의 지속과 고양을 통한 해외 중국계 인구의 대동단결로, 구체적으로 화교자본주의에 근거한 현지화와 중화민족성 보전의 두 가지 기조를 가지고 있다. 국적법은 혈통주의와 출생지주의를 선택적으로 혼합 적용하는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귀국 화교 정책을 통해 과거 1950년대 정치적 노선의 견지에서

9) 김낙순(2003) 연구 참조.

지주분자로 매도하고 외국특무분자로 낙인을 찍어 정당한 권리를 박탈했었던 귀교/귀권 동포들에 대해, 1970년 이후 이에 대한 불합리를 인정하기 시작, 1990년 귀교/귀권 동포들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조치를 명문화하였다. 귀교, 귀권, 화교의 정의가 법에 의해 명문화되고 구분되어 있으며, 이러한 귀교정책과 화교정책을 통해 유능한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네트워크를 구성, 중국의 산업발전을 유도하고 있다.

나. 이스라엘

타국적의 유대인 수가 자국 거주민 수보다 많아 2000년 기준 100여개국에 약 1400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다른 국가의 일반적인 재외동포정책과 달리, 이스라엘의 동포정책은 유대인들의 본국으로의 귀환을 목적으로 한다(예: 1950년 귀환법(law of return)). 즉, 디아스포라 생활을 마감하고 본국으로의 귀환과 이후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에 이스라엘 동포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수행은 혈연주의보다는 종교문화적 동질성에 기초하여 전개된다. 즉 유대인이란, 부모가 유대인인 사람 또는 유대교로 개종한 자로 되어 있다. '모든 유대인은 한덩어리'라는 뜻의 유대인 공동체 '하베림코트 이스라엘'의 전세계 네트워크 활동이 매우 활발하여 본국 이스라엘로의 수시 방문과 자유왕래 및 거래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국가결속력 강화에 지속적으로 초점을 두고 있다.

중국과 이스라엘 등 오랜 기간 외국 국적소유의 자국 동포에 대한 정책은 중장기 국가인적자원의 역량을 결집시키는 교류협력과 네트워크 강화를 기본 특성으로 하여 광범위하게 자국민으로 포용, 국가 이익창출과 결집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양상을 보인다. 일례로 6000만 중국 화상(華商) 네트워크 결속, 아일랜드의 8000만 아이리시 네트워크, 1800만

인교(印僑), 이스라엘의 유대인 공동체 등을 성공적인 네트워크 교류와 지속적 결집에의 범 국가적 동포지원 사례로 들 수 있다.

3. 시사점

각 국의 이주민 정책의 변화·발전 과정을 살펴본 결과, 공통적으로 자국의 노동력 충당 및 인구증가를 통한 국력 유지라는 자생적 이유에서 출발한 특성을 보이며, 각국의 이주민 정책은 '사회통합'이라는 상위목적을 공통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이주민의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해 현장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복지 및 교육 프로그램은 내용면에서 언어지원, 사회적응 지원, 학습지원, 시민성 강화 등을 공통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주민 통합 정책의 실행과정과 방법에서 동화주의 대 다문화주의 포용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며, 이주민 정책의 실행 결과에 있어 사회통합과 함께 분리와 차별, 배제, 계층적 하위와 약자 신분의 유지라는 고질적 진통과 사회적 혼란을 겪는 공통점 또한 드러났다. 특히 지속적인 이주민 지원정책의 마련에도 대다수 국민들의 다문화인식에는 큰 변화를 주지 못하는 등, 정책과 사회적 인식이 함께 가지 못하는 한계점을 드러냈으며, 또한 이주민들은 지원체계내에서도 계층적으로 하위와 약자의 신분에 머물며 사회 주류집단에 편입하거나 교류하는데 부족한 계층화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러한 배제와 분리의 사회통합 저해는 과도한 복지 부담 및 집단 소요와 폭력이라는 사회적 위험을 증가시켜 수용적 다문화주의 이주민 정책이 동화주의로 회귀하는 양상이 일부 국가에서 나타나기도 했다.

이민이 국가형성의 근간이 되는 북미, 그리고 노동력 공급 및 국력확장의 대안으로 이주민 유입을 받아들인 유럽국가의 이주민 정책과는 달리, 아시아 국가의 다문화 정책은 다소 다른 성격을 보인다. 중국의 경우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 양 기조의 공존을 정책적으로 견지하여 국가 유지의 근간으로 삼고 있으며, 싱가포르와 대만에서는 민족적 구분에 근거하여 계층화된 이원적 다문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이주민의 유입은 지속되고 이로 인해 각국의 다문화 사회 속성이 강화됨에 따라, 각국의 이주민정책은 자국의 상황에 맞게 변화·발전해가고 있다. 이주민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에도 차이를 보여 이주민을 유입국 입장에서 가르치고 지원해야 할 교육과 복지의 피동적 대상으로 인식하는 관점에서부터, 이주민 가정의 문화적 주체성을 인정하고 적극 수용하는 다문화주의에 입각하여 그들의 능동적 참여와 자발적인 생활기반의 수립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 등 다양한 정책방안이 나타나고 있다. 대체로 시대적 상황과 국민적 요구에 의해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를 오가는 선택적 양상을 보여 왔으나, 중점을 두는 정책 기조는 나라별로 다르게 형성되어있다. 각 국의 이주민 정책은 자국의 상황에 맞고 국민적 합의에 기반할 때 사회통합 발전에 긍정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중국과 이스라엘의 동포정책은 국가경쟁력 확보의 차원에서 다양한 네트워크 활동의 활성화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며 동포의 인적 역량을 지속적으로 결집시키는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중국동포 정책의 수립은 지속적인 교류 및 상호발전을 통한 국내 사회통합의 목적과 동포의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국가역량결집의 글로벌 지향을 동시에 고려하여 한국적인 통합모델의 수립을 통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과거 고난의 역사를 통해 이주한 중국 조선족 동포에 대한 지원과 협력은 범 민족 동포애의 차원에서 일정 부문 외국 이주민 및 다문화 정책과는 구분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2절 선행연구

1. 외국인 근로자 아동 관련 선행연구

고용허가제¹⁰⁾와 방문취업제 도입 이후 국내취업을 위해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가 증가하고 이들의 체류가 장기화함에 따라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고용 및 임금차별, 미흡한 의료혜택, 거주 및 생활 불안정, 강제추방 등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는 국내 주요 취약계층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노충래·홍진주, 2006).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장기화되면서 동반하여 입국하는 자녀 등 가족이 증가하고 일부는 국내에서 새로이 가족을 이루며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지위와 인권 뿐 아니라 이들의 가족의 지위와 인권, 생활, 또 자녀의 경우 교육 등의 문제도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여기서는 국내거주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된 선행연구들 중에서도 외국인 노동자의 아동(자녀)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가. 인권 및 적응 실태 관련 연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아동에 대해서는 이들의 인권과 적응실태 연구로, 먼저 설동훈 외(2003)는 국내 거주하는 모든 국적의 외국인노동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여 관련 국내 법령과 국제법의 핵심 사항을 정리하며 인권실태 조사를 실시하였고, 인권, 아동의 인권, 외국인 아동 인권에 대한 법률적·이론적 접근을 통해 외국인 아동이 보호받아야 할 인권을 도출하였다. 설문조사, 심층면접, 참여관찰을 실시하고

10) 2003년 8월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고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를 실시하게 됨

아동 인권에 대한 법률적·이론적 접근을 통해 취업을 위해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들의 자녀들이 부모와 동반, 혹은 부모의 입국 이후에 따로 입국하면서 겪게 되는 일상생활 및 교육기관에서의 적응과정, 어려움, 학업과 취업 실태 및 기대 등을 파악하고 국적에 상관없이 보장되어야 할 아동의 '인권' 측면에서 이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초기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아동의 인권실태 파악을 통해 보호해야 할 인권 영역과 이들의 일상생활, 가족생활, 학교생활, 취업 등에 관해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국적의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는 장점이 있으나, 대부분 초등학교 취학 이상의 아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미취학 아동에 대한 정보는 부족하다

이주노동자 가정 아동의 전반적인 생활 실태와 적응의 문제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맥락을 같이하는 연구로는 노충래와 홍진주(2006)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서울·경기지역에 거주하는 몽골출신 이주노동자의 10세 이상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의 생활실태와 문화에 대한 태도, 민족정체감, 심리사회적 적응실태를 파악하고 아동복지적 개입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에 의하면 교육관련 경험에 있어서는 응답자 중 약 70.1%가 정규 교육을 경험하였으며 교육 경험이 없는 대상자들 중 35%인 7명은 학교 측의 거부로 학교에 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 근로자 자녀에 대한 교육 기회가 여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었다. 또 몽골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은 경우가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조사되어(56.7%) 설동훈 외(2003)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근로자 자녀에 대한 따돌림, 차별 문제에 대한 개입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그런데, 몽골 출신 외국인 근로자 자녀는 문화적응스트레스나 자아존중감이 다른 국가 출신 외국인 근로자 자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이는 외모의 유사성과 문법구조의 유사성으

로 인한 언어습득의 용이성 등이 작용한 것으로 추측되었다.

나. 교육 관련 연구

다수의 외국인 근로자 자녀에 대한 선행 연구는 이들의 교육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는 미국이나 일본처럼 외국인 학교를 설립하여 자국민들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국가에 반해, 국내 체류 외국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아시아계 외국인들 중 저개발 국가에서 온 외국인들은 한국인 학교에 자녀를 보내지 않은 한 교육 기회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2005년도에 실시된 '외국인 근로자 자녀 교육복지 실태 분석 연구'(김정원 외, 2005)는 외국인 근로자 자녀 중에서도 특히 사회적 취약성이 두드러지는 '도시 비숙련 노동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교육 복지 실태에 초점을 맞추어 가정, 학교, 지원 단체의 세 가지 차원에서 탐색하고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자녀 교육에서의 주요 취약점과 과제에 대한 시사점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학령기의 외국인 노동자 자녀와 그 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과 재학하는 학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특히 학교를 연구대상 학교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주 대상은 몽골출신 외국인 근로자 자녀에 한정되었다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김정원(2006)의 연구에서는 외국인 자녀 교육 문제와 적응 문제를 조망하면서, 학령기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학교 입학 등에 대한 법적 보장에 관한 문제뿐 아니라 학교 생활에서 언어 등 현실적인 적응 문제에 대한 학교와 가정의 역할을 제시하고 한국에서의 적응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자녀가 모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리도록 강요받지 않도록 '다문화 교육'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법적으로 학교 입학은 가

능하도록 제도화하였고, 국내 학교 재학 외국인근로자 자녀수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그러나, 현실적으로 입학 후 '졸업'과 관련해 학교들이 대응하는 방식은 지역별, 학교별로 편차가 커서, 국내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학령기 외국인 근로자 자녀도 약 9,5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¹¹⁾. 이 연구는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법적인 교육 기회의 보장과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다문화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 미취학 자녀 관련 연구

외국인 자녀에 관한 연구로 '미취학 자녀'를 포함한 연구로는 이 연구 대상에는 배우자 국적이 한국인 경우가 25.4%나 포함되어 있다는 한계는 있으나, 조정서 외(2007)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부모가 일하는 동안 미취학 자녀를 주로 돌보는 양육자는 배우자 혹은 가족 26%, 이웃사람 25%로 어린이집 17.7%, 유치원 7.3%보다 많았고, 어린이집, 유치원에 안 보내는 이유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 69.4%로 가장 큰 이유이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 '의사소통'이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한국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돈 문제 37.3%', '학교교육 20.3%', '탁아 15.3%'이었으며,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한국어와 한글교육 32.2%', '외국인에 대한 이해증진 27.1%', '경제적 지원 22%'인 것으로 응답되었다. 외국인 근로자가 자녀와 대화할 때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와 모국어의 이중사용'이 56.8%이며, 가족수입이 많을수록 탁아비 지출이 증가하였다. 연구자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자녀들이 발달에 적합한 보육과 교육을 받기

11) 교육인적자원부, 2006.2

위해서는 자녀의 출생지와 연령, 부부구성(부부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부부 중 하나가 한국인인 경우), 가정 수입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 보육 시설이나 학교기관에서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는 보조인력 배치, 자원봉사 활용, 가정방문지도, 방과 후 보충학습과 예체능 지도 및 한글교육 활성화, 접근성 문제를 고려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2. 중국 동포 관련 선행 연구

가.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동포에 대한 연구

1) 조선족 기혼여성의 생활만족도 및 부모역할에 대한 연구.

중국 조선족 사회의 부모역할 및 양육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윤갑정 등(2008)은 중국 연변자치주 연길시에 거주하는 조선족 유아 양육실제에서 나타나는 양육이슈를 시대성과 민족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육자들은 유아가 조선어를 잊어버리지 않고 동시에 한어를 잘 하는 이중언어 구사능력 함양을 위해서 조선족 학교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다. 조선어를 하나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언어를 잃으면 민족을 잃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조선어 사용을 문화민족의 긍지로 받아들여 왔다. 둘째, 조선족은 자녀의 학업성취를 위한 물리적 환경 제공을 강조하였는데, 전통적으로 다른 소수민족보다 높은 자녀 교육열을 보여주었다. 이런 맥락에서 조선족 부모들은 자녀에게 더 좋은 교육적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자녀와의 장기간 별거를 감수하고 해외로 출국하며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이 경제적 부담감으로 작용하는 반면, 자칫 한쪽으로 너무 치중하여 심리적 안정감 제공에는 소홀히 할 수도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셋째, 조선족 유아들은 일상생활에서 한국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양육자들은 한국과 협력한 유치원을 선호하거나 자녀를 한국아이와 비교하면서 자기표현을 잘하는 아이로 키우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요약하자면, 조선족 유아 양육의 이슈는 시대성과 민족성이 공존하고 있었는데, 양육자들은 민족성을 유지하면서도 개방 이후 급변하는 사회변화를 통해 등장하는 시대적 이슈에 반응하고 있었다. 이중언어 능력과 학습을 위한 좋은 물리적 환경의 제공은 민족적 자산을 살려내기 위한 시대적 요구이며, 조선족이라는 민족적 자부심과 함께 한국아이처럼 키우고자 하는 양육신념은 민족성을 반영한 이슈이지만 이 또한 개인의 사회적 성공이 강조되는 시대적 변화와 맞물려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안화선(2009)은 최근에 한국과 중국 조선족 기혼 취업 여성의 생활만족도에 영향 주는 변수들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중국 길림성, 한국 광주지역의 기혼취업여성 581명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중국 조선족의 경우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교육수준, 결혼상태, 가족 간의 의사소통, 가계소득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별한 여성이 유배우자, 이혼, 별거 및 기타 집단에 속하는 여성에 비하여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중국 조선족 기혼취업여성의 경우 성역할태도, 자아존중감과 같은 심리적 변인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데 반해, 근무시간 융통성, 직무만족, 취업동기와 같은 직업관련 변인은 모두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다.

2) 조선족 아동 발달 및 특성에 대한 연구

중국 조선족 아동 및 청소년의 발달에 대한 연구가 비교연구로 최근에 많이 이루어졌다. 먼저 조선족, 화교, 한족, 한국아동의 기질을 비교한 연구가 있었는데(박민정·박혜원, 2007; 원영미 외, 2004) 동일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거주지역과 환경에 따라서 기질적 차이가 나타났다. '활동통제' 및 '수줍음'은 한족아동과 조선족 아동이 높았는데, 이는 중국의

연변지역이 한국보다는 서구문화의 영향을 적게 받고 동양의 전통적 가치를 잘 보존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활동통제'나 '수줍음'은 전통적으로 서구에서는 부정적으로 보나 동양권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기질 중 하나라는 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친화'는 조선족 아동과 한국의 화교아동이 높았는데, 이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문화에도 적응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친화력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공격성', '우울', '불안', '좌절'은 조선족과 한국의 화교아동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정체성에 대한 혼란, 적응해야 하는 환경의 복잡성 등과 같은 요인이 심리적 불안을 일으키고 이것이 높은 공격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부모의 다수가 한국을 포함한 외국에서 일을 하고 있어 부모와 자녀의 별거문제가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비록 동일한 유교문화권이라는 문화적 유사성이 있긴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서 거주하는지, 공산주의 체제하에 시장경제를 채택하여 개방이 가속화되고 있는 중국에 거주하는지, 또한 자신의 본래 민족에서 거주하는지 여부가 아동의 기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조복희·이주연(2006)은 민족적 특성과 주류사회의 특성이 서로 정반대라고 할 수 있는 두 소수민족 집단인 중국 조선족과 한국 화교를 대상으로 각 집단 아동들의 주류문화에 대한 적응과 그에 따른 학교 적응을 조사하였다. 문화접변 유형분포를 조사한 결과, 중국 조선족 아동은 분리유형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통합, 동화, 주변화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구사회 소수민족과는 달리, 100년이 넘는 이민역사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민족문화를 잘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결과이다. 중국 조선족의 경우 민족정체감을 고수함과 동시에 민족 고유의 언어와 문화를 전승하는 것이 보다 수월하였던 것에서 높은 분리유형 분포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문화접변 유형에 따른 학교적응을 살펴본 결과, 분리

유형에 속한 아동이 오히려 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높은 교사지지를 보임으로써, 소수민족 집단 아동의 적응에 있어서 민족언어와 민족문화 보존의 중요성을 시사 받을 수 있다.

한편, 조선족 아동의 가정환경, 내외통제성, 사회적 지지, 행동문제, 애착, 자아개념, 이중언어능력 등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에 대해 비교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조선족 아동의 내적 통제점수가 외적 통제점수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교사지지 및 또래지지 지각점수가 높았던 반면, 행동문제 수준은 낮은 분포를 보였다. 조선족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 및 심리적 분위기가 긍정적이고 가정내 물리적·심리적 환경이 바람직할수록 행동문제 수준이 낮았다(조복희·이진숙·한세영, 2005). 또한, 중국 조선족 학령기 아동의 경우 애착은 또래관계, 자아개념, 학교생활적응과 정적 상관을 보이며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고 있는 아동은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학교에 새롭게 상호작용하며 또래관계에서 잘 적응할 수 있다(이시라·박혜원, 2005). 또한, 주도적, 대응적, 관계적 공격성 모두에서 한국청소년이 연변지역의 조선족 청소년보다 높았다. 다원화된 사회가 획일적인 사회보다 공격성에 대한 억압을 적게 한다는 것을 고려해볼 때, 한국의 청소년들이 공격성에 대한 표출을 더 많이 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반해, 중국 조선족 청소년들이 공격성에 대한 표현을 훨씬 더 억압받는다고 할 수 있다. 조선족 청소년들의 경우 관계적 괴롭힘과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 사회적 수용 자아개념이 공격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박민정·박혜원, 2006). 또한, 윤혜경 등(2009)은 중국어와 한국어의 두 언어를 동등하게 모국어 수준으로 사용하는 중국 심양 조선족 10세 아동과 19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글문장, 한자문장, 그리고 한글·한자의 혼합문장 형태의 덩이글을 읽고 이해하는 정도를 살펴보았다. 이중언어능력을 지닌 조선족 10세 아동과 19세 피험자들은 동일한 의미의 한자 문장의 덩

이 글을 읽는데 한글이나 한글·한자 혼합문장의 덩이글보다 더 적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조선족 별거가족 및 가족해체에 대한 연구

중국 조선족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초국가적 이동현상에 따라 나타난 조선족 가족해체 현상이 등장하고, 이에 따라 별거가족, 가족해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부모별거 아동의 별거경험으로서 부모와 별거하게 된 이유를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연변 조선족 아동의 경우 '경제적 이유 또는 맞벌이'가 약 50%로 가장 높고 이어 '부모의 이혼 또는 불화'가 약 22%의 이유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천희영 외, 2006). 이 비율은 흑룡강성의 조선족 초·중등학교에서 도시진출, 해외취업에 의한 부모의 부재나 이혼으로 결손된 가정의 학생 비율인 60~80%와 유사한 것이다. 이른바 '출국형 가정'의 가족위기와 그로 인한 문제 심각성을 반영한다. 부모와 별거했을 때 아동의 나이는 50~60%가 학령기에, 약 30%가 학령전기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별거상황에서 현재 아동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은 연변의 경우, 조부모나 나이든 형제, 친척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중국 조선족 가정의 가족구조가 직계 대가족으로부터 핵가족으로 이행하고 있으나, 아직 그들의 약 37%는 확대가족 형태이므로 친족에 의한 지원체계가 유용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족 별거가족 유아의 가족생활 경험에 대한 연구에서는(윤갑정·정계숙, 2007) 부모와 함께 하지 않아도 느끼는 부모의 존재감이 강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별거가족 유아들이 가지는 부모에 대한 강한 존재감과 부모와 양육자에 대한 분별된 인식은 현재 양육자의 역할에 대한 제한된 인식과 양육자와의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유아가 할머니를 대리양육자로 인식하는 정도가 강할수록 할머니 말을 듣지 않는 당당한 태도를 보였으며 할머니와 자주 갈등을 일으켰다. 즉, 별거가족 유

아들은 '엄마 vs 대리양육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할머니와 유아와의 상호작용 방식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별거가족이 동거가족에 비해, 가족관계에서 유아들이 어른의 말에 순종하고 예절바른 행동을 할 것을 강조하고 있었는데, 이에 따라 양육자들은 유아의 행동에 대해 계속 언어적인 제한을 하고 있었다. 특히, 별거가족 양육자들은 손자녀 양육에 노파심과 걱정을 드러내면서 손자녀가 학습에 뒤떨어지지 않고 잘 따라갈 수 있을지를 염려하고 있었다.

또한 부모와 별거한 중국 조선족 아동의 양육자에 대한 애착과 적응 문제, 생활환경에 대한 연구에서, 조선족 아동의 별거 후 적응양상을 조사한 결과, 외로움의 측면에서 부정적인 적응을 보였는데 이는 부모-자녀 별거현상이 아동발달의 정서적 적응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반증한다(조복희·이주연, 2005). 한편, 아동발달에 애착의 대상 자체보다는 그 질이 더욱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조복희·이주연, 2006). 대리양육자와의 애착은 적응과 문제행동과 관련 있으며, 양육자에 대한 애착과 함께, 부모와의 별거기간이 길수록 문제행동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별거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아동이 그러한 상황을 인정하고 적응해나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부모별거시 아동의 반응은 대체로 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특히 50%에 해당하는 부모별거 아동이 부모와 떨어져 불안감을 별로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어머니와의 별거 기간이 짧을수록 문제행동이 많이 나타났다. 문제행동의 영역별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달랐는데, 적대-공격성의 영역, 과행동성-산만의 영역에서는 아버지의 분리기간 영향력이 큰 반면, 걱정-불안의 영역에서는 어머니의 분리기간이 영향을 보였다.

한편, 천희영 등(2006)의 연구에서는 아동의 사회·정서적 적응력 발달에 대한 부모별거 아동의 별거 경험과 양육요인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연변 아동의 문제행동은 별거 경험의 하위변인 중 별거 시기나 별거

기간이 아닌 주양육자, 양육효능감 및 거부·제재 양육행동 변인에 의하여 유의한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하였다. 즉, 지역 및 부모별거라는 형태적 결손 가족구조 자체보다는 미시적인 양육환경이 사회, 정서적 적응력에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안병삼(2009)은 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중국 조선족 중·고등학생 540명을 대상으로 현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가족해체 진행에 대한 정확한 자료구축과 더불어 조선족 학생들의 가족해체에 대한 대처를 고찰하였다. 이 연구는 중국 흑룡강성 조선족 중·고등학생들은 73.5%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 않았고, 이는 많은 부모들이 돈을 벌러 한국으로 갔기 때문이었다. 중국 조선족 학생들은 보통 5년 이상 부모와 떨어져 살고 있으면서 1주일에 한 번 정도 부모와 연락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와의 유대관계가 여의치 않음으로 조선족 학생들은 학력 수준의 저하와 각종 범죄 등에 쉽게 노출되어 있었다. 중국 조선족 학생들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움과 동시에 부모의 잔소리가 없는 부분에 대해 만족하였으나 부모님이 없어 외로워서 싫다는 의견이 86.7%가 되었다. 만약 부모가 있는 곳으로 가서 함께 살 수 있다면 가겠다는 학생들 응답이 76.5%로 매우 높았고, 자신이 결혼한 뒤, 돈을 벌기 위해 아이를 집에 두고 떠날 수 있는냐는 질문에 '떠날 수 없다'는 응답이 65%로 나타나 '떠날 수 있다'의 35%보다 더 높았다. 이 연구에서는 국가차원에서 한국에 자녀도 함께 입국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나.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동포에 대한 연구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동포에 대한 연구는 이들이 한국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어려움과 문제들을 조명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문형진(2008)은

한국에 거주하는 조선족 노동자들의 갈등사례, 특히 한국인과 조선족 노동자들 간의 갈등 사례를 여러 유형별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한편, 2007년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한민족 청소년 인적 자원 활용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방안의 일환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조선족 청소년에 대한 연구가 이뤄졌다. 조선족 청소년들의 경우 주요 한국 방문 목적은 한국 대학이나 대학원 진학이거나, 취업이었다. 조선족 청소년들은 한국체류 과정에서 그들이 가졌던 한국인들과의 막연한 동질감이 무너지고 무시당한다는 경험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이들은 스스로 중국인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이 민족 정체성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국에서 중고등학교를 조선족 학교에 다닌 학생들의 경우에는 확실히 민족 정체성에 대한 의식이 좀 더 깊었다. 한국과의 접촉이 많아지면서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한국민족으로서의 정체성 두 가지 모두를 의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시사점

가. 외국인 근로자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본 시사점

국내에 입국하여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연구, 특히 외국인 노동자의 아동에 관한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거주 중국동포(조선족)에 특화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내에 유입되어 있는 외국인 근로자 중 중국동포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선행 연구 대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으며, 그로 인해 중국동포 및 그 자녀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얻는 데

는 많은 한계가 있다. 국내 외국인 근로자들의 국적 및 인종은 매우 다양하며, 이들의 문화적·인종적 차이는 국내 적응과 자녀양육의 어려움 등에도 많은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한민족과 같은 뿌리와 외모를 지니는 중국동포에 관해서는 일반 외국인 근로자와는 구별되는 특화된 연구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외국인 근로자 자녀 중 취학연령 이전의 영유아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 자녀 연구의 대상은 영유아 자녀보다는 취학연령 이상의 아동 및 청소년 자녀에 집중되어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유입 역사가 길어지고 체류가 장기화될수록 국내에 정착하여 가족을 이루고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에서 가족을 형성하거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영유아 자녀는 본국보다는 한국의 언어나 문화, 환경에 더 익숙하게 자라나며 정체성도 한국국민에 더 가깝게 자라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취학 자녀가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자녀양육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외국인 근로자 가정 중 취학연령 자녀가 있는 가정은 주로 교육 문제를 당면과제로 제기하지만 미취학 자녀의 존재는 한국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자녀양육비용이나 '일-가정 양립 문제' 등 더욱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미취학 자녀가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 양육 관련 문제를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몽골출신 외국인 근로자 자녀는 외모나 언어습득의 용이성이라는 측면에서 기타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보다 문화적응의 스트레스나 자아존중감 등에서 적응 상태가 비교적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중국동포 자녀의 경우 한민족으로서 뿌리가 동일하며, 외모가 유사하고 언어습득도 용이한 편으로 국내에서 성장할 경우에도 적절한 지원과 교육 기회가 주어진다면 적응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교육 기회의 확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초·중·고등학교 입학 뿐 아니라 졸업 및 학력 인정에 있어서도 부모의 체류 지위와는 관계없이 기본적인 교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 조치가 따라야 하며, 학교장의 재량에 맡겨진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의 정해진 지침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언어습득, 문화적응 및 정체성 형성, 교육 기회의 부여는 취학연령 이전의 아동부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취학 전의 양육과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다섯째, 외국인 근로자 자녀를 위한 ‘한국어 습득’의 기회가 확충되고 내실화 되어야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자녀들의 적응과 교육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이 언어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고 언어 문제는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의 학교 및 또래 관계에서의 적응을 어렵게 하고 따돌림이나 소외, 차별 문제를 야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어 습득의 기회는 국내 학교에 취학하기 전에 충분히 주어져야 하며, 특히 언어습득이 시작되는 영유아기부터 한국어 습득을 도울 수 있는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 중국 조선족 선행연구를 통해 본 시사점

선행연구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중국 조선족 사회에서 진행되는 초국가적 이동현상에 따라 경제적인 이유로 한국에 입국하면서 많은 가정이 가족해체를 경험하거나, 장기간의 별거가정이 현저하게 증가하였고 조선족 사회의 문제로 등장하였다. ‘부모와의 장기간 별거’라는 경험은 아무리 대리양육자의 질이 우수하게 보장될지라도, 자녀의 전반적인 발달에 적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부모에게 상당히 의존적이며 가족중심적 생활을 보내는 시기인 영유아기에 부모와의 친밀한 관

계를 형성하지 못할 경우, 자녀의 궁극적인 건강한 발달과업 성취에 우려가 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 내 우리 한민족의 이러한 현상을 방치하면 한국 내 사회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 중국 조선족이 인간적 삶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하고 정상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에 한국은 여러 유형의 사증을 개설하고 영유아 자녀의 동반입국을 허용하는 추세로 조금씩 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동포의 영유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며 이들을 지원해주는 정책마련에 대한 모색도 부족한 상황이다. 영유아 자녀와 함께 들어온 경우, 발달상 문제와 가정환경 등 예상치 않은 많은 문제들이 다분히 잠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삶의 복지는 사각지대에 있다. 그러므로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동포들 중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양육문제들을 여러 각도로 살펴보고,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받을 수 있다.

제3장 관련 법·제도 및 정책

제1절 국내법

국내법에서 중국동포는 이중적 지위에 놓여있다고 하겠다. 국내인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으로 분류되면서 동시에 우리 민족의 후손이란 관점에서 일반 외국인하고는 다르기 때문이다. 먼저 국내법에서 외국인 관련된 법적조항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중국동포가 포함되어 있는 재외동포 관련 법령을 고찰하겠다.

1. 제한 외국인 관련 법령

가. 헌법¹²⁾

헌법에 의하여 자유권과 평등권 및 사회권 중의 일부가 외국인에게 인정된다. 헌법 제6조 제2항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이 권리가

12) 설동훈·한건수·이란주(2003). 「국내 거주 외국인노동자아동의 인권실태조사」 보고서에서 발췌함.

현실에 적용될 경우 내국인과는 달리 상당한 제한이 있다. ‘참정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대다수’ 및 ‘입국의 자유’ 등은 외국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외국인이 정치적 자유를 비롯한 선거권·피선거권·공무담임권·국민표결권 그리고 기타 정치적 활동권 등 ‘참정권’을 향유할 수 없는 근거는 단적으로 국민주권의 원리에 의한다. 국민주권 원리가 당해 국민의 의사결정에 의거한 국가통치를 요청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제한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사회적 기본권은 헌법적으로써 자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외국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상의 환경권(제35조), 보건권(제36조 제3항)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

나.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으로부터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와 대한민국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및 난민의 인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제1조 목적) 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를 관리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외국인은 그의 체류자격에 따라 국내에서 행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가 규정된다.¹³⁾ 만약, 취업 허용 체류자격을 갖지 아니한 자가 국내에서 취업하게 되면, 그는 ‘자격외취업자’로서 불법체류자 간주된다. 불법체류자는 체류기간초과자, 자격외취업자 혹은 밀입국자로 구성된다.

합법 취업 생산기능직 종사자의 체류자격인 연수취업(E-8)과 비전문취

13) 출입국관리법 제10조는 ‘체류자격’을 정하고 있고,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관련 별표가 구체적인 체류자격과 그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을 정하고 있음. 예컨대, 외국인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교수(E-1), 회화(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홍행(E-6), 특정활동(E-7),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중 하나의 체류자격을 가져야 함.

업(E-9)은 가족의 동반이 사실상 금지되므로, 국내 거주 ‘외국인노동자 아동’의 부모는 거의 대부분 불법체류자로 보아도 무방하다. 다만,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노동자는 합법적 체류가 가능하므로, 국내에서의 체류자격은 거의 문제되지 않는다. 부모 중 적어도 한 사람이 불법체류자인 경우가 대다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생산기능직 외국인노동자 아동의 지위는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자녀’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에게 입국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일단 입국한 외국인이더라도 한국에 체류할 권리는 부여되지 않는다. 또한 그러한 외국인이 일시적으로 출국하여 재입국하는 경우에도 신규입국과 마찬가지로 취급된다. 그러나 일단 입국을 허가받은 외국인에게는 ‘출국의 자유’가 보장된다.

다. 국가인권위원회법

헌법상에 보장되어 있는 외국인 기본권 보장 원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재확인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제2조(정의) 제1항에서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조(적용범위)에서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국내법은 외국인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즉,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외국인노동자 아동은 당연히 이러한 법 적용의 예외가 아니다(설동훈·한건수·이란주, 2003).

라. 국적법

동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의 1항에는 대한민국 국적이 부여되는 경우가 열거되어 있다.¹⁴⁾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하는 자는,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이다.

무국적자라 함은 어느 국가의 법률상으로도 국적이 없는 자를 일컫는다. 한국 내에서도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무국적자들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처음부터 공식적으로 무국적자의 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는 자들이 있고, 선천적 무국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 한국에서 출생하였으나 부모 중 일방이 외국인이고, 타방은 무국적이거나 알 수 없을 때, 해당 외국국적 부모의 국적법이 이들의 자에 대하여 자국적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는 선천적 무국적으로 출생한다. 이외 여러 형태의 무국적자도 출생하며, 후천적 무국적자들도 발생한다.¹⁵⁾

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국내법에서는 외국인노동자 아동의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2001년 3월 교육인적자원부는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자녀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지침을 마련하였고, 그럼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2003년 1월 19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14) 동법 제2호 2항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명시함.

15) 구체적 사례는 정인섭·박정해·이철우·이호택(2009) 참조.

개정하여 제19조 제1항에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국내의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거주지를 관할하는 해당 학교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 17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입학 또는 전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어 또한 출입국사실증명서나 외국인등록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를 고려하여 2003년 5월부터 학교 입학 시 전월세 확인서, 거주확인 인우보증서 등으로 해당 지역 거주 사실 입증 서류를 대신할 수 있게 하였다.

중학교 경우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전학, 혹은 편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2010년 초등학교 입학 절차를 중학교에도 적용하는 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에 따라 출입국 사실증명이 없는 외국인 자녀의 경우 주택 임대차계약서나 인우(隣友)보증서 등 국내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중학교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

바.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은 국내 입국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 목적)으로 제정,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서 규정한 ‘재한외국인’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제2조 정의)이다.

동법 제10조(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에는 재한외국인과 그 자녀의 차별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제12조(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에서 결혼이민자 자녀의 보호와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조 2항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상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에 대하여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어, 결혼이주민 자녀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 외국인 부부 - 한국인 夫와 외국인 母 -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도 결혼이주자 자녀와 동일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제17조는 과거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 등의 처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과거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 또는 그의 직계비속(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한 자 제외)으로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입국, 체류,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2. 재외동포 관련 법령

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1999년에 제정된 동법에서 재외동포를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 두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 전자는 동법 제2조 1항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며, 후자는 2항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중국동포는 후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동법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명명하면, “외국국적동포” 중 “중국국적동포”라 하겠다.

동법은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에서 출입국과 법적지위를 보장받고 부당

한 규제와 대우를 받지 않을 것을 주요 기조로 삼고 있다.

“외국국적동포”를 다룬 조항 중심으로 살펴보면,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제5조)고 되어 있으며 대한민국 내에서 체류기간에 대해서는 재외동포체류자격에 따른 체류기간은 최장 3년까지 이지만(제10조 1항),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계속 체류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는 몇 가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할 수 있다(제10조 2항). 아울러 국내거주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다시 입국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하는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재외동포들의 출입국 자유를 허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08년부터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가 90일 이상 대한민국 안에서 체류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제14조 건강보험) 수 있다.

나. 출입국관리법에서 외국국적동포 대상 발급되는 사증(VISA)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체류자격의 기준)와 관련하여 별첨으로 외국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를 상세하게 나열하고 있다. 이 중 중국동포와 관련된 주요 사증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재외동포에게만 체류자격이 주어지는 F-4 사증은 재외동포의출입국과 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단순노무행위 등 제23조 제3항 각호에서 규정한 취업활동에 종사하려고 하는 자는 제외)에게 발급된다. 영주권 체류자격을 의미하는 F-5 사증은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자로서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부여된다.

방문취업 체류자격(H-2)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외국국적동포는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에 해당하고, 일정한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¹⁶⁾ 만 25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일정한 활동범위¹⁷⁾ 내에서 체류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단, 재외동포(F-4)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2절 국제협약

외국인 근로자의 아동과 직접 관련된 국제협약은 아동권리협약과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이다. 우리나라는 아동권리협약에는 가입하고 있으나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

-
- 16) 1.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
 2.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인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해당하거나 「독립 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4.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한 사람
 5. 유학(D-2) 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사람의 부모 및 배우자
 6. 국내 외국인의 체류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하여 출국한 사람
 7. 1)부터 6)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국말 시험, 추첨 등의 절차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
 - 17) 방문, 친척과의 일시 동거, 관광, 요양, 견학, 친선경기, 비영리 문화예술활동, 회의 참석, 학술자료 수집, 시장조사·업무연락·계약 등 상업적 용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의 활동 및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해당되는 산업분야에서의 활동

한 국제협약은 가입하고 있지 않다.

이외에 포괄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관련 협약은 인종 차별을 금지하고 외국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규약으로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1990년 비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1990년 비준),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1984년 비준),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협약, 무국적자 감소에 관한 협약 등이다. 이를 아동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아동권리협약

여러 국제규약 중에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권리보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협약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이다.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에 대한 가장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권리를 명시한 국제협약으로 한국은 1991년 이 협약에 비준하였으며, 그에 따라 이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아동권리협약은 전문, 제3부, 총 5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은 유엔헌장, 세계인권 선언, 아동권리선언, 국제인권규약 등의 국제문서에서 표명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평등권 등 인간의 기본적 인권을 재확인하면서, 아동은 그들 국가와 부모 혹은 국제사회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였다. 제1부(제1조~제42조)는 아동의 권리와 국가의 아동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2부(제42조~제45조)는 협약의 이행 조치로서 국가보고제도와 아동권리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3부(제46조~제54조)는 서명, 가입, 비준서 기탁, 개정절차, 유보, 폐기, 원본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의 바탕을 이루는 기본 가치를 ‘일반원칙’(general princi-

ples)으로¹⁸⁾ 하여 ① 아동의 최선의 이익 원칙, ② 아동의 의견 존중의 원칙, ③ 아동의 생존·보호·발달의 원칙, ④ 아동 차별금지의 원칙의 4대 원칙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 협약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시민적 권리

협약은 아동의 특별한 보호를 목적으로 아동의 특유한 시민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모든 아동은 출생 시부터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지며(협약 제7조), 국적·이름 및 가족관계를 포함하여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신분을 보존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협약 제8조).¹⁹⁾ 아동권리협약은 제7조 제1항에서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 시부터 성명권과 국적 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항에서 “당사국은 이 분야의 국내법 및 관련 국제문서상의 의무에 따라 이러한 권리가 실행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권리가 실행되지 아니하여 아동이 무국적으로 되는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역시 선천적 무국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나, 아동의 무국적을 방지할 의무가 어느 국가에 부여되는지를 명확히 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실천적 의미가 명백하지는 않다.

둘째, 아동은 표현의 자유(협약 제12조, 제13조), 결사·집회의 자유(협약 제15조), 대중매체에 대한 접근권(협약 제17조),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협약 제14조), 사생활의 자유(협약 제16조)를 가진다.

18) UN Doc. CRC/C/5(1991), General Guidelines Regarding the Form and Content of Initial Reports to be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para 1(a), of the Convention.

19)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를 우리나라 아동권리 국가보고서는 시민적 자유에 포함하였음.

셋째, 협약 37조~40조는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위법적 또는 자의적으로 자유 박탈, 다양한 형사 상의 보호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의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다음과 같은 4가지 형태로 유형화하였다.

첫째, 아동은 가족환경에서 성장할 권리를 가지며, 그러한 환경을 갖지 못한 아동들에 대해서는 가족환경을 대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Family Environment and Alternative Care)를 보장하여야 한다. 나아가, 아동이 부모 등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 등을 포함한 학사나 착취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협약 제19조). 그리고 아동은 그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아니하며,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은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협약 제9조). 또한 가족의 재결합을 위하여 아동 또는 그 부모가 당사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기 위한 신청을 한 경우에는 당사국은 긍정적이고 인도적인 방법으로 신속하게 취급하여야 하고, 부모가 타국에 거주하는 아동은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협약 제10조). 아동이 자신의 가족환경을 박탈당한 처지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특별한 원조와 대리적 보호를 보장하여야 한다.

둘째, 아동은 무차별의 원칙에 따라 건강과 복지의 혜택을 받을 권리(Basic Health and Welfare)를 가진다(협약 제24조 제1항). 아동은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협약 제26조 제1항), 취업부모의 아동은 아동보호를 위한 편의와 시설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협약 제18조 제3항). 모든 아동은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협약 제27조 제1항), 당사국은 필요한 경우 특히 영양·의복 및 주거에 대하여 물질적 보조 및 지원계획을 제공하여야 한다(협약 제27조 제3항).

셋째, 아동은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Education, Leisure and Cultural Activities)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중등교육도 모든 아동의 이용 및 접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고등교육은 능력에 따라 모든 아동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그리고 당사국은 학교에서 아동의 탈락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협약 제28조 제1항). 또한 학교의 교칙은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에 합치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협약 제28조 제2항). 또한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협약 제31조 제1항).

넷째, 특별한 곤란상태에 처한 아동은 특별보호조치(Special Protection Measure)를 받을 권리가 있다. 난민아동은 적절한 보호와 인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협약 제22조 제1항), 소수자나 원주민인 아동은 고유문화를 향유하고 고유의 종교를 신앙하고 실천하며 고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협약 제30조). 당사국은 무력분쟁의 영향을 받는 아동의 보호, 배려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협약 제38조). 또한 특별보호조치는 다양한 형태의 착취로부터 보호를 포함한다.

2.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권리보호와 밀접하게 관련 되어 있는 것으로 ‘이

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을 들 수 있다.

이 조약은 2003년 7월부터 발효한 국제법규로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불법체류 노동자에 대한 적극적 인식과 보호규정은 이 협약이 중요한 특색이다. 원래 3부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한 규정이지만, 불법체류 노동자가 가장 열악한 상태에 있으므로, 특히 불법체류 노동자에 대해 의미가 있다. 제3부의 내용은 대체로 세계인권선언, UN인권규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UN이주노동자권리협약은 이를 체계적·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 조약은 이주노동자와 가족의 자유권, 사회권, 참정권까지 광범위하게 보장하고 있다. 제3부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자녀 관련 조항은 아동권리협약 제7조 1항과 사실상 같은 내용이다. 불법체류노동자 2세들의 교육받을 권리까지도 보장하고 있다. 자녀의 권리(제29, 30조)로 아주노동자의 자녀는 성명, 출생의 등록 및 국적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이주노동자의 모든 자녀는 당사국의 국민과 평등한 취급에 기초하여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공립의 취학 전 교육시설 또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는 그 부모의 체류 또는 고용에 관한 비적법상태 또는 자녀 체류의 비적법성을 이유로 하여 거부 또는 제한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현재 이 조약에 가입하고 있는 나라는 주로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의 인력송출국가들이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산업선진국가들은 불법노동자의 조장과 이행에 따른 비용부담 때문에 가입을 하지 않고 있다.

그 외에도 다문화가정에 관련되는 국제법적 기준으로 '교육상의 차별 금지 협약'을 들 수 있는데, 이 협약은 1960년 12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총회에서 채택되었고 1962년 5월 22일에 발효되었지

만, 우리나라는 가입하지 않았다.

3. 기타 관련 협약

가. 인권선언 및 관련 협약

아동권리보장에 앞서서 인간의 존엄성과 보편적 가치, 천부적 권리 등 보편적인 증진을 위한 노력의 결실로 1948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이 채택된다. 세계인권선언은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신장시키는 유엔의 목적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한 것이다.²⁰⁾

그러나 세계적인 선언은 국가가 달성해야 하는 공동의 기준일 뿐 국가에 대하여 아무런 구속력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인권의 증진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선언 내용을 협약으로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러한 필요에 따라 1966년 12월 제21회 유엔총회의 결의로 국제인권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Human Rights)이 채택되었다. 그리고 1976년에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협약),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B협약), 그리고 국가와 함께 개인도 국제연합에 인권침해를 제소할 수 있게 한 B협약에 대한 선택의정

20) 세계인권선언 제2조 1항은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별 등 어떠한 종류 구분에 의한 차별 없이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전문 및 제1조에서는 이러한 권리는 인간의 고유한 존엄과 가치에서 나오는 것이며,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 및 평등하고 박탈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된다고 하고 있음. 이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국제인권규약A) 전문, 1~2조 및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국제인권규약B) 전문 및 1~2조, 그리고 아동권리협약 전문 및 1조에도 제시되어 있음.

서(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가 발효되어 가맹국에 대해 광범위한 인권을 인정하고 보호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²¹⁾

국적과 관련하여서는 제24조 제2항과 제3항은 “모든 어린이는 출생 후 즉시 등록되고 성명을 가진다,” “모든 어린이는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약이 아동의 국적 취득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역시 어느 국가가 아동에 대하여 국적을 부여할 의무가 있는가에 대하여는 언급은 없다. 아동의 출생 후 등록 요구도 그 자체 국적의 부여에 관한 조항은 아니나, 아동이 등록되지 않으면 사실상 무국적과 같은 상황에 처할 위험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적 부여에 못지않게 중요한 조항이다.

나. 인종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제5조는 모든 당사국은 국적 취득에 있어서 인종, 피부색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구별 없이 만인의 권리를 법 앞에 평등하게 보장하며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폐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이나 후천적 귀화에 있어서 인종차별적 조치가 취하여지지 말 것은 물론, 인종차별적 이유에 의한 국적의 박탈도 금지하려는 취지이다.²²⁾ 또한 무국적자 수를 줄이고, 특히 무국적 아동의 규모를 감소시키라는 취지이다.²³⁾

21) 1989년 12월 16일에는 사형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B규약에 대한 제2차 선택의정서’가 채택되어 1991년 7월 11일자로 발효되었다(한국 미가입). 1998년 9월 2일 현재 A규약, B규약, ‘B규약에 대한 선택의정서’, ‘B규약에 대한 제2차 선택의정서’의 당사국은 각각 137개국, 140개국, 92개국, 33개국이다. Chung, In-Seup, “Korean Accession to Human Rights Conventions”,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 국제인권법 워크숍(1998년 9월 17~18일) 발표논문, p.2 참조

22)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General Recommendation XXX, paras.14-15 (2005).

다.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협약

무국적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크게 하나는 무국적의 발생 자체 방지와 무국적자 보호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무국적에는 출생시부터 무국적자로 태어나는 선천적 무국적이 있을 수 있고, 원래는 국적이 있다가 나중에 국적을 상실한 후천적 무국적이 있을 수도 있다. 무국적의 발생을 방지하려는 노력은 선천적 무국적과 후천적 무국적 모두의 방지를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Stateless Persons)은 무국적자의 존재를 전제로, 이들 무국적자의 지위를 개선하려는 노력으로, 1954년 9월 뉴욕 회의에서는 독립된 조약으로 채택하기로 하였다. 채택된 조약 내용은 난민지위협약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반복하였다.

2009년 6월 현재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협약 당사국 수는 63개국이며, 한국은 1962년 8월 22일 가입하여 동년 11월 20일부터 적용을 받았다.

라. 무국적자 감소에 관한 협약

국제사회가 무국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채택한 또 다른 협약은 무국적자 감소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eduction of Statelessness)으로, 선천적 무국적의 방지와 후천적 무국적 방지 방안을 명시하고 있다.

무국적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면 무국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최선의 대책이다. 그러나 국적의 부여를 기본적으로 주권국가의 재량사항으로 보는 한 각국 국적법제의 저촉에 따른 무국적의 발생은 피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이 조약은 이러한 사태를 국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마련된 협약으로, 1961년 8월 30일 채택되어, 1975년 12

23) 상동, para.16.

월 13일 발효하였다. 2009년 6월 15일 현재 당사국 수는 36개국이며, 한국은 아직 서명하지 않았다.

제3절 지원 정책

1. 해외동포 지원 정책

해외동포에 대한 정책은 그 동안 국내에서 법적 위상을 확립하는 정책과 취업 지원 정책이 골자를 이룬다.

정부는 해외동포에 대한 정책으로 2006년 4월부터 동포귀국지원정책으로 불법체류 중인 중국 국적 및 구 소련 지역 거주 동포들이 자진 출국할 경우 1년 후 재입국과 취업이 보장하였고, 또한 2007년 3월부터 그동안 미국, 일본 등 거주 동포에 비해 국내 출입국과 체류활동 범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소외받아 온 중국, 구 소련 지역 등에 거주하는 동포에게 방문취업제를 시행하게 된다. 방문취업제는 만 25세 이상 외국국적 동포들에 대해 5년간 유효하고, 1회 입국할 경우 최장 3년간 체류할 수 있는 방문취업복수사증(H-2)을 발급하며, 동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들이 취업을 원할 경우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의 32개 단순노무분야에 종사할 수 있다.²⁴⁾ 이로 한국에 친척이 없었거나 한국에 올 생각을 하지

24) 이전의 정책을 보면,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은 1999년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외국 국적 동포도 출입국과 체류에 있어서 준 국민에 해당하는 혜택을 받게 되었음. 그러나 동법의 대상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동포들이 제외되어 논란이 있었고, 이후, 2001년 11월 29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외동포법” 제2조 2호와 “재외동포법 시행령” 제3조에 대해 해외로 진출한 동포를 정부 수립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차별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 불일치 판정을 내렸음. 이로 인해 2004년 3월 재외동포법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하위법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상의 제한조치에 의해 조선족과 고려인은 실질적인 재외동포로서의 권리를 제한받게 되었음. 반면 2004년 고용허가제로 외국인 노동력의 유입이 증가되었는데, 해외동포법에서 배제된 동포들에게는 2002년 12월 취업관리제(특례고용허가제)가 도입되었음. 취업관리제에서는 방문동거(F-1-4)로 입국

않았던 동포들도 비교적 쉽게 한국에 올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해외동포의 국내 유입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추진되었다. 2008년 12월에 수립한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다문화 관련 사업계획안을 제시하는데, 여기에 포함된 취업 등 지원정책으로는 2009년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고용정보 사이트 구축, 운영, 동포에 대한 고용지원 서비스 강화, 동포채류 지원센터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 중국, 중앙아시아 동포 중 단순기능 부여 종사 가능성이 없을 경우 재외동포(F-4) 자격부여를 점차적으로 확대, 영주권자격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표 III-3-1 참조).

〈표 III-3-1〉 재외동포 관련 정책

추진과제	세부사업내용	부처
재외동포 F-4 자격부여 확대	- 중국 CIS 동포 중 단순기능 부여 종사가능성 없을 경우 재외동포(F-4) 자격부여를 점차적으로 확대	법무부
동포에 대한 영주자격 확대	- 재외동포들이 국익 및 동포사회 발전에 적극 기여하도록 영주권 부여 확대 - 2009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재외동포(F-4) 또는 방문 취업(H-2) 자격소지자 중 일정한 요건 갖춘 자격 부여 기준 마련	법무부
동포 취업 실태 파악 및 관리	- 허용업종 이외 취업동포 강제퇴거 등 - 2009년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특례고용가능 확인서 미발급 사업장 제재조항 마련 - 내국인 대체 가능성이 높은 업종 중심으로 동포 취업 적정 규모 설정, 관리	법무부 노동부
외국국적 취업 동포 입국전 취업정보 제공 및 방문취업동포에 대한 취업 지원	- 2009년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고용정보 사이트 구축, 운영 - 주 중국 및 러시아 대사관 및 영사관 연계 - 동포에 대한 고용지원 서비스 강화	법무부 노동부

후 취업자격(E-9)으로 전환하였으며, 노동부에 의무적으로 취업 알선을 받아야 하고, 건설업 등 8개 분야에 취업이 가능한 3년 단수 사증을 발급받았음.

추진과제	세부사업내용	부처
체계적인 법률 지원사업 추진	-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등 재외동포 관련 콘텐츠에 법률 정보 보완	법무부
동포체류 지원센터 지원	- 동포체류 지원센터 추가 지정, 정확한 정보 제공	법무부

자료: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2008).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08-2012); 2010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

2. 해외동포 자녀양육 지원 정책

중국 동포를 포함하여 외국인 노동자 자녀를 지원하는 사업은 많지 않다. 중앙정부 사업으로는 ‘다문화가정 동반·중도입국 자녀교육 지원’이 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동반·중도입국 자녀는 외국에서 출생·성장하여 한국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거의 없고, 학령을 넘긴 자녀는 가족해체, 학습공백 등으로 학교생활과 상급학교 진학이 어려운 실정이다. 중도 입국국자녀의 경우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실시되는 사업은 미미하다. 여성가족부가 무지개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하여 2009년에 초기적응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데, 2010년에는 이를 수정·보완하고 시범 실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표 III-3-2 참조).

〈표 III-3-2〉 중도입국자녀 학력 지원

사업	개요	2010년 목표	부처
외국에서 출생 또는 성장한 아동·청소년 초기적응 프로그램 운영 (시범실시)	- 다문화아동청소년 초기적응 프로그램 실시 및 수정·보완 • 한국어(기초/학교생활 관련), 교우관계, 정체성, 생활(문화)영역, 학과(음악, 체육 등), 편입학시험 지도 등 • 3개월(주 5일, 전일제)	1개 지역 (10명~15명)	여성가족부/ 무지개청소년 지원센터/ 다문화청소년 종합지원 모델사업연계

자료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2008).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08-2012); 2010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

이외 정책은 뚜렷한 것은 없는데, 지방정부가 보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 경기 등에서 외국인 근로자 아동을 위한 보육시설 운영을 지원한다. 그러나 중국 동포 자녀만을 위한 서비스는 아니며, 실제 중국동포의 자녀는 거의 없다. 중국동포의 집에 속한 어린이집을 이용한다.

제4장 국내 거주 중국동포의 육아실태

제1절 국내거주 중국 동포 및 자녀 현황

1. 중국동포 및 자녀 현황 개요

법무부가 파악한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국내거주 중국 동포의 3/4이 방문취업 사증을 가지고 입국하였으며, 중국동포의 상당수가 불법체류 상태이다.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외국국적 동포는 2010년 6월 30일 현재 439,267명이며 이 중 87.0%인 382,190명이 중국동포이다. 이처럼 재외 동포에서 중국 동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표 IV-1-1 참조).

중국동포 중 76.1%인 290,710명이 방문취업제(H-2) 소지자이고, 3.6%가 해외동포 자격(F-4) 소지자이다. 전체 동포와 비교하여 방문 취업 비율이 높은 편이다(표 IV-1-2 참조).

외국국적동포 중 불법체류자는 총 25,883명이며, 불법체류자 중 95.6%인 24,754명이 중국동포이다. 중국 동포 불법체류자는 전체 국내 거주 중국 동포의 6.8%에 해당된다(표 IV-1-3 참조).

〈표 IV-1-1〉 재외동포 규모 및 국적

단위: 명(%)

국가	전체	중국	미국	캐나다	호주	기타
규모	439,267	382,190	34,003	8,744	2,596	11,734
(비율)	(100.00)	(87.01)	(7.74)	(1.99)	(0.59)	(2.67)

자료: 법무부(2010).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 월보 2010.6.30.

〈표 IV-1-2〉 재외동포 체류자격별 현황

단위: 명(%)

구분	전체	방문취업	재외동포	방문동거	기타
전체	439,267	297,775	34,003	8,744	63,095
(비율)	(100.0)	(67.79)	(7.74)	(1.99)	(14.36)
중국	382,190	290,710	13,914	-	-
(비율)	(100.0)	(76.06)	(3.64)		

자료: 법무부(2010).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 월보 2010.6.30.

〈표 IV-1-3〉 재외동포 불법체류 현황

단위: 명(%)

국가	전체	중국	러시아	기타
규모	25,883	24,754	94	1,035
(비율)	(100.0)	(95.6)	(0.04)	(4.00)

자료: 법무부(2010).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 월보 2010.6.30

〈표 IV-1-4〉 중국동포 자녀 성별 및 연령

단위: 명(%)

구분	남	여	전체	비율
전체	1,945	1,889	3,834	100.0
만0세	213	210	423	11.0
만1세	187	212	399	10.4
만2세	234	218	452	11.8
만3세	154	144	298	7.8
만4세	118	128	246	6.4
만5세	145	149	294	7.7
소계	1,051	1,061	2,112	55.1
만6-12세	617	571	1,188	31.0
만13-18세 이상	277	257	534	13.9

자료: 행정안전부(2010). 2010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결과.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와 더불어 외국인 부모 자녀도 증가하는데, 2009년 행정안전부 통계에 의하면 외국인 부모 자녀는 6,971명이고 이 중 55.0%인 3,834명이 한국계 중국인 부모의 자녀이다. 이외에는 중국이 가장 많다(표 IV-1-5참조).

〈표 IV-1-5〉 중국 외국인 부모 자녀 현황

단위: 명, %

구분	전체	중국 한국계		중국 한국계 이외					
		수	비율	중국	기타 동북아	동남아	남부아	중앙아	기타
전체	6,971	3,834	55.0	1,871	272	612	125	57	200
만0세	792	423	53.4	212	14	95	16	8	24
만1세	729	399	54.7	214	14	63	18	8	13
만2세	799	452	56.6	198	21	90	8	7	23
만3세	524	298	56.9	134	18	49	7	2	16
만4세	460	246	53.5	127	17	36	13	4	17
만5세	487	294	60.4	104	24	38	8	6	13
만6세	391	210	53.7	94	21	40	10	4	12
만7세	392	216	55.1	97	19	36	6	4	14
만8세	367	217	59.1	79	18	29	7	2	15
만9세	355	189	53.2	104	17	30	4	3	8
만10세	334	189	56.6	98	10	18	4	2	13
만11세	303	166	54.8	90	14	19	3	1	9
만12세	233	129	55.4	61	11	21	5	-	6
만13세	159	86	54.1	48	9	10	2	1	3
만14세	142	73	51.4	46	7	9	2	1	4
만15세	137	76	55.5	35	10	9	5	2	1
만16세	138	65	47.1	46	13	6	2	2	4
만17세	118	50	42.4	43	8	10	4	-	3
만18세	111	56	50.5	41	7	4	1	-	2

자료: 행정안전부(2010). 2010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결과.

이들의 연령 특성은 영유아가 2,112명으로²⁵⁾ 55.1%이고 초등학교생이 31.0%이며 12세 이상은 전체 아동의 13.9%인데, 영유아 중에서도 특히 영아가 33.2%로 1/3을 차지하고 유아는 21.9%로 영아의 2/3 정도이다.

25) 영유아 2,112명은 본 조사의 모집단으로 추정됨.

2. 국내거주 중국동포 영유아 가구의 일반적 특성

가. 인구학적 특성

국내거주 중국동포 가구 중 영유아 아동이 있는 가구의 가구원 수 규모는 평균 3.61명으로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에서 조사된 우리나라 영유아 가구 규모 3.99명²⁶⁾보다 다소 적다. 3명인 가구가 52.5%로 가장 많고, 다음이 4명인 가구가 29.2%이다

자녀수는 평균 1.34명, 영유아 수는 평균 1.07명이다. 자녀수는 1명이 71.7%로 다수이고 2명이 24.2%이다. 영유아 수는 1명이 93.3%이다(표 IV-1-6 참조).

〈표 IV-1-6〉 가구 규모 및 영유아 수 특성

단위: %(명)

구분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전체(수)	평균(표준편차)
총가구원 수	-	2.5	52.5	29.2	13.3	2.5	100.0(120)	3.61(0.84)
총자녀 수	71.7	24.2	2.5	1.7	-	-	100.0(120)	1.34(0.62)
총영유아 수	93.3	6.7	-	-	-	-	100.0(120)	1.07(0.25)

부모의 인구학적 특성으로, 먼저 연령대를 살펴보면, 아버지인 경우 30세 이하가 11.7%, 31~35세가 29%, 36~40세가 30.8%, 41~45세가 13.2%, 46~50세가 7.8%, 51세 이상이 7.5%로, 절반 이상이 30대로 나타났다. 어머니인 경우에는 31~35세가 38.3%, 30세 이하가 31.7%로 30세 전후가

26)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혈연가구의 가구원수 평균은 3.4명임. 그러나 본 조사 대상은 초 등학생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이므로 단독 가구, 부부가구 등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평균 가구원 수가 높음. 이렇듯, 조사대상자가 전체인구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조사대상자 특성은 전체 인구통계와는 차이가 있음.

70% 정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36~40세가 12.5%, 41~45세가 14.2%였으며, 40대 후반은 3% 남짓 정도이다.

〈표 IV-1-7〉 부모 연령

단위: %(명)

구분	30세 이하	31~35세	36~40세	41~45세	46~50세	51세 이상	계(수)
아버지	11.7	29.0	30.8	13.2	7.8	7.5	100.0(120)
어머니	31.7	38.3	12.5	14.2	2.5	0.8	100.0(120)

부모의 민족은 아버지의 99%가 조선족, 어머니의 88.3%가 조선족으로 대부분이 조선족이었다. 한족인 경우가 아버지 6.7%, 어머니 10.8%로 나타났다. 아버지는 2.5%가 한국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IV-1-8〉 부모 민족

단위: %(명)

구분	조선족	한족	한국	기타	계(수)
아버지	99.0	6.7	2.5	0.8	100(120)
어머니	88.3	10.8	-	0.8	100(120)

부모의 국적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중국인 경우가 대다수였는데, 아버지는 85%, 어머니는 94.2%였다. 한국국적을 취득한 경우는 아버지 11.7%, 어머니 5%로 아버지가 약간 더 많았다. 한편, 거주 국가에 대해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91.7%, 99.2%로 거의 대부분 한국으로 응답하였다.

〈표 IV-1-9〉 부모 국적

단위: %(명)

구분	중국	한국국적 취득	한국	기타	계(수)
아버지	85.0	11.7	2.5	0.8	100(120)
어머니	94.2	5.0	-	0.8	100(120)

〈표 IV-1-10〉 부모 거주 국가

단위: %(명)

구분	중국	한국	기타	계(수)
아버지	5.8	91.7	2.5	100(120)
어머니	-	99.2	0.8	100(120)

다음으로 한국에 있는 친인척 여부에 대한 설문 결과, 한국국적의 친인척 및 가족이 있는 경우가 아버지 60.8%, 어머니 47.5%로 나타났다. 중국국적의 친인척 및 가족이 있는 경우는 아버지 56.7%, 어머니 60%로 이었다. 한국에 거주하는 친인척 중 한국국적인 경우는 아버지 쪽이 어머니 쪽보다 비율이 더 높았던 반면, 중국국적인 경우는 어머니 쪽이 조금 더 높았다.

〈표 IV-1-11〉 한국에 있는 친인척 여부

단위: %

구분	한국국적의 친인척, 가족	중국국적의 친인척, 가족	(수)
아버지	60.8	56.7	(120)
어머니	47.5	60	(120)

부모의 건강상태는 아버지, 어머니 모두 대다수가 건강한 편이다. 질환이 있는 경우는 아버지 4.2%, 어머니 2.5%였던 반면, 장애가 있는 경우는 아버지 0.8%, 어머니는 없었다. 보통 취업을 위하여 입국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장애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표 IV-1-12〉 부모 건강

단위: %

구분	건강한 편	질환이 있음	장애가 있음	질환, 장애 모두 있음	기타	계(수)
아버지	91.7	4.2	0.8	-	3.3	100.0(120)
어머니	96.7	2.5	-	-	0.8	100.0(120)

나. 입국 및 체류

1) 입국 및 현재 체류 종류

아버지의 경우 한국에 처음 들어올 때 방문취업(H-2)이 31.7%로 가장 많고 다음이 가족초청, 단기연수 순인 반면, 어머니는 가족초청으로 한국에 온 경우가 35.8%로 가장 많고 방문취업(H-2)이 26.7%, 단기연수 9.2% 순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입국시 사증종류에 차이가 있다.

〈표 IV-1-13〉 입국시 사증종류

단위: %(명)

구분	방문 취업 H-2	단순 방문 관광	취업 고용	가족 초청	단기 연수	무사증	영주권 F-5	재외 동포 F-2	기타	무응답	계(수)
부	31.7	12.5	2.5	23.3	13.3	3.3	0.8	2.5	1.6	8.3	100.0(120)
모	26.7	14.2	0.8	35.8	9.2	2.5	0.8	5.0	4.1	0.8	100.0(120)

주: 기타에는 동반가족, 학업 등이 포함.

〈표 IV-1-14〉 현재 체류시 사증종류

단위: %(명)

구분	방문 취업 H-2	단순 방문 관광	취업 고용	가족 초청	단기 연수	무사증	영주권 F-5	재외 동포 F-2	기타	무응답	계(수)
부	51.7	4.2	0.8	5.0	0.8	5.8	2.5	3.3	10.8	11.7	100.0(120)
모	45.0	6.7	0.8	14.2	1.7	8.3	5.8	5.8	10.0	0.8	100.0(120)

주: 기타에는 동반가족, 학업 등이 포함.

상당수의 사증은 최초 입국시 사증과는 다른 종류로 변경되었다. 아버지의 경우 방문취업(H-2)이 51.7%로 입국시보다 20% 정도 증가한 반면에 가족초청이나 단기연수는 입국시와 비교해서 비율이 현저하게 낮아졌다. 가족초청으로 한국에 온 경우가 가장 많았던 어머니도 한국에 체류하면서 방문취업(H-2)으로 사증을 가장 많이 변경했으며 그 다음으로

영주권(F-5), 재외동포(F-4) 사증 순으로 사증종류를 변경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본 연구에서 국내에 와있는 중국동포들을 면담을 통해 입국시 사증종류를 변경하지 못해서 불법체류자로 남아있는 경우도 일부 있었다.

처음에는 연수생으로 왔죠...지금은 불법(체류자)이죠(어머니 1)

제가 볼 때는 단기비자로 왔다가 (중국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로 있다 보니 불법체류자가 되었어요. (어머니 5)

2) 한국에 온 이유와 한국국적 취득 희망여부

취업을 위해 한국에 온 경우가 아버지 88.8%, 어머니 89.2%로 절대적으로 많았다. 한국에 온 가장 주된 이유가 소위, '돈을 벌기'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수이지만 부모 또는 자녀의 학업을 이유로 한국에 온 경우도 있다. 기타는 '자녀 치료', '국적 회복', '결혼하려고' 등이 있었다.

〈표 IV-1-15〉 부모 학력별 한국에 온 이유

단위: %(명)

구분	취업	부모학업	자녀학업	기타	무응답	계(수)
부(전체)	88.8	-	1.7	2.5	7.5	100.0(120)
중학교 이하	96.8	-	-	0.0	3.2	100.0(31)
고급중학교졸	84.4	-	1.6	4.7	9.4	100.0(64)
전문대졸이상	91.7	-	4.2	0.0	4.2	100.0(24)
모(전체)	89.2	1.7	2.5	6.4	-	100.0(120)
중학교 이하	97.2	2.8	-	-	-	100.0(36)
고급중학교졸	91.8	-	1.6	6.6	-	100.0(61)
전문대졸이상	72.7	4.5	9.1	13.6	-	100.0(22)

한국에 온 이유는 부모 학력별로 유의한 상관관계는 없었다. 학력의 고하를 불문하고 부모취업이 한국에 오게 된 가장 큰 이유였는데 다만,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 어머니 그룹에서 '자녀교육'의 비율이 높게 나

타났다. 그러나 사례가 적어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자녀의 학업을 위해 한국에 온 경우는 드물기는 하지만 사례가 있음을 면담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보다는 한국 교육이 더 우수하기 때문에 자녀를 데리고 왔는데, 교육비가 비싼 것이 흠이지만 자녀에게 좋은 내용의 교육을 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교육내용 면에서는 꽤 만족하고 있다.

중국에서 키운 큰 애를 내가 들고 온(데리고 온) 목적은 여기서는 교육이 잘 되가 있다고.....중국이 발전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는 여기가 발전할 나장아. 중국보다는. 그대 교육이 좀 좋다 하길래, 인 뭐가 좀 교육도 좀 잘 시키라고 왔는데, 오고 보니, 경제상으론 그저 이래 딱히 네요... 그러나 (한국 교육에) 너무 만족해요. 이래 데리고 오는거지요. (어머니 4)

어린애들 지적인 것을 좀 중시하더라구요. 난 그게 정말 좋아요. 뭐 한 가지 이렇게 가는 그것을 설명해주고 정말 파고드는게 그런 게 있더라구요. 그리고 애들 어디가면 이래 체험하는 거, 이거는 뭐, 저번에도 고구마 심어놓은 데 우리 부모들이 갔는데 좀 그런 면에도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어머니 4)

부모의 한국 체류기간을 알아본 결과 아버지는 3년 이상~6년 미만인 32.1%로 가장 많았고 9년 이상이 27.5%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어머니는 3년 미만이 34.5%로 가장 많았고 3년이상~6년미만이 32.8% 순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한국체류 기간이 어머니보다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1-16〉 부모 한국 체류기간

단위: %(명)

구분	3년미만	3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9년 미만	9년이상	무응답	계(수)
부	22.9	32.1	17.4	27.5	-	100.0(120)
모	34.5	32.8	17.6	15.0	0.8	100.0(120)

본 연구진이 면담한 가정 중 다수가 10년 이상 한국에 장기체류한 것으로 나타났고, 20년 가까이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어머니들은 남편과 함께 입국하기 보다는 그 이후에 입국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남편은 1991년도에 왔고, 저는 99년도에 왔어요. (어머니 2)

남편은 (한국에) 온지 20년이 넘었고, 저는 중국에 쪽 있다가 2008년에 왔어요. (남편) 혼자 떨어져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와서 벌면 좀 더 낫겠다 싶어서 또 내가 왔어요. (어머니 3)

한편, 한국 국적 취득(회복)에 대한 질문에서 아버지의 경우 실제로 추진하는 경우가 20.8%이고, 기회가 되면 취득을 희망한다가 41.7%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25.8%가 응답하지 않아서 국적 취득 문제는 이들에게 신중하고 민감한 사안인 것으로 짐작된다.

〈표 IV-1-17〉 한국국적 취득 희망여부

단위: %(명)

구분	취득 추진중	취득 희망	취득희망 하지 않음	잘 모름	무응답	계(수)
부	20.8	41.7	10.0	1.7	25.8	100.0(120)
모	-	16.7	33.3	25.0	25.0	100.0(120)

〈표 IV-1-18〉 한국국적 희망하지 않은 경우 중국으로 갈 시기

단위: %(명)

구분	돌아가지 않음	1~2년 이내 돌아감	3~5년 이내 돌아감	5년 이후 돌아감	잘 모름	계(수)
부	26.7	45.0	11.7	6.7	10.5	100.0(120)
모	7.1	14.3	28.6	21.4	28.6	100.0(120)

한편, 한국 국적 취득(회복)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중국으로 다시 돌아갈 시기에 대해 물어 본 결과, 아버지의 경우 '1~2년 이내로 돌아가겠다'

가 45.0%로 가장 많고 어머니는 경우 '3~5년 이내 돌아가겠다'가 28.6%로 가장 많았다. 아버지, 어머니 모두 5년 이내 중국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희망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다(표 IV-1-18 참조).

전체 응답자 아버지의 56.8%, 어머니의 60.8%가 자녀가 한국 국적 취득을 희망하였다. 그리고 실제 자녀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는 경우가 아버지 22.5%, 어머니는 25.0%였다. 자녀의 한국국적 취득을 희망하거나 추진 중인 두 그룹을 합치면 대략 80% 이상으로 대다수의 부모는 자녀가 한국국적 취득을 원하고 있다. 부모의 학력과 자녀의 국적취득 희망 간에는 유의한 상관성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특이한 점은 아버지는 전문대졸 이상 고학력군에서 '자녀의 국적취득 희망하지 않음'이 12.5%로 가장 높았으나 어머니는 학력이 중졸 이하에서 '자녀의 국적취득 희망하지 않음'이 13.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 점이다.

〈표 IV-1-19〉 자녀의 한국국적 취득 희망여부

단위: %(명)

구분	취득 추진중	취득 희망	취득희망 하지않음	잘모름	기타	계(수)
부						
전체	22.5	56.8	10.0	3.3	7.5	100.0(120)
중졸이하	25.8	58.1	6.5	6.5	3.2	100.0(31)
고급중학교졸	20.3	59.4	10.7	1.6	7.8	100.0(64)
전문대졸이상	25.0	50.0	12.5	4.2	8.3	100.0(24)
모						
전체	25.0	60.8	10.0	3.3	0.8	100.0(120)
중졸이하	27.3	55.6	13.9	2.8	-	100.0(36)
고급중학교졸	19.7	67.2	8.2	4.9	-	100.0(61)
전문대졸이상	36.4	54.6	9.1	-	-	100.0(22)

자녀가 한국국적을 취득하기를 원하는 부모들은 자녀가 한국에서 학교교육을 제대로 이수해서 잘 성장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부모 모두 불법체류인 상태에서 출산한 자녀는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 못

하기 때문에 교육적 혜택을 거의 못 받고 있으며 기타 다른 면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다음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준다.

주번번호가 없으니까 교육비를 많이 지원받지 못하잖아요.. 뭐 이렇게 저희는 지원을 못 받잖아요. 그런 게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어머니 1)

학교선생님은 아이가 주번번호가 없다고 하면 조금 놀래시더라고요. 선생님은 왜 주번번호가 없냐고... 그러면 꼭 물어봐요. 왜 주번번호가 없어요? 외국인입니다. 그러면 왜 없어요? 꼭 물어봐요. (어머니 1)

유급은 자원봉사도 주번번호를 요구하더라고요. 학교나 동사무소 그런데서 도서관, 주번센터같은 데서 인쇄 책 도서대출같은 거 아이가 도서대출증이 없어서 항상 못 빌려요. 친구집에서... (빌려요)... (어머니 2)

이게(우리 아이가) 주번번호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가 어떻게 나오냐면 가상번호를 해 가지고 이게 뒤에 1자가 7개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자기 주번번호를 알아요. 그래서 주산 4급을 여섯 살 때 땀는데요 지금 4급부터는 공인 자격증이어서, 주번번호가 있어야 땀 수 있다고 해서 지금 한 몇 년째 손을 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제수학대회가 있는데 거기도 이 주번번호가 없어서 나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어머니 2)

그러나 불법체류자 자녀라 하더라도 우리 헌법이나 교육법상 교육의 권리는 보장되어 있다. 실제 불법체류자 자녀라 하더라도 초등학교는 교장선생님의 재량에 따라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학교 다니는 것은 크게 지장 없더라고요. 왜냐면 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책이 많이 좋아져서 학교를 다 받아주게 돼 있더라고요. (어머니 1)

문제는 초등학교 들어갈 때 걱정이 되더라고요. 불법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다니는 교회에서 아이들이라고 해도 법적으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해서 OO초등학교에 가서 교장선생님에게 말씀 드렸어요. 그랬더니 교장선생님 흔쾌히 받아주시더라고요. 애들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불법이라고 하지만 교육은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받아주겠다고 했어요. 그 때 당시 우리 애하고 또 다른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어머니 5)

그러나 학교장의 재량이 다 보니 모든 학교에서 입학할 허용하는 것은 아니었다. 특히, 중학교의 경우에는 입학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하였다.

중학교는 거의 못들어 가. 우리가 전화통화를 하고 세 번? 네 번?이나 찾아가서 면담을 해서 우리는 이런 상황이다 했더니 그때서야 학교에서 받아주더라고요. (학교 측에서는) 다문항에 속하는 줄 알고, 시집오는 결혼이민자인 생각하고 상담을 했는데 쪽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게 아닌 거 알고 안된다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3)

다. 사회경제적 특성

영유아 자녀를 둔 국내거주 중국동포가정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부모의 최종 학력, 취업 현황 및 근로시간, 가구 소득과 지출, 주거형태와 비용, 건강보험의 가입여부 등 크게 5개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 부모의 학력

국내거주 중국동포 부모의 최종학력은 약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가 고등학교 졸업자였으며, 대학 이상의 학력 비율은 부 20.2%, 모 18.4%로 응답자의 약 1/5수준이었다. 중졸이하의 학력은 부 26.1%, 모 30.3%로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표 IV-1-20참조).

〈표 IV-1-20〉 부모 최종 학력

단위: %(명)

구분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3년제 이하)	대학교 (4년제 이상)	대학원 이상	계(수)
부	0.8	5.0	20.2	53.8	10.1	9.2	0.8	100.0(119)
모	0.8	5.9	23.5	51.3	10.9	6.7	0.8	100.0(119)

2) 취업 및 근로 현황

중국동포가정 영유아자녀 부모들의 현재 한국에서의 직업을 조사한 결과, 부의 경우 약 85%의 대다수가 기능, 기술 및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무직인 경우는 응답자 중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 경우는 약 47%가 무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직업을 갖고 있는 모의 경우 부와 마찬가지로 기능, 기술 및 단순노무직 28.6%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서비스 및 조리업 12.6%가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21〉 부모 직업

단위: %(명)

구분	부		모	
	중국에서	한국에서	중국에서	한국에서
전문직	7.1	1.8	10.9	0.8
사무직	20.4	0.9	23.5	4.2
서비스/조리/서빙	11.5	3.7	6.7	12.6
판매	10.6	2.8	12.6	6.7
농업	15	-	11.8	-
기능/기술/단순노무	15.9	85.3	11.8	28.6
운전/운송	7.1	5.5	-	-
기타(학생)	1.8	-	0.8	-
무직	10.6	-	21.8	47.1
계(수)	100.0(113)	100.0(109)	100.0(119)	100.0(119)

주: 무응답(부 11사례, 모 1사례) 제외한 유효응답 기준임.

현재 한국에서의 직업을 과거 중국에서의 직업 활동과 비교하면, 중국에서는 부모 모두 사무직에 종사한 비율이 가장 많았으며 직업활동의 종류가 다양하였다. 중국동포부모의 한국에서의 직업 종류가 과거 중국에서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기능, 기술, 단순노무 및 서비스직에 국한되어 있는 편이다. 부의 경우 중국에서 10.6%가 무직이었으나 한국에서는

무직이 없어서 남자의 경우 구직이 한국에 온 주요 목적임을 보여준다. 한편 모는 무직 비율이 중국 21.8%, 한국 47.1%로 한국에서 늘어났다. 이는 모에게 한국에서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며 맞벌이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표 IV-1-21참조).

한국 오기 전에는 애기아빠는 체육선생, 저는 주일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면서 한장푼 판매일을 했었어요. 저는 지금 여기서 불규칙하게 식당일을 해요. (국내 5)

애 아빠는 젊었을 때, 한 10년 넘게 집 짓는데 현장에 나가 노동일 했대요. 그 돈으로 중국에서 아이들 교육 다 시켰지요. 그런데 10년 넘게 일하고 나니까 맥이 빠지고 팔이 너무 저려 잠을 못 자요. (국내 4)

중국에서는 시골에서 농사지었어요. 여기서는 하루에 24시간 일하는 셈이에요.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형태로 일하고 있어요. (국내 6)

애 아빠는 중국에서 개인가게 장사를 했고, 저는 중국에서 학교 마차자 마차 얼마 안되서 나왔가지고.. 애 아빠는 여기서 현장에 나가 일하고, 저는 집에서 아기만 키웁니다. (국내 7)

국내거주 중국동포 부모들에게 지난 3개월을 기준으로 주중 평일 하루 동안 일하는 시간을 조사한 결과, 부의 경우 약 73%에 해당하는 대다수가 평일 하루 9~12시간 일한다. 하루 평균 10시간 30분이다. 모의 경우는 평일 하루 노동시간이 8시간 미만 37.5%, 8시간 23.4%, 9~10시간 32.8%로 비교적 다양하게 분포하며, 주중 1일 평균 약 9시간 30분으로 남편에 비해 다소 적었다(표 IV-1-22참조).

〈표 IV-1-22〉 부모 1일 노동시간

구분	단위: %(명)						계(수)	평균 (표준편차)
	4시간 이하	5~7시간	8시간	9~10 시간	11~12 시간	13~15 시간		
부	-	3.7	17.4	27.5	45.8	5.5	100.0(109)	10.5(1.9)
모	3.1	34.4	23.4	32.8	6.3	-	100.0(63)	9.6(2.7)

〈표 IV-1-23〉 부모 1주 노동시간

단위: %(명)

구분	20시간 이하	21-30 시간	31-40 시간	41-50 시간	51-60 시간	61-70 시간	71-80 시간	81시간 이상	계(수)	평균 (표준편차)
부	-	0.9	5.5	19.3	27.5	11.0	28.4	4.5	100.0(109)	61.1(14.1)
모	3.2	7.9	14.3	19.1	20.7	11.1	20.6	3.2	100.0(63)	55.2(17.2)

일주일 단위로 노동시간을 물어본 결과, 다양한 시간 분포를 보인 가운데 주당 71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부 32.9%, 모 23.8%로 적지 않은 비율을 보였다. 주당 평균 부 61시간, 모 55시간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일주일간 총 노동시간을 6일로 나누었을 때 응답된 1일 평균 노동시간과 유사하게 나타나 중국동포의 경우 일주일의 6일을 일하는 근로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반적으로 모의 평균 근로시간이 부에 비해 적으나, 풀타임, 파트타임의 노동시간의 다양함은 모의 경우가 부에 비해 많았다(표 IV-1-23 참조).

에 아빠는 현장에서 노동일 하는데, 하루 전심시간 빼고 12시간정도 일 하고. 일당으로 한달에 20일 정도 일하고 200~250만원정도 벌어요. (국 내 8)

저는 식당일 하고 매일 10~11시에 끝나고 가요. (국내 5)

〈표 IV-1-24〉 부모 취업 지표

단위: %

구분	취업율	파트타임 취업율	맞벌이 비율	(수)
부	90.8	3.7	44.2	(120)
모	52.5	37.5		(120)

주: 무응답을 포함하여 전체 표본(N=120)을 기준으로 함.

부모의 직업 유형과 근로시간 자료에 대한 응답을 중심으로 취업 지표를 살펴본 결과, 응답자 120명중 종사 직업에 대해 응답한 비율은 부

90.8%, 모 52.5%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노동시장참여율을 보였다. 그 중 맞벌이 비율은 120가구 중 44.2%로 조사되었다. 취업자중 평일 하루 8시간미만의 근로시간을 보인 파트타임 종사비율은 부 3.7%, 모 37.5%로 나타났다(표 IV-1-24 참조).

3) 소득 및 지출

중국동포가정의 한국에서의 가계경제를 조사한 결과, 78%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아버지가 월평균 100만원대의 평균 수입을 갖고, 모의 경우는 100만원 미만 약 38%, 100만원대 약 60%로 조사되어 월평균 소득에 있어 부 168만원, 모 101만원으로 남녀 간 소득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의 수입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는 3.8%로 나타났다(표 IV-1-25참조).

한국에 와서 진짜 발전은 했어요. 정말 여기서도 부지런하게들 살더라구
요. 우리가 중국에 있을 때에는 이렇게까지 안 살았어요. 아침 일찍 나
가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막 이래 일하니까 정말 돈은 일찍 하면 나오는
구나 이걸 느꼈어요. (국내 4)

〈표 IV-1-25〉 부모 소득

단위: %, 만원

구분	0	1~50 만원 미만	50~100 만원 미만	100~150 만원 미만	150~200 만원 미만	200~250 만원 미만	250~300 만원 미만	300~350 만원 미만	350~400 만원 미만	400만원 초과	계 (수)	평균 (표준편차)
부	-	-	1.8	23.9	54.1	11	5.5	1.8	0.9	0.9	100.0 (109)	168.0 (49.3)
모	1.6	3.2	33.3	42.9	17.5	1.6	-	-	-	-	100.0 (63)	101.0 (28.9)

월평균 가구 총 소득 및 지출은 가구소득 평균 212만원, 지출 평균 약 170만원으로, 소득에 비해 지출의 규모가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가구 소득 3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가구는 17.5%, 200만원대 35.0%, 150만원 미만 15.8%로 중국동포 가정에도 소득수준 차이가 있다.

〈표 IV-1-26〉 가구 소득 및 지출

단위: %, 만원

구분	소득	지출
150만원 미만	15.8	25.0
150-200만원 미만	31.7	40.0
200-300만원 미만	35.0	33.3
300만원 이상	17.5	1.7
계(수)	100.0(120)	100.0(120)
평균 (표준편차)	212.1(80.2)	169.5(50.1)

면담조사를 통해 조사한 결과, 가구소득의 상당부분이 집세와 자녀 양육 및 교육비로 쓰이고 있었으며, 특히 주거비와 육아비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집세내야지, 교육비 대야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요. (국내 3)

돈을 조금 모으더라도 이 곳 전세금에 여기서 다 쓰게 되요. (중국) 집으로 송금해본 적도 없고. 오직 애 하나 키우는데 가장 많은 돈이 들어요.. (중국에 있는) 형이나 누나들이 (오히려) 생활비를 좀 보태주신 적은 있어요. (국내2)

유새 애들을 어린이집에라도 보내려면 애 옷도 좀 따라가야 되잖아요. 락 입으면 워국애라 해서 뒤떨어질까봐, 한푼이라도 더 벌어서 다른 친구들한테 뒤떨어지지 않게 해줘요. 낯 낄듯게 한 두 시간 더 일하면 돈 1만원씩 더 벌거든요. 그러면 그 돈으로 내가 락 예쁜 옷 사입혀 보내요. 그렇게 일하지 않으면 애 옷 한 벌 사입히지 못해요. (국내 3)

부모의 취업률은 가구소득수준에 따라 살펴보면 가구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맞벌이 비율이 높다. 소득 150만원 미만의 저소득 가정에서는 맞벌이 비율이 낮고 모의 외벌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표 IV-1-27〉 가구소득에 따른 취업 지표 현황

단위: %(명)

구분	부 취업율	모 취업율	맞벌이비율	(수)
전체	90.8	52.5	44.2	(120)
150만원미만	57.9	42.1	5.3	(19)
150~200만원미만	94.7	13.2	7.9	(38)
200~300만원미만	100.0	76.2	76.2	(42)
300만원이상	95.2	85.7	81.0	(21)
$\chi^2(df)$	30.18(3) ^{***}	43.15(3) ^{***}	60.93(3) ^{***}	

주: *** p<.001

면담조사 결과, 취업구조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맞벌이 가정이라 해도 가계소득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거나, 체류신분상의 불안으로 인해 저축 등의 금융권 거래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에 아버지는 일당으로 그저 그렇게 일을 하다가 일거리 있으면 하고 없으면 그냥 들어오는 날도 많아요. 그러다보니 저보다 못 벌 때도 많지요. 나는 식당에서 그저 무조건 매일 일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제가 (남편보다) 좀 많이 벌어요. 최소한 100만원 정도는 채워야 살으니까. (국내 4)

여동생이 여기로 시집을 왔, 여동생 이흠으로 다 등록을 해놓고, 통장부터 핸드폰, 전세계약서까지 동생 이흠으로 해요. 돈을 벌어도 통장하나 제 이흠으로 맡겨서 저축할 수가 없어요. 진짜 잘 몰라요. (국내 2)

또한 불법체류신분 동포가정의 가정생활의 어려움이 면담조사를 통해 응답되었다.

아이 아버지를 한국에 보내준다는 것 때문에 사기를 당했어요. 그 돈 찾으러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게 제대로 안되고, 한국에 들어오면서 빚을 많이 내서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맞벌이로) 돈을 벌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남편이 불법체류로 인해 중국으로 강제출국 당했어요. 저 혼자 아이만 낳게 되었어요. 저는 식당에서 밤 10, 11시까지 일하고 있는데 불법으로 있다보니 일자리 찾기도 쉽지않고, 일을 하고도 돈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있어 너무 어려워요. (국내 5)

신분이 마땅치 않으니깐 나눴대요. 일을 하기가 힘들어요. 부업도 하고, 나눴대요. 봉사도 하면서 교회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국내 10)

4) 주거 형태 및 비용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중국동포가정의 한국에서의 주거 형태는 보증금을 내는 월세의 비율이 약 63.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전세가 약 31.7%로 조사되었다. 자가를 소유한 비율은 1사례에 불과하였으며, 그 외 기타 주거형태는 5사례로 조사되었다(표 IV-1-28 참조).

〈표 IV-1-28〉 현재 주거 형태

단위: %(명)

구분	자가	전세	보증금 월세	기타	계
주거형태 (수)	0.8 (1)	31.7 (38)	63.3 (76)	4.2 (5)	100.0 (120)

〈표 IV-1-29〉 주거 형태별 주거 비용

단위: %, 만원

구분	보증금 월세	전세
전체	63.3	31.7
월세금		
20만원이하	14.5	n/a
21-30만원	53.9	
31-40만원	31.6	
월세 평균(표준편차)	28.55(6.22)	-
보증금 및 전세금		
1000만원이하	89.5(68)	-
1001-2000만원	5.3(4)	18.9
2001-3000만원	1.3(1)	45.9
3001-4000만원	3.9(3)	16.2
4001-5000만원	-	10.8
5001-8000만원	-	8.1
보증금/ 전세금 평균(표준편차)	652.9(850.2)	3,305.4(1,379.6)
계(수)	100.0(76)	100.0(38)

주: 자가 1사례의 주택비용(2억원)은 제외함.

응답가정의 63%가 보증금 월세의 주거형태를 갖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 월세의 경우, 보증금은 평균 653만원이고, 평균 29만원의 월세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증금은 90% 이상이 1000만원 이하이다. 약 32%를 차지한 전세의 경우, 대부분 1000~4000만원대의 전세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전세금 평균 3,300만원이다(표 IV-1-29 참조).

집세는 최대한 독아다니고 알아타서 방 한칸에 월 20만원까지 구했어요. 월세지, 전세는 연두도 못 내요. 난 여기 전세만 태도 살겠더라고요. 20만원이면 애 교육비가 벌써 들어가는거잖아요. 보육시설에 30만원 빠져나가고, 또 어디갔다하면 얼마 또 나가고, 먹어야 하고 (국내 4)

5) 건강보험 가입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외국인 근로자도 가입 대상이며, 시행규칙 제45조 2항 관련 별표로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자격에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F-4), 영주(F-5), 방문취업(H-2)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²⁷⁾

영유아 부모의 건강보험 가입여부를 조사한 결과, 부 67.0%, 모 64.4%의 응답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모의 건강보험 외 사회보험(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은 부의 경우 약 30% 이상, 모의 경우 약 10%의 가입율을 보여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은 부에게 사회보험 가입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표 IV-1-30 참조).

중국동포가정 부모의 건강보험 가입률을 가구특성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월가구소득 수준별로는 15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 가정에의 50%가 부의 건강보험에 가입한 것에 비해 300만원 이상의 소득 가정의 75%가

27) 이외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홍행(E-6), 특정활동(E-7),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내향선원(E-10)도 포함됨

부의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소득수준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률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학력수준과 연령에 따라서도 나이가 젊을 수록 그리고 고학력일수록 건강보험 가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V-1-31 참조).

부모의 건강보험 월 납입액은 부 약 4만 5천원, 모 약 2만원으로, 부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IV-1-32 참조).

〈표 IV-1-30〉 건강보험 및 사회보험 가입 현황

단위: %(명)

구분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수)
부	67.0	35.8	34.9	33.9	(109)
모	64.4	10.1	10.1	10.1	(119)

〈표 IV-1-31〉 건강보험 가입률 비교

단위: %

구분	부	모	구분	부	모
전체	67.0	64.4		67.0	64.4
부연령별			월가구소득		
20대	88.9	75.0	150만원미만	50.0	37.5
30대	71.6	75.0	150-200만원미만	72.2	73.7
40대	53.1	47.2	200-300만원미만	64.3	65.9
X ² (df)	5.41(2) [#]	8.41(2) [*]	300만원이상	75.0	71.4
모학력별			X ² (df)	2.48(3)	7.01(3) [#]
중졸 이하	45.7	38.9			
고졸	73.1	70.7			
전문대졸	90.0	95.5			
X ² (df)	12.88(2) ^{**}	20.71(2) ^{***}			

주: # p<1, * p<.05, ** p<.01, *** p<.001

〈표 IV-1-32〉 부모 건강보험 월납입액

단위: 원(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수)
부	44,554 (24,422)	(73)
모	19,857 (26,931)	(76)

응답자들은 면담조사에서 건강보험 가입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응답하였다.

원래 애들만 되고 부모는 안 되었는데, 처음에는 안해주더니.. 애가 의료보험이 이제 되었으니까 언마도 도와주는 식으로 해달라 몰리자 그 해주더라구요. 이제는 저런 아이 둘 꺼한 한 달에 1만 5천원 매달 빠져 나가요. 우리에게 돈 천원 없어도 그거는 계속 빠져나가게 하자 그대요. 언마, 아빠 둘 중에 하나는 건강해야지 해서 둘이예요. 남편 의료보험은 없어요. (국내 4)

보험 가입이라는게, 다 주민번호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게 없어서 아예 생각을 못해요. (국내 2)

애기아빠가 작년 6월에 많이 다쳐서 1년째 지금 치료를 받고있는데요. 다행히 산재가 되었어요. 사실 잘 안해주는데.. 노무사 사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많이 싸웠어요 이런게 잘 안해서 저희가 손해보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국내 1)

전체 응답자중 약 3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미가입자에게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월 납입액이 비싸서'라는 비용부담의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다'라는 응답이 나타나 체류신분상의 이유로 합법적인 가입대상에 속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보 부족'의 이유는 응답한 대상자가 없었다(표 IV-1-33참조).

〈표 IV-1-33〉 건강보험 미가입이유

구분	단위: %(명)				기타	(수)
	가입대상이 아님	월납입액이 비싸서	정보가 없어서	정보부족		
부	29	63	-	9	(35)	
모	29	59	-	7	(41)	

라. 가족 특성: 가구원, 배우자, 자녀, 자녀동거, 당면문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동포들은 주로 일자리를 찾는 등 경제적 이유로 국내에 입국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배우자나 자녀들과 한국에 입국하여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중국에 배우자나 자녀들을 두고 떨어져 사는 경우가 더 많다. 이들은 국내에 입국하여 정착하는 과정에서 가족생활에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 바, 여기서는 이들의 가족생활 특성과 당면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국내거주 영유아 양육 중국동포들의 가족생활의 특성을 살펴보면, 조사대상 120사례의 중국동포는 현재 배우자도 한국에서 같이 지내고, 자녀들 모두가 한국에서 거주하며 부모와 함께 지내는 ‘부부와 자녀’의 핵가족 형태로 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 모습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의 대상이었던 한국에 영유아 자녀가 하나라도 있는 국내 거주 중국동포들은 배우자도 한국에서 같이 지내고 있는 경우가 90.0%에 달한 반면, 배우자는 중국에 있거나 배우자 없이 지내는 경우는 각각 4.2%, 5.8%로 많지 않았다(표 IV-1-34참조).

〈표 IV-1-34〉 배우자와의 동거여부

단위: %(명)

구분	한국에서 같이 지냄	배우자가 한국에 있으나 함께 안 지냄	배우자는 중국에 있음	배우자 없음	계
비율	90.0	-	4.2	5.8	100.0
(수)	(108)	-	(5)	(7)	(120)

이는 부모 모두가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이 58.1%로 낮은 편인 중국 거주 중국동포에 대한 조사결과와는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²⁸⁾, 본 연구의

28) 제5장 중국거주 중국동포의 영유아 육아실태의 표 V-25 참조

대상인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 영유아가 있는 중국동포의 가정은 중국내 중국동포와는 달리 '영유아'가 있기 때문에 특히 부모 모두의 역할이 필요하고, 또한 한국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가 종종 있어 중국거주 동포와는 부모와의 동거 형태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IV-1-35〉 자녀의 거주 국가

단위: %(명)

구분	자녀 거주 국가		한국거주 자녀 동거여부			계
	자녀 모두 한국에 거주	자녀가 한국, 중국에 거주	자녀 모두와 함께	자녀 일부는 따로	자녀 모두와 따로	
비율 (수)	77.5 (93)	22.5 (27)	98.3 (118)	0.8 (1)	0.8 (1)	100 (120)

〈표 IV-1-36〉 한국에서의 가족 형태

단위: %(명)

구분	부부와 자녀	한부모와 자녀	3세대 이상	기타	계
비율 (수)	72.5 (87)	5.8 (7)	21.7 (26)	-	100.0 (120)

또한 이들의 자녀도 대부분 모두 한국에 같이 입국해 있으나, 일부의 자녀는 중국에 두고 온 경우도 22.5%로 약 1/4에 달하였는바, 중국에 홀로 남겨진 자녀의 양육 문제나 학업 문제, 이로 인해 가족 간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된다 하겠다. 중국동포와의 면담내용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확인되었다.

지금 스무살 된 오빠는 중국에 따로 혼자 있어요... 그러니 거기 북쌍해
요. ... (중략) ... 지도 이래, 어 뭐, 내 대학가면 뭐하겠노 그거 돈이 들
어가는데, 언마, 아빠 이래 벌어가지고 돈도 못 대겠는데 ○○이나 시키
라고, 지는 알아서.. 여기 나오게끔 그저 비자만, 맨날 비자 준 해결해

달라고, 전화오는 게 그거에요..(어머니 4)

형은 이제 여기..작년부터 나오겠다 해서, 동생 보고싶다고, 나오겠다 해가 우리가 뜬 들어갈라니 내 일을 해야되지, ...(중략)...그러면 일을 못하면 안 되잖아 우리이거, 집이고 다 집세도 내야되는데 어떻게 처치 해요(그래서 한 번도 한국에 나간 본 적이 없어요)(어머니 4)

(영주권이 있으면 초청이) 한번은 된다 하는데 비자는 잘 안 떨어진다 하더라고요. 그 때까지고 연락하다 안 했어요. 다 물어보니 비자가 안 떨어진다 하니...(어머니 4)

지금 (한국에) 둘이 있고, 중국에 하나 있고(어머니 7).

이처럼 적지 않은 중국동포들이 자녀 중 일부와 이별하여 살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에 함께 입국해 있는 자녀의 경우는 대부분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동포들이 한국에서 꾸리고 있는 가족의 형태는 대부분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의 형태이지만,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3세대 이상의 가족도 21.7%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이는 최근 중국동포들이 국내에 입국할 경우 한 사람이 국내에서 정착할 기반을 얻게 되면 다른 친척들도 차례로 입국하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고 본 연구의 대상이 영유아를 둔 동포라는 점에서 부모의 근로시간에 영유아 자녀를 돌보아 줄 인력인 조부모와의 동거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중국동포들이 국내에서 이루고 있는 가족생활을 통해 최근 국내 유입이 꾸준히 늘고 있는 중국동포들은 단순히 몇 년 간의 근로생활 후에 중국으로 돌아가기 보다는 국내에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이 함께 입국하여 정착을 하고자 하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동포의 심층면접 결과에서는 최근 들어 중국 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자녀들도 외국보다는 중국에 기회가 많

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한국에서 자녀에 대한 제도적, 경제적 지원이 있다고 해도 ‘아이 장래를 위해 중국에 두겠다’는 의견이 35.6%에 이른 반면 ‘무조건 아이를 데리고 가겠다’는 의견은 11%에 불과하여 현재 한국거주 중국동포와 중국거주 중국동포의 인식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²⁹⁾. 또한 한국거주 중국동포의 연구대상은 영유아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자녀의 출생지도 한국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중국어에는 서투르거나 모르고 오히려 한국의 환경에 적응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IV-1-37〉 국내거주 중국동포 가족이 직면한 당면문제

단위: %(명)

	1순위		2순위	
	비율	(수)	비율	(수)
경제적 어려움	55.0	(66)	16.8	(20)
자녀양육의 어려움	22.5	(27)	39.5	(47)
자녀 교육의 어려움	9.2	(11)	17.6	(21)
가족간의 이별	2.5	(3)	8.4	(10)
가족간의 갈등	-	-	-	-
실직의 두려움	4.2	(5)	2.5	(3)
국적 취득의 어려움	6.7	(8)	14.3	(17)
기타	-	-	0.8	(1)
계(수)	100.0	(120)	100.0	(119)

이러한 가족생활의 특징과 함께 이들 중국동포 가족이 한국에 거주하면서 직면하여 겪고 있는 당면 문제들을 1순위, 2순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표 IV-1-37 참조). 국내거주 중국동포들이 한국에 거주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1순위의 문제로 꼽은 것은 ‘경제적 어려움’ 55%이었고, 이밖에 ‘자녀양육’ 22.5% 및 ‘교육’ 9.2%로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29) 제5장 중국거주 중국동포의 영유아 양육실태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였음.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부분 경제적 이유로 일자리를 찾아 한국으로 건너온 중국동포들은 가장 먼저 생존의 문제인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크게 느끼며, 또한 자녀나 배우자 등 가족 모두와 이주한 경우 또는 한국에서 자녀를 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거나 교육시키는 것을 당면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어려운기 지금... 너무 곤란해... 집세 내야되지, 애 교육비... (보육시설 다니는데) 30만원 무조건 빠져 나가고 또 어디 갔다하면 또 몇천원 내라하면 또 내야되고... 이거 너무 힘들더라고요 인기.. 이것만 또 조금만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는데... (웃음)(어머니 4)

어컨이집에 나가고, 할머니한테 50~70만원 나가고, 떨어져 힘들어요. 언자가 불법이니까 애 공부시키기도 힘들잖아요. 집도 월세 방에서 사는데... (어머니 6)

이들이 2순위로 든 가족의 당면문제에서는 자녀양육 및 교육의 문제, 국적 취득, 가족간의 이별 문제가 많다. 이러한 응답에서 이들은 가장 먼저는 기반이 없는 타국에서 정착하여 생활하는 경제적 문제를 가장 직접적으로 느끼게 되지만 경제적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상황에서는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필요한 신분상의 불안정을 해결할 '국적 문제'의 해결이나 타국에서 주류사회로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자녀의 올바른 성장과 적응 등 자녀양육과 교육의 문제가 주된 문제로 떠오르게 됨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한국으로 이주하면서 중국에 두고 온 가족이나 일자리 등으로 인해 흩어져 생활하는 가족 간의 이별 문제도 그 비중이 커짐을 알 수 있다.

제2절 영유아 특성과 발달

1. 인구 및 사회학적 특성

조사대상 중국 동포 아동의 출생순위는 첫째아 72.1%, 둘째아 22.5%, 셋째아 이상은 5.4%이다. 연령구분에 따라서는 연령이 어릴수록 첫째아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표 IV-2-1 참조).

〈표 IV-2-1〉 출생순위

단위: %(명)

구분	출생순위				건강상태			계(수)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이상	건강함	질병있음	장애있음	
전체	72.1	22.5	3.9	1.6	97.7	1.6	0.8	100.0(129)
0세	76.0	24.0	-	-	96.0	4.0	-	100.0(25)
1세	74.4	23.1	2.6	-	100.0	-	-	100.0(39)
2세	65.5	24.1	3.4	6.9	96.6	3.4	-	100.0(29)
3세	83.3	16.7	-	-	100.0	-	-	100.0(12)
4세	69.2	15.4	15.4	-	92.3	-	7.7	100.0(13)
5세 이상	63.6	27.3	9.1	-	100.0	-	-	100.0(11)

영유아의 건강 및 질병 상태는 97.7%가 이상이 없고 0.8%가 장애, 1.6%가 질병이 있다고 하여 전체 아동 중 2.4%의 아동이 질병 또는 장애가 이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IV-2-1 참조). 이는 2009년 조사 결과 우리나라 영유아 건강 및 질병 상태는 97.9%가 이상이 없고 0.7%가 장애, 1.3%가 질병, 그리고 0.1%가 질병과 장애가 있다고 하여 전체 아동 중 2.1%의 아동이 질병 또는 장애가 이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막내 자녀를 중심으로 부모의 결혼상태를 보면 아버지는 초혼이 93.9%이고 재혼이 5.3%이며, 어머니는 초혼이 84.0%이고 재혼이 10.9%로,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재혼 비율이 높았다(표 IV-2-2 참조).

형제자매는 연령이 최대 22세까지 분포한다. 연령이 많은 형제 자매는 주로 재혼 가정에서 나타난다.

〈표 IV-2-2〉 막내자녀 부모 결혼상태

단위: %(명)

구분	초혼	재혼	이혼	사별	계(수)
부	93.9	5.3	-	0.9	100.0(114)
모	84.0	10.9	3.4	1.7	100.0(119)

주: 별거중, 비혼인/동거, 기타 보기로 주었으나 응답자 없었음.

영유아 자녀의 건강보험 가입상태를 보면 66.1%는 가입하였고, 32.3%는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부모의 건강보험 가입 비율과 유사한 수준이다. 아동연령별로 일정한 경향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영유아의 16.5%는 건강보험 이외 가입한 보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IV-2-3 참조).

〈표 IV-2-3〉 자녀의 건강보험 가입여부

단위: %(명)

구분	건강보험			기타보험		계(수)
	가입	미가입	기타	있다	없다	
전체	66.1	32.3	1.6	16.5	83.5	100.0(127)
0세	56.0	44.0	-	12.0	88.0	100.0(25)
1세	82.1	15.4	2.6	25.6	74.4	100.0(39)
2세	72.4	24.1	3.4	17.2	82.8	100.0(29)
3세	40.0	60.0	-	-	100.0	100.0(10)
4세	61.5	38.5	-	15.4	84.6	100.0(13)
5세 이상	45.5	54.5	-	9.1	90.9	100.0(11)

2. 한국거주 과정 및 국적

영유아의 현재 국적은 중국이 84.5%로 다수를 차지하지만, 아동의 14.0%는 무국적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IV-2-4 참조).

이들 영유아는 81.3%가 한국에서 출생한 아동이며 중국에서 출생하여 한국으로 온 경우는 17.2%에 불과하다. 이는 연령별로 다소 차이가 나서 유아는 중국에서 출생하여 한국으로 왔다는 비율이 다소 높지만 영아는 대수가 한국에서 출생한 아동들이다. 또한 일부 자녀는 중국에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자녀의 일부는 한국에서 양육하며 또 일부는 중국에서 기르는 것이다(표 IV-2-4 참조).

〈표 IV-2-4〉 자녀의 현재 국적

단위: %(명)

구분	국적			출생 및 거주 구가			계(수)
	중국국적	무국적	기타	한국 출생 한국 거주	중국 출생 중국 거주	중국 출생 한국 거주	
전체	84.5	14.0	1.6	81.3	1.6	17.2	100.0(129)
0세	92.0	8.0	-	100.0	-	-	100.0(25)
1세	76.9	20.5	2.6	100.0	-	-	100.0(39)
2세	93.1	6.9	-	85.7	-	14.3	100.0(29)
3세	83.3	16.7	-	50.0	16.7	33.3	100.0(12)
4세	84.6	7.7	7.7	46.2	-	53.8	100.0(13)
5세 이상	72.7	27.3	-	36.4	-	63.6	100.0(11)

중국에서 출생하여 한국으로 온 아동의 경우 부모가 한국에 최초로 입국할 때 데리고 왔는지를 조사한 결과 77.3%는 동반 입국하였다고 하고 22.7%는 동반입국하지 않고 나중에 데려온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IV-2-5 참조).

중국에서 출생하여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의 자녀의 한국 입국시 연령은 최소 0세부터 최대 18세까지 평균 3.38세였고, 이렇게 부모가 먼저 한국에 오고 자녀를 나중에 데려올 경우 중국에 두는 기간은 짧게는 2개월로부터 길게는 48개월로 평균 22.3개월로 조사되었다(표 IV-2-6 참조).

〈표 IV-2-5〉 부모 (최초) 입국시 자녀 동반여부

단위: %(명)

구분	동반입국함	동반입국하지 않음	계(수)
전체	77.3	22.7	100.0(22)
2세	100.0	-	100.0(4)
3세	75.0	25.0	100.0(4)
4세	85.7	14.3	100.0(7)
5세 이상	57.1	42.9	100.0(7)

〈표 IV-2-6〉 부모 (최초) 입국시 자녀 연령과 자녀가 한국에서 지낸 총 기간

단위: 세, 개월(명)

	평균(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수)
입국연령	3.38(3.6)	0	18	(24)
분리기간	22.33(18.3)	2	48	(6)

3. 영유아 발달 특성

영유아의 발달상태에 대해서는 발달영역에 따른 자녀의 발달·성장의 만족도는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신체발달보다는 언어, 사회성, 인지 및 정서 발달에서 부족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신체적 발달은 매우 부족 1.7%, 부족 5.8%로 7.5%가 부족한 것으로 인식하는데 비하여 언어는 각각 4.2%, 22.5%로 26.7%, 인지발달은 매우부족 0.8%, 부족 16.7%로 17.5%, 정서발달은 매우부족 1.7%, 부족 17.5%로 19.2%, 사회성발달은 매우부족 1.7%, 부족 23.3%로 25.0%가 부족하다는 응답이었다(표 IV-2-7 참조).

4점 척도로는 신체발달영역이 평균 3.52점으로 가장 만족도가 높은 데 반해, 사회성발달영역은 2.94점으로 가장 만족도가 낮았다. 기타 언어, 인지, 정서 발달영역에서 평균 3점 정도로 비교적 높다.

〈표 IV-2-7〉 부모가 인식한 아동 영역별 발달

단위: %(명)

구분	매우 부족	부족	충분	매우 충분	계(수)
신체발달					
전체	1.7	5.8	30.0	62.5	100.0(120)
0세	-	12.0	36.0	52.0	100.0(25)
1세	-	2.6	26.3	71.1	100.0(38)
2세	-	6.9	20.7	72.4	100.0(29)
3세	10.0	-	50.0	40.0	100.0(10)
4세	10.0	-	30.0	60.0	100.0(10)
5세 이상	-	12.5	37.5	50.0	100.0(8)
언어발달					
전체	4.2	22.5	38.3	35.0	100.0(120)
0세	-	56.0	32.0	12.0	100.0(25)
1세	-	18.4	47.4	34.2	100.0(38)
2세	10.3	10.3	37.9	41.4	100.0(29)
3세	-	30.0	30.0	40.0	100.0(10)
4세	10.0	-	30.0	60.0	100.0(10)
5세 이상	12.5	-	37.5	50.0	100.0(8)
인지발달					
전체	0.8	16.7	55.0	27.5	100.0(120)
0세	-	56.0	40.0	4.0	100.0(25)
1세	-	7.9	65.8	26.3	100.0(38)
2세	-	6.9	51.7	41.4	100.0(29)
3세	-	-	70.0	30.0	100.0(10)
4세	10.0	-	40.0	50.0	100.0(10)
5세 이상	-	12.5	62.5	25.0	100.0(8)
정서발달					
전체	1.7	17.5	60.0	20.8	100.0(120)
0세	-	48.0	48.0	4.0	100.0(25)
1세	-	7.9	76.3	15.8	100.0(38)
2세	-	13.8	55.2	31.0	100.0(29)
3세	-	-	70.0	30.0	100.0(10)
4세	10.0	10.0	40.0	40.0	100.0(10)
5세 이상	12.5	12.5	50.0	25.0	100.0(8)
사회성발달					
전체	1.7	23.3	54.2	20.8	100.0(120)
0세	-	60.0	36.0	4.0	100.0(25)
1세	-	21.1	68.4	10.5	100.0(38)
2세	-	10.3	55.2	34.5	100.0(29)
3세	-	-	80.0	20.0	100.0(10)
4세	10.0	10.0	40.0	40.0	100.0(10)
5세 이상	12.5	12.5	25.0	50.0	100.0(8)

〈표 IV-2-8〉 영유아 국적 특성별 발달에 대한 부모 의견

단위: %(명)

구분	매우 부족	부족	충분	매우 충분	계(수)	평균	t
신체발달							
전체	1.7	5.9	30.3	62.2	100(119)	3.52	
중국국적	1.0	5.9	29.4	63.7	100(102)	3.56	1.15
무국적	5.9	5.9	35.3	52.9	100(17)	3.35	
언어발달							
전체	4.2	22.7	37.8	35.3	100(119)	3.04	
중국국적	4.9	22.5	36.3	36.3	100(102)	3.04	-0.07
무국적	0.0	23.5	47.1	29.4	100(17)	3.06	
인지발달							
전체	0.8	16.8	55.5	26.9	100(119)	3.09	
중국국적	1.0	17.6	52.9	28.4	100(102)	3.09	0.16
무국적	0.0	11.8	70.6	17.6	100(17)	3.06	
정서발달							
전체	1.7	17.6	59.7	21.0	100(119)	3.00	
중국국적	2.0	17.6	58.8	21.6	100(102)	3.00	0.00
무국적	0.0	17.6	64.7	17.6	100(17)	3.00	
사회성발달							
전체	1.7	23.5	53.8	21.0	100(119)	2.94	
중국국적	2.0	25.5	52.9	19.6	100(102)	2.90	-1.47
무국적	0.0	11.8	58.8	29.4	100(17)	3.18	

자녀를 중국 국적자와 무국적자로 나누어 보면 일관성을 나타내지는 않으나 사회성 발달 하나를 제외하고는 매우 충분하다는 비율이 무국적 아동이 중국 국적 아동보다 낮아서 무국적 상태의 자녀 양육환경이 아동 발달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함을 나타냈다. 4점 척도에서는 특히 신체발달이 차이를 보였다(표 IV-2-8 참조).

한편으로 언어에 대해서는 2세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어는 24.5%는 부족하고 3.5%는 전혀 못하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26.3% 충분, 45.6% 매우 충분으로 71.9%는 충분하다는 의견이었다. 한편 중국어는 36.8%는 부족하고 49.1%는 전혀 못하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충분하다는 응답은 14.1%에 불과하였다(표 IV-2-9참조).

〈표 IV-2-9〉 언어 사용 충분성

단위: %(명)

구분	한국어					중국어					계(수)
	전혀 못함	매우 부족	부족	충분	매우 충분	전혀 못함	매우 부족	부족	충분	매우 충분	
전체	3.5	10.5	14.0	26.3	45.6	49.1	22.8	14.0	5.3	8.8	100.0(57)
2세	3.4	10.3	13.8	41.4	31.0	55.2	24.1	10.3	6.9	3.4	100.0(29)
3세	-	10.0	10.0	30.0	50.0	50.0	30.0	10.0	-	10.0	100.0(10)
4세	-	20.0	20.0	-	60.0	30.0	20.0	20.0	-	30.0	100.0(10)
5세 이상	12.5	-	12.5	-	75.0	50.0	12.5	25.0	12.5	-	100.0(8)

중국동포 가정은 부모가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면, 자녀가 한국어와 중국어 양 국어를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녀의 한국어와 중국어 사용능력을 알아본 결과, 두 언어 모두 충분히 사용하는 영유아보다 그렇지 못한 영유아가 더 많았다.

이는 조사대상자가 다수가 한국 출생이고 유아보다는 영아가 많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겠다. 그러나 그보다는 국내의 중국동포 부모들은 자녀의 중국어 습득이나 사용을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는 자녀가 계속 한국에서 지내기를 희망하는 마음이 투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한국 사람이라고 속이고 중국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그와 반대로 아이가 중국어를 할 줄 알지만 또래나 교사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스스로 의도적으로 중국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솔직히 우리 애는 중국어를 한마디도 몰라요. 대신 우리가 한국사람이라고 속였어요. 지금도 속이고 있어요. (어머니 2)

처음에 왔을 때(아이가 7살 때 한국에 온) 중국말을 했었는데 6개월 동안 완전히 병어리처럼 자랐어요. ..어린이집에 가면 애들이 자꾸 놀리고 하니까 하면 안되겠다. 중국어란 것이 굉장히 안 좋은 건가보다 이런 인식이 박혀 있었나봐요....중국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들어간다는 거

예인. 중국말만 나오면 굉장히 싫어해요...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에 살기가 수월하더라고요(어머니 5)

또한 TV 등 자녀를 둘러싼 언어적 환경이 한국어 위주라는 점도 중요한 요인이 된다. 부모가 일하러 나갈 경우 보육시설 등 대리 양육 환경도 중국어를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제3절 자녀양육 가치관과 만족감

1. 양육 가치관³⁰⁾

가. 전반적인 ‘자녀양육관’에 대한 경향

국내거주 중국동포의 자녀양육관에 대해 다섯 가지 문항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육아와 나의 인생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이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수 있다’가 80%로 대부분이 나 개인의 인생보다 육아에 더 비중을 두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국내거주 중국동포 어머니들이 한국은 물론 중국의 어머니보다 더 자녀를 위해 희생할 수 있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자녀양육관에 대해 한국, 중국, 일본 어머니를 대상으로 조사한 관련 선행연구(이기숙·정미라·김현정, 2008)에서는 육아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인생도 중요하다는 비율이 중국의 어머니들이 7.19%로 가장 높았고, 한국의 어머니들의 경우, 나의 인생도 소중하다는 의견이 54.6%, 아이를 위해 기꺼이 희생한다는 의견이 45.4%이었다(표 IV-3-1참조).

30) 본 조사 문항은 이기숙·정미라·김현정(2008) 연구를 참조하여 구성하였음.

〈표 IV-3-1〉 자녀양육관

구분	단위: %(수)		
	전체	중국국적	무국적
육아와 나의 인생이 중요성			
육아도 중요하지만 나의 인생도 소중함	19.3	19.6	17.6
아이를 위해서 기꺼이 내 인생을 희생함	80.7	80.4	82.4
엄마의 직접 양육 중요성			
3세까지 엄마가 키우는 것이 가장 좋음	85.7	86.3	82.4
엄마가 항상 곁에 없어도 크게 상관없음	14.3	13.7	17.6
아이 의사 존중 여부			
아이 교육은 부모가 판단해서 선택	22.7	19.6	41.2
아이 교육은 아이 의사를 존중	77.3	80.4	58.8
훈육방법			
때려서라도 야단치는 것이 좋음	35.3	35.3	35.3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말로 타이름	64.7	64.7	64.7
아이 능력 개발			
아이 능력은 선천적으로 정해져 있음	7.6	8.8	0.0
아이 능력은 자라는 환경에 따라 향상 됨	92.4	91.2	100.0
계(수)	100(119)	100(102)	100(17)

한 사례가 이를 반영하는데, 한국에 돈을 벌러 온 지 20년이 되었으나 자녀 축구 뒷바라지에 다 투자했다고 한다.

돈을 버실려고 와서, 큰 애 공부시켰어요 20년동안 벌어서.. 저축이 뭐
 인, 우리 큰애가 볼 샀어요. 축구했어요. 축구하는데 개한테 돈을 천에
 는 애 어렸을 때 3학년부터 시작해가 야가 축구하겠다해가 시키가 야한
 테 돈을 많이 넣었어요. 그리고 원래 애 대학교 갈건데 지금 뜬 경제가
 못 떠나가서 못보냈어요. 네, 아빠가 여서 벌어가 애 축구 지 하겠다해
 가 거기에 다 투자했지.. (어머니 4)

두 번째, 엄마의 직접 양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3세까지 엄마가 직접 키우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85.8%로 어린 시절 엄마가 직접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애가 8개월부터 할머니가 키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엄마한테 정이 없지 않았나해요. (어머니 6)

이는 한·중·일 비교 연구에서 어린 시절 엄마가 직접 양육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한국 어머니 74.6%, 일본 어머니 63.4%, 중국의 어머니는 67.9%로 나타난 것(이기숙·정미라·김현정, 2008)과 비교해 보면 국내거주 중국동포 어머니들이 어린 시절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더 많이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 번째, 아이 의사 존중 여부에 대해서, '아이교육은 아이 의사를 존중한다'가 76.7%로 과반수 이상이 아이교육에 대해 부모가 판단하는 것보다 아이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한국, 중국, 일본의 어머니들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기숙·정미라·김현정(2008)연구에서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여야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한국 어머니 75.3%, 중국 어머니 74.1%, 일본 어머니 72.7%로 국가 간에도 별 차이가 없었다.

내가 애기 데리고 있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어차피 돈 벌러 나왔는데 돈은 벌어야 되니까 할머니한테 맡겨 놓은 거니까 공부하라는 말은 못하죠. 나는 요구를 많이 하죠. 학원에도 보내고 싶고, 시키고 싶은 생각은 많죠. (어머니 6)

네 번째, 훈육방법에 대해서,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말로 타이름'이 64.2%로 더 많았으나, '매질을 해서라도 야단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35.8%로 적지 않게 나타났다. 훈육에 있어서 무조건 말로 타이르는 것보다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인식도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선행연구(이기숙·정미라·김현정, 2008)와 비교해보면, 한국의 어머니는 69.6%가 버릇없이 굴때는 엄하게 야단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중국의 어머

니는 96.2%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말로 타이르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며, 3.8%가 엄하게 야단쳐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국내거주 중국동포 어머니의 경우, 중국의 어머니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율로 엄격한 훈육을 강조하는 인식이 나타났다는 점이 특이하다. 이는 한국의 엄격한 자녀양육 문화와 분위기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해석된다.

다섯 번째, 아이능력 계발에 대해서, '아이 능력은 자라는 환경에 따라 향상 된다'는 의견이 92.5%로 상당수의 부모들이 후천적으로 아이의 능력이 계발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자녀교육에의 투자를 아끼지 않는 중국동포의 배경적 신념으로 이해된다. 중국, 한국, 일본의 어머니들도 모두 거의 90%정도가 아이 능력이 자라는 환경에 따라 향상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기숙·정미라·김현정, 2008)

집에 업자가 있으면 그거에 따라 애가 많이 틀려지는 거죠. 아무리 머리 좋아도 집의 경제상황이 안 좋으면.. 환경에 따라 바뀐다고 생각하지요.
(어머니 6)

나. 제 특성별 자녀양육관의 특성별 차이

이러한 자녀 양육관이 아동 및 부모 특성별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 고자 하였다.

먼저 '육아와 나의 인생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은 자녀성별이나 출생 순위에 따라서 별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어머니 학력이나 연령별 차이는 통계적 유의성은 없으나 자신의 인생을 희생한다는 비율이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가 75.4%로 가장 낮은 반면, 다음이 전문대 이상 졸업이 81.8%, 중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가 86.1%로 가장 높았고, 어머니 연령에 따른 차이는 20대와 30대는 큰 차이가 없었는데 반해, 40대 이상은 90%이상이 '내 인생을 희생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즉, 상대적으로 연령

이 젊을수록, 나의 인생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약 20%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표 IV-3-2참조).

〈표 IV-3-2〉 자녀 및 모 특성별 ‘육아와 나의 인생의 중요성’ 인식 차이

단위: %(수)

구분	나의 인생도 중요	내 인생을 희생	계(수)	$X^2(df)$
전체	20.2	79.8	100.0(120)	
성별				
남	19.4	80.6	100.0(72)	0.03(1)
여	20.8	79.2	100.0(48)	
출생순위				
첫째아	19.8	80.2	100.0(86)	0.01(1)
둘째아 이상	20.6	79.4	100.0(34)	
어머니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13.9	86.1	100.0(36)	1.67(2)
고등학교 졸업	24.6	75.4	100.0(61)	
전문대 졸업 이상	18.2	81.8	100.0(22)	
어머니 연령				
20대	24.1	75.9	100.0(29)	2.36(2)
30대	22.4	77.6	100.0(67)	
40대 이상	8.7	91.3	100.0(23)	

두 번째, ‘엄마의 직접 양육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도 아동이나 어머니 특성이 유의한 차이를 가져오지는 않았다. 그러나 3세까지 엄마가 직접 키워야 한다는 인식이 여아보다 남아인 경우 높았고, 출생순위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둘째아 이상인 경우가 오히려 엄마가 3세까지 직접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 및 나이에 따른 차이는 3세 전까지 엄마가 직접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전문대 이상 졸업에서 90.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어머니 연령에 따른 차이는 40대 이상이 직접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다소 낮았다(표 IV-3-3참조).

세 번째로 ‘아이 의사존중 여부’에 대해서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출생순위별로는 첫째아보다 둘째아 이상이 부모가 판

단해서 선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높았으며 그 차이는 유의하였다.

〈표 IV-3-3〉 자녀 및 모 특성별 ‘엄마의 직접 양육의 중요성’

단위: %(수)

구분	3세까지 엄마가 키우는 것 선호	엄마가 곁에 없어도 상관없음	계(수)	$\chi^2(df)$
전체	85.8	14.2	100.0(120)	
성별				
남	88.9	11.1	100.0(72)	1.38(1)
여	81.3	18.8	100.0(48)	
출생순위				
첫째아	84.9	15.1	100.0(86)	0.22(1)
둘째아 이상	88.2	11.8	100.0(34)	
어머니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86.1	13.9	100.0(36)	0.71(2)
고등학교 졸업	83.6	16.4	100.0(61)	
전문대 졸업 이상	90.9	9.1	100.0(22)	
어머니 연령				
20대	86.2	13.8	100.0(29)	0.22(2)
30대	86.6	13.4	100.0(67)	
40대 이상	82.6	17.4	100.0(23)	

〈표 IV-3-4〉 자녀 및 모 특성별 ‘아이 의사존중 여부’

단위: %(수)

구분	아이 교육은 부모가 판단해서 선택	아이 교육은 아이 의사를 존중	계(수)	$\chi^2(df)$
전체	23.3	76.7	100.0(120)	
성별				
남	22.2	77.8	100.0(72)	0.12(1)
여	25.0	75.0	100.0(48)	
출생순위				
첫째아	18.6	81.4	100.0(86)	3.79(1) [#]
둘째아 이상	35.3	64.7	100.0(34)	
어머니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30.6	69.4	100.0(36)	2.02(2)
고등학교 졸업	18.0	82.0	100.0(61)	
전문대 졸업 이상	22.7	77.3	100.0(22)	
어머니 연령				
20대	6.9	93.1	100.0(29)	7.72(2) [*]
30대	23.9	76.1	100.0(67)	
40대 이상	39.1	60.9	100.0(23)	

주: # p<.1, * p<.05.

첫째아보다는 둘째아 이상의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더 개입하고 영향을 끼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결과는 중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가 부모가 판단해서 아이교육은 선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30.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전문대 졸업 이상, 고등학교 졸업 순으로 나타났고,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서는 연령이 많을수록 부모가 판단해서 아이교육을 선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IV-3-4 참조).

네 번째로 '훈육방법'은 자녀 성별이나 자녀 출생순위와 상관없이 매질을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말로 타이른다는 것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표 IV-3-5참조).

〈표 IV-3-5〉 자녀 및 모 특성별 '훈육방법'

단위: %(수)

구분	매질을 해서라도 야단치는 것이 좋음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말로 타이름	계(수)	$\chi^2(df)$
전체	35.8	64.2	100.0(120)	
성별				
남	36.1	63.9	100.0(72)	0.00(1)
여	35.4	64.6	100.0(48)	
출생순위				
첫째아	34.9	65.1	100.0(86)	0.11(1)
둘째아 이상	38.2	61.8	100.0(34)	
어머니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33.3	66.7	100.0(36)	2.94(2)
고등학교 졸업	42.6	57.4	100.0(61)	
전문대 졸업 이상	22.7	77.3	100.0(22)	
어머니 연령				
20대	34.5	65.5	100.0(29)	1.71(2)
30대	32.8	67.2	100.0(67)	
40대 이상	47.8	52.2	100.0(23)	

그리고 어머니의 학력이 전문대 졸업 이상인 고학력인 경우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말로 타이른다는 비율이 약 7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어머니 연령은 2, 30대보다 40대 이상인 부모가 매질을 해서라도 야단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다섯 번째, ‘아이 능력 계발’에 대해서는 자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였다. 즉, 자녀가 남아인 경우에는 능력이 선천적으로 정해져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11.1%였던 반면, 여아인 경우에는 2.1%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출생순위는 둘째아 이상보다 첫째아인 경우에 능력이 선천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인식이 약간 더 높았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어머니의 학력은 고학력자가 아이 능력은 자라는 환경에 따라 향상된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고, 어머니의 연령도 40대 이상이 능력은 환경에 따라 향상된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더 많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다.

〈표 IV-3-6〉 자녀 및 모 특성별 ‘아이 능력 계발’

단위: %(수)

구분	아이 능력은 선천적으로 정해져 있음	아이 능력은 자라는 환경에 따라 향상됨	계(수)	X ² (df)
전체	7.5	92.5	100.0(120)	
성별				
남	11.1	88.9	100.0(72)	3.38(1) [#]
여	2.1	97.9	100.0(48)	
출생순위				
첫째아	8.1	91.9	100.0(86)	0.17(1)
둘째아 이상	5.9	94.1	100.0(34)	
어머니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5.2	94.4	100.0(36)	0.94(2)
고등학교 졸업	9.8	90.2	100.0(61)	
전문대 졸업 이상	4.5	95.5	100.0(22)	
어머니 연령				
20대	6.9	93.1	100.0(29)	0.55(2)
30대	9.0	91.0	100.0(67)	
40대 이상	4.3	95.7	100.0(23)	

주: # p<.1

2. 자녀 양육시 느끼는 정서

가. 전반적인 ‘자녀양육시 느끼는 정서’에 대한 경향

네 가지 문항으로 자녀양육 시 느끼는 중국동포 부모의 정서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를 전반적으로 보면, ‘아이를 키우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라는 항목에 약간 그러함과 매우 그러함이 거의 91%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대다수의 국내거주 중국동포들은 아이 키우는 것에 대해 행복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아이가 귀찮고 짜증스러울 때가 많다’에 약 47%로 그렇지 않은 쪽으로 대답했으며, 53% 절반 이상이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아이 양육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혼란스럽다’라는 항목에 약간 그러함과 매우 그러함이 약 80% 정도이고, ‘아이가 장래에 잘 성장할지 걱정된다’는 항목에 92%가 그렇다는 쪽으로 응답하여 대다수가 자녀 양육의 혼란을 겪으며 아이 미래를 걱정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IV-3-7참조).

〈표 IV-3-7〉 자녀양육시 느끼는 정서

단위: %

항목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약간 그러함	매우 그러함	계(수)
아이를 키우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1.7	5.0	9.2	84.2	100.0(120)
아이양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혼란스럽다.	2.5	15.8	59.2	22.5	100.0(120)
아이가 귀찮고 짜증스러울 때가 많다.	22.5	24.2	47.5	5.8	100.0(120)
아이가 장래에 잘 성장할지 걱정된다.	3.3	5.0	44.2	47.5	100.0(120)

부모 노릇을 잘 못하고 할머니한테 맡기니까 가꾼 있어요. 늣둥이 낳으니까 가꾼 애한테 잘해줘야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고민은 많죠. (어머니 6)

특히, 부모들은 자녀 학교에서 자녀가 한국아이들과 달리 중국동포라는 사실, 언어 사용의 차이, 또는 불법 체류 상태 등의 이유로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아, 그런 게 두렵지요. 다른 애들은 다 제 국적가지고 지 나라에서 이려는데 외국인이거나 하면 좀 야한테는 부담이 안 갈까요? 좀 네... 하면서도 나라가 조금 특인데 야는 크면서 언젠가 그런 내는 중국에다 공부차라니 시킬거지 왜 외국에 와서 시키냐고 또 이래 질문할 때는 할 말도 있긴 있지않은 그래도 또 지 나쁜대르 애들 크면 할 얘기가 있잖아요. 그것도 좀 걱정은 돼요. 그런데 다 여기서 제 국적 가지고 여기 있다하면 애들도 그대 생각 안 할거잖아요. (어머니 4)

식당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아침 10시, 저녁 10~11시쯤 퇴근을 하면서..... 초등학교 2학년 때 적응 상 문제로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성격이 많이 변했거든요. 처음에 왔을 때 중국말을 했었는데 6개월 동안 완전히 병어리처럼 자랐어요. 말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한국말을 하고 싶어도 할 줄 모르고..... 중국말은 어린이집에 가면 애들이 자꾸 놀리고 하니깐 하면 안 되겠다. 중국이란 것이 굉장히 안 좋은 건가보다 이런 인식이 박혀있었나봐요. 6개월 정도 말을 안 하고 1년 가까이 정도 돼서 처음 애들이 말 배우는 것처럼 한 마디 한 마디 배우기 시작해서. 초등학교 1학년 때도 밝지 못하고, 항상 학생들이나 친구들 많이 있을 때, 선생님 앞에서 서는 것을 두려워하고 발표를 못하고 그런걸 느끼더라고요.... (어머니 5)

그래서 그런 일들도 있으면서도 저희가 여기 불법으로 있다 보니까 취업하기도 힘든 편이였고 애도 학교에서 주민번호가 없어서 낯 이 나라 국적이 아니라는 불법체류라는 것 때문에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상태로도 보여주고, 저희 입장에서는 들어가자고 여러 번 애한테 물어보고 지금 들어가면 적응도 잘할 수 있고 너도 그곳에서 밝게 살 수 있지 않냐고 여러 번 그랬는데 가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그랬었거든요. (어머니 5)

나. 제 특성별 자녀양육 시 느끼는 정서

자녀 양육관과 마찬가지로 자녀 양육시 부모 정서에 대해서도 아동

및 부모 특성별로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하고자 하였다(표 IV-3-8참조).

첫 번째 ‘아이를 키우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통계적 유의성은 없으나 여아보다 남아, 둘째아 이상 부모보다는 첫째아 부모가 만족도가 높다. 자녀가 중국 국적과 무국적인 차이는 거의 없다.

〈표 IV-3-8〉 자녀 및 모 특성별 ‘자녀양육시 느끼는 정서’

단위: %(수)

구분	행복하다	혼란스럽다	귀찮다	걱정이다	(수)
전체	93.3	81.7	53.3	91.7	(120)
자녀 성별					
남	90.3	76.4	55.6	90.3	(72)
여	97.9	89.6	50.0	93.7	(48)
X ² (df)	2.70(1)	3.34(1) [#]	0.35(1)	0.46(1)	
자녀 출생순위					
첫째아	95.3	80.2	53.5	90.7	(86)
둘째아 이상	88.2	85.3	52.9	94.1	(34)
X ² (df)	1.98(1)	0.41(1)	0.00(1)	0.37(1)	
자녀 국적					
중국국적	93.1	79.4	53.9	90.2	(102)
무국적	94.1	94.1	47.1	100	(17)
X ² (df)	-	-	-	-	
어머니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91.7	80.6	63.9	91.7	(36)
고등학교 졸업	93.4	82.0	50.8	93.4	(61)
전문대 졸업 이상	100.0	81.8	40.9	86.4	(22)
X ² (df)	-	0.02(2)	3.12(2)	-	
어머니 연령					
20대	100.0	75.9	48.3	93.1	(29)
30대	94.0	85.1	52.2	89.6	(67)
40대 이상	87.0	78.3	60.9	95.7	(23)
X ² (df)	-	1.34(2)	0.85(2)	-	

주: # p<.1

어머니 특성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어머니 연령이 어릴수록 자녀양육시 행복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더 높았다.

두 번째로 ‘아이양육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혼란스럽다’에 대한 인

식은 여아가 남아보다 높은 방향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자녀 출생순위별로는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는데, 어머니 특성별 차이도 일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아이양육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혼란스럽다’에 대해 어머니 학력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었으며 80% 이상이 대부분 자녀 양육시 혼란스러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연령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30대가 85.1%로 혼란스러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40대 이상, 20대 순이었다. 특히 국적이 없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우려가 컸다.

세 번째로 ‘아이가 귀찮고 짜증스러울 때가 많다’에 대한 분석결과, 자녀 성별이나 출생순위 차이는 거의 없이 절반 정도가 자녀양육 시 짜증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귀찮고 짜증스러움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중학교 졸업이하가 63.9%로 가장 많고 전문대졸업 이상인 경우는 41%가 짜증스러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 양육시 귀찮고 짜증스럽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자녀가 중국국적인 경우가 무국적인 경우보다 짜증스럽다는 비율이 높다.

네 번째, ‘아이가 장래에 잘 성장할지 걱정된다’에 자녀성별에 상관없이 90%이상이 그렇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이 자녀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출생순위에 따른 결과도 90%이상 대부분이 자녀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결과 차이는 고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이하, 전문대 졸업 이상 순으로 자녀 미래에 대한 걱정을 표현하였고, 어머니 연령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90% 이상 대부분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0대 이상, 20대, 30대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적이 없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장래에 대한 걱정이 더 많았다.

3. 생활 및 자녀성장 만족도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 매우 불만족과 별로 만족하지 않음이 31%, 약간 만족과 매우 만족이 69%정도로 생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높았다(표 IV-3-9참조).

〈표 IV-3-9〉 현재 생활 및 자녀 성장에 대한 만족도

단위: %

항목	매우 불만족	별로 만족하지 않음	약간 만족	매우 만족	계(수)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도	6.7	24.2	47.5	21.7	100.0(120)
현재 자녀성장에 대한 만족도	4.2	6.7	43.3	45.8	100.0(120)

만족하죠. 경제가 불확실해 그런 거지, 만족하는데, 애 앞길 가늠하지 않 않으면 근심 없죠. (어머니 6)

현재 자녀성장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불만족하는 경향이 11%인 반면, 만족하는 쪽이 거의 90%로 대부분이 현재 자녀성장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오늘도 지금 바둑대회 나갔어. 바둑..수학을 잘 해. 머리가... 남자고 2학년인데 금상을 받고 학교서도 다 뽐백이예요 그냥 몇 명이 안 나오는데 한 학 년에서 (어머니 2)

이러 왔는데, 뽐볼인 이상은 낫, 저는 그렇지요, 애나 지금이나 이제 이렇 다 적응됐어요. 애두요. 이제 앞으로 일어나면 유치원갈래, 유치원갈래,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아, 애도 이제는 적응되는구나. 몇 개월 안 됐는데, 이래 빨리 적응되더라구요 허, 그러니까 애가 적응되니까 정말 기쁘더라구요. 돈 벌어도 힘든 줄 모르겠어요 저는요. (어머니 4)

교육상으로, 아휴, 너무 만족해서요 그저 이래 데리고 오는거지요. 안 그런 뭐, 정말 오늘이라도 당장 중국 가겠는데 (웃음), 저래 언어상이고

뭐 이렇게 읊.. 어천애들 지적상에 딱 이런데 대해가지고, 쥘 중시하더
 라구요. 난 그게 정말 좋아요. 뭐 한가지 이렇게 가는 그거를 설명해주
 고 정말 파고드는게 그런게 있더라구요 여기는. 그리고 애들 어디가면
 이대 체험하는거, 이거는 뭐, 저번에도 고구마 심어놓은데 우리 부모들
 이 갔는데 쥘 그런 면에도 정말 잘 퇴가 있어요. (어머니 4)

표 IV-3-10은 이러한 만족 정도의 자녀 및 어머니 특성에 따른 차이를
 나타낸다.

〈표 IV-3-10〉 자녀의 성별 및 출생순위 따른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도’

단위: %(수)

구분	생활 만족			자녀성장 만족			계(수)
	불만족 (매우, 약간)	만족 (약간, 매우)	$X^2(df)$	그렇 지 않음	그려 함	$X^2(df)$	
자녀 성별							
남	29.2	70.8	0.234(1)	8.3	91.7	1.16(1)	100.0(72)
여	33.3	66.7		14.6	85.4		100.0(48)
자녀 출생순위							
첫째아	29.1	70.9	0.443(1)	12.8	87.2	-	100.0(86)
둘째아 이상	35.3	64.7		5.9	94.1		100.0(34)
자녀 국적							
중국국적	32.4	67.6	-	10.8	89.2	-	100.0(102)
무국적	17.7	82.3		11.8	88.2		100.0(17)
어머니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33.3	66.7	0.271(2)	11.1	88.9	-	100.0(36)
고등학교 졸업	29.5	70.5		9.8	90.2		100.0(61)
전문대 졸업 이상	27.3	72.7		13.6	86.4		100.0(22)
어머니 연령							
20대	31.0	69.0	1.01(2)	10.3	89.7	-	100.0(29)
30대	32.8	67.2		11.9	88.1		100.0(67)
40대 이상	21.7	78.3		8.7	91.3		100.0(23)

주: 출생순위에 따른 결과는 빈도 분포 특성상 유의도 검정은 적절하지 않음.

먼저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특성별 차이는 전반적으로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그러나 자녀성별이 여아보다는 남아, 둘째아

이상 자녀보다 첫째아 자녀를 가진 부모의 현재생활 만족도가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국적 자녀인 경우가 만족도는 더 높았다. 어머니의 학력은 전문대 졸업 이상, 고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이하 순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만족하는 비율이 높고, 어머니의 연령은 2, 30대보다는 40대 이상인 경우에 더 만족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현재 자녀성장에 대한 만족도'는 자녀 성별이 여아보다는 남아, 첫째아 자녀보다는 둘째아 이상 자녀인 경우에 자녀성장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국적 소유 여부별 차이는 없었다. 어머니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가 긍정적으로 대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일관성을 보이지는 않았으며, 어머니의 연령은 2, 30대보다 40대 이상인 경우에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높았다.

제4절 보육 및 교육 실태

1. 주양육자

응답자의 98.3%인 대다수의 국내거주 중국동포는 입국한 자녀와는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녀를 실제로 키우는 사람(주양육자)으로는 어머니가 70.0%로 가장 많았고 친조부모 12.5%, 외조부모 10.8% 순이다. 자녀 연령별 주양육자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취업여부별로는 차이를 보였다(표 IV-4-1 참조).

미취업모인 경우 주양육자는 98.2%가 어머니였다. 그러나 취업모인 경우 본인 46.0%로 가장 많았으나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등의 기관에 자녀를 맡기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으로 친조부모 22.2%, 외조부모 19.0% 순으로 혈연관계에 있는 주양육자가 41.2%로, 중국동포 취업모는 친·외부모에게 자녀양육을 의존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표 IV-4-1〉 주양육자

단위: %(명)

구분	모	부	부모 형제자매	친조 부모	외조 부모	친인 척	비혈 연	계(수)
전체	70.0	0.8	1.7	12.5	10.8	1.7	2.5	100.0(120)
자녀연령								
0세	80.0	-	-	8.0	8.0	4.0	-	100.0(25)
만1세	60.5	-	2.6	13.2	15.8	2.6	5.3	100.0(38)
만2세	75.9	3.4	3.4	13.8	3.4	-	-	100.0(29)
만3세	80.0	-	-	10.0	10.0	-	-	100.0(10)
만4세 이상	61.1	-	-	16.7	16.7	-	5.6	100.0(18)
모취업여부								
미취업모	98.2	-	-	-	1.8	-	-	100.0(56)
취업모	46.0	1.6	3.2	22.2	19.0	3.2	4.8	100.0(63)

2.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가. 이용 기관 등

국내거주 중국동포 자녀가 이용하는 반일제 이상의 기관, 반일제 이상 기관을 이용하는 이유, 현재 이용기관 외 기타 기관의 이용 경험 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설문에 참가한 중국동포 자녀의 60%가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관 이용률은 아동연령과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나서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 기관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자녀연령 0세의 92.0%, 만1세의 84.2% 등 영아 대부분은 기관을 이용하지 않았고, 만3세 이후부터는 기관 이용률이 현저히 증가하였다. 다시 말해서 만3세 이후 중국동포 유아는 기관을 적극적으로 다니는 경우가 많다고 짐작된다. 모취업여부별로 보면, 미취업모는 75.0%, 취업모는 46.0%가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의 취업 여부가 기관이용에 주요 변수

로 작용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2009년도에 실시된 전국보육실태조사의 결과인 한국 아동들의 연령별 이용률과 비교해 보아도 한국 아동들보다 중국동포 가정의 아동들의 기관 이용률이 현저하게 낮다(표 IV-4-2 참조). 특히 중국 아동에 비해 한국아동은 특히 만 1~2세에서 이용률이 높다. 취업모의 경우도 한국 가정의 기관 이용률이 훨씬 높은 양상을 보임을 알 수 있다.

〈표 IV-4-2〉 제특성별 중국동포 가정의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여부

단위: %(명)

구분	중국동포				한국(2009)		
	기관 미이용	기관 이용	계(수)	$\chi^2(df)$	기관 미이용	기관 이용	계(수)
자녀연령							
만 0세	92.0	8.0	100.0(25)	53.4 (4) ^{***}	89.4	10.6	100.0(641)
만 1세	84.2	15.8	100.0(38)		55.7	44.3	100.0(576)
만 2세	51.7	48.3	100.0(29)		28.8	71.2	100.0(527)
만 3세	10.0	90.0	100.0(10)		3.7	96.3	100.0(516)
만 4세 이상	5.6	94.4	100.0(18)		2.4	97.6	100.0(1044)
자녀 국적							
중국 국적	62.7	37.3	100.0(102)	-	-	-	
무국적	47.1	52.9	100.0(17)	-	-	-	
어머니 취업여부							
미취업	75.0	25.0	100.0(56)	10.3 (1) ^{**}	33.5	66.6	100.0(1569)
취업	46.0	54.0	100.0(63)		9.9	90.1	100.0(909)
부재					0.4	99.6	100.0(65)
가구소득							
150만원 미만	52.6	47.4	100.0(19)	6.5 (3)	-	-	-
150~200만원 미만	76.3	23.7	100.0(38)		-	-	-
200~300만원 미만	50.0	50.0	100.0(42)		-	-	-
300만원 이상	57.1	42.9	100.0(21)		-	-	-
전체	60.0	40.0	100.0(120)		33.8	66.2	100.0(3302)

주: ** p<.01, *** p<.001.

자료: 서문희 외(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고.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연구소.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시설 이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기관의 종류를 보면, 민간보육시설이 22.5%로 가장 많고 국공

립보육시설 5.0%, 법인보육시설 3.3% 순으로 응답하였다. 유치원은 국공립, 사립을 불문하고 이용하는 경우가 드문 특징을 보인다. 한국가정의 경우와도 비슷한 양상으로서 한국 가정의 경우도 취학 전 아동의 기관 이용 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기관은 보육시설이었다. 이는 보육시설이 만 3세 미만의 영아기부터 이용 가능한 기관이라는 점,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하며 이용 시간이 비교적 긴 기관이라는 점에서 나타나는 결과라 사료된다(표 IV-4-3 참조).

〈표 IV-4-3〉 현재 이용 반일제 이상기관

단위: %(명)

구분	국공립 보육시설	법인보 육시설	민간보 육시설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기 타	없 음	계(수)
전체	5.0	3.3	22.5	0.8	2.5	5.8	60.0	100.0(120)
자녀연령								
0세	4.0	-	4.0	-	-	-	92.0	100.0(25)
만1세	-	-	13.2	-	2.6	-	84.2	100.0(38)
만2세	6.9	3.4	31.0	-	-	6.9	51.7	100.0(29)
만3세	10.0	-	70.0	-	10.0	-	10.0	100.0(10)
만4세이상	11.1	16.7	27.8	5.6	5.6	27.8	5.6	100.0(18)
모취업여부								
미취업모	3.6	-	14.3	1.8	3.6	1.8	75.0	100.0(56)
취업모	6.3	6.3	30.2	-	1.6	9.5	46.0	100.0(63)
한국(2009)		41.3		19.4	16.8	-		(3,310)

주: 2009년 자료는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서문희 외, 2009)로 복수 응답 결과임.

나. 이용 및 미이용 이유

국내거주 중국동포 중 자녀를 기관에 보내는 경우 그 이유를 알아보았는데, 이유 1순위로 가장 많은 것은 '자녀의 교육 차원에서'가 52.1%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부모 취업 등으로 돌볼 사람이 없어서', '자녀에서 친구를 사귀게 해주고 싶어서' 순으로 응답하였다. 2순위에서는 특히 '자녀에게 친구를 사귀게 해주고 싶어서'가 47.6%로 비율이 높아졌고, 다른

이유보다는 자녀를 위한 이유가 많이 제시된 것이 특징적이었다(표 IV-4-4 참조). 특히,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 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이용의 이유에 취업으로 인한 이유 이상으로 자녀의 교육과 교우관계를 중시하는 경향은 매우 흥미롭다 할 것이다. 요약하자면 국내 중국동포들은 특히 자녀 교육이나 또래 사귀의 기회 제공 등 자녀를 위한 이유에서 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중국국적 아동과 무국적 아동은 차이를 보인다. 즉, 1순위에서 무국적 아동이 중국 국적에 비하여 교육 차원 비율은 낮고 친구를 사귀게 해주고 싶다는 비율이 높다. 2순위는 그 반대 현상을 보인다.

〈표 IV-4-4〉 자녀를 기관에 보내는 이유

단위: %(명)

구분	1순위			2순위		
	전체 (수)	중국 국적	무 국적	전체	중국 국적	무 국적
교육차원에서	52.1	57.9	22.2	35.7	35.3	42.9
친구를 사귀게 해주고 싶어서	12.5	7.9	33.3	47.6	50.0	28.6
돌볼 사람이 없어서	35.4	34.2	44.4	9.5	8.8	14.3
비용부담이 적어서	-	0.0	0.0	7.1	5.9	14.3
계 (수)	100.0 (48)	100.0 (38)	100.0 (9)	100.0 (42)	100.0 (34)	100.0 (7)

〈표 IV-4-5〉 자녀를 기관에 보내는 이유(한국)

단위: %(명)

구분	전인적 발달	교육적 이유:	부모 대리보호	또래 사귀:	기타	계(수)
		초등학교 준비, 예체능 특기교육		사회성 발달, 같이 놀 아이가 없음		
비율(수)	32.1	12	21	34.4	0.5	100.0(2,049)

자료: 서문희 외(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고.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연구소. 표 IV-2-7 재구성

이러한 기관 이용 이유를 한국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표 IV-4-5에 나타난 결과와 같이 한국 가정의 경우도 대리양육의 필요성 때문보다는 자녀의 발달, 또래 사귀의 기회 제공 등 자녀를 위한 이유가 많이 꼽히고 있어서, 중국동포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자녀를 위한 이유 중에서는 중국동포 가정이 좀더 '교육'적 이유에서 기관에 보내는 비중이 높게 나타난 점은 차이가 난다고 하겠다. 이는 면담 내용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동포의 경우 일자리 뿐 아니라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중국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여 교육 차원에서 한국 입국을 결심한 경우가 종종 있으며, 특히 한국에서 자녀를 출산하여 출생 직후부터 한국에서 키우고 있는 경우 자녀가 중국인이라는 의식보다는 한국인에 가까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면담과정에서 나타났다. 따라서 자녀들이 한국에서 적응하여 성공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한국어 습득과 학습 등에 더욱 큰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영유아 시기에 이용하는 기관을 한국의 교육을 접할 수 있는 최초의 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관련 면담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예 그리고 솔직히 ...중략... 우리에는 중국어를 한라디도 몰라요. ...우리가 한국사람이라고, 속였어요. 지금도 속이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에게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 성장하는게 낫겠다고 생각해요. (어머니 2 남편)

한국에 온 이유는 취업도 있고요, 아기도 여기서 키우고 싶어서요. (어머니 2)

한편, 반일제 이상 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는 총 72사례였다. 이들이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를 묻은 결과, '자녀가 어려서 적응하기 힘들까봐'가 61.1%로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비용이 부담되어서'

가 34.7%로 이들 두 이유가 기관 미이용의 주된 이유로 꼽혔다.

자녀연령별로 보면, 자녀연령이 어릴수록 ‘자녀가 어려서 적응하기 힘들까봐’가 기관 미이용의 가장 큰 이유였다면, 사례가 적어서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자녀연령이 높아질수록 ‘비용부담’이 더 큰 이유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4-6〉 기관 미이용 이유

단위: %(명)

구분	어려서 적응하기 힘들까봐	비용부담	마땅한 기관이 없어서	대리양육 자가 있어서	기타	계(수)
전체	61.1	34.7	1.4	1.4	1.4	100.0(72)
자녀연령						
0세	82.6	13.0	-	4.3	-	100.0(23)
만1세	65.6	34.4	-	-	-	100.0(32)
만2세	26.7	60.0	6.7	-	6.7	100.0(15)
만3세	-	100.0	-	-	-	100.0(1)
만4세이상	-	100.0	-	-	-	100.0(1)
모취업여부						
미취업모	66.7	31.0	-	-	2.4	100.0(42)
취업모	55.2	37.9	3.4	3.4	-	100.0(29)

모취업별로 보면, 취업여부에 상관없이 ‘자녀가 어려서 적응하기 힘들까봐’가 기관미이용의 주된 이유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취업모의 경우 ‘비용부담’으로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37.9%로, 미취업모보다 조금 높게 나타난 점이 눈에 띈다(표 IV-4-6 참조).

중국국적의 중국동포들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 자녀가 국내의 보육 시설이나 유치원에 다니게 되면 비용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심층면담에서도 이들 기관을 이용할 때 비용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으며, 선교원과 같은 좀 더 저렴한 기관으로 대체이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국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은 예.예...양육비가 제일 어렵지요, 그렇지
 않.저는 생각에는 이래 생각하고 왔어요. 중국에서 볼 때는 같은 조선민
 족으로서 이렇게 험하게 나는 퇴 죽 몰랐어요. 생각 밖이에요. 그러나
 보니 어, 이래 너무 비싸더라구요 보육비가. 매달 30만원 무조건 빠져나
 가고 또 어디간다하면 또 몇 천원 내다하면 또 내야되고 우리가 또 준비
 하려면 또 준비해가....이러 너무 힘들더라구요. 이것만 또 조금만 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는데.... (어머니 4)

유치원은 아니고 00선교원을 보내고 있어요... 유치원은 30만원이라 부
 닷스러운데 선교원은 20만원만 내면 되요. (어머니 7)

다. 이용시기 등

중국동포는 현재 이용 기관이 한국에서의 기관 이용으로서는 처음이
 용 기관으로 과거 다른 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없는 경우가 64.6%로 대다
 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현재 기관 이용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2009년도 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와 비교해 보았다.

먼저, 국내거주 중국동포 가정의 아동들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기관을
 최초로 다니기 시작한 시기는 평균 30.17개월로 만 3세가 되기 전에 이
 용을 시작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만 2세 때 시작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표 IV-4-7 참조). 또한 기관을 이용하는 중국동포 가정의 아동들은 하루
 평균 536.6분, 즉 하루 평균 8시간 56.6분, 즉 9시간 정도를 기관에서 보
 내고 있어 비교적 긴 시간을 이용하고 있는 양상을 보였다.

〈표 IV-4-7〉 중국동포 가정의 현재이용기관 최초이용시기

단위: %(명)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이상	계	평균(개월)
비율	10.4	22.9	29.2	22.9	14.6	100.0	30.17
(수)	(5)	(11)	(14)	(11)	(7)	(48)	

〈표 IV-4-8〉 현재 이용기관의 하루 평균 이용시간

단위: %(명)

구분	8시간 미만	8~10시간 미만	10시간 이상	계	평균(분)
비율	31.3	37.5	31.3	100.0	536.6
(수)	(15)	(18)	(15)	(48)	

이를 2009년도 전국보육실태조사(서문희 외, 2009)에서 나타난 한국 가정의 기관 이용의 특성과 비교하면, 한국가정이 영유아 자녀를 최초로 기관에 보내기 시작한 시기는 평균 13.0 개월로³¹⁾ 중국동포의 자녀보다 일찍부터 기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이용시간은 평균 7시간 21분으로 중국동포의 평균 이용 시간보다 약 1시간 30분 정도를 짧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³²⁾.

즉, 국내거주 중국동포의 가정들은 한국가정과 비교 시 기관 이용률이 낮고 기관 이용할 경우 최초로 이용하는 시기는 늦다. 그러나 일일 평균 이용시간도 긴 것으로 나타나 기관을 이용하기는 상대적으로 어렵지만, 일단 기관에 다니면 기관에 대한 양육 또는 교육 의존도가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31) 이는 조사 당시 영유아의 최초 기관 이용 월령으로, 중국 동포 자녀의 현재 이용기관 65% 정도가 최초 이용 기관임을 고려하면 현재 기관 최초 이용 월령보다 최초 기관 이용 월령이 비교하는데 보다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현재 기관 최초 이용 월령은 30.7개월임.

32) 서문희 외(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고.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연구소. < 표 IV-2-12>, < 표 IV-2-17> 참조

라. 선택시 고려사항

다음으로 중국동포 가정에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 기관을 선택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한 점을 순위별로 2가지를 선택하게 한 결과이다.

〈표 IV-4-9〉 현재 이용 기관 선택 이유

단위: %(명)

구분	1순위		2순위	
	비율	(수)	비율	(수)
집과의 거리	25.0	(12)	17.8	(8)
교육·보육 프로그램	14.6	(7)	13.3	(6)
실내·외 환경	4.2	(2)	15.6	(7)
원장 및 교사	10.4	(5)	11.1	(5)
비용	16.7	(8)	11.1	(5)
급·간식	2.1	(1)	2.2	(1)
운영시간(방학기간 등)	4.2	(2)	8.9	(4)
주변의 소개	12.5	(6)	6.7	(3)
평가인증 여부	-	-	2.2	(1)
잘 모르고 선택함	-	-	8.9	(4)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받아주는 곳이 없어서)	10.4	(5)	2.2	(1)
계(수)	100.0	(48)	100.0	(45)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관을 선택할 때 ‘집과의 거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밖에 교육·보육 프로그램이나 환경, 비용, 주변의 소개(평판) 등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었다. 그런데, ‘받아주는 곳이 (이 곳 밖에) 없어서’라는 응답도 1순위에서 10.1%를 차지하고 있는 점은 중국 동포가 기관을 이용함에 있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종종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표 IV-4-9 참조).

이러한 결과를 2009년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한국가정의 이용 기관 선택이유와 비교해 보면, 한국도 기관의 운영주체별로 기관 선택이유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집과의 거리, 기관의 프로그램 내용, 주변의 평판, 비용 등의 순으로 선택 이유가 나타나

고 있어, 중국동포들의 기관 선택 이유는 한국 부모와 거의 공통되는 것으로 보인다(표 IV-4-10 참조).

〈표 IV-4-10〉 운영주체별 현재 이용 기관 선택 이유(한국)

단위: %(명)

구분	보육시설	유치원	반일제 이상학원	기타	전체
비용	8.3	14.1	14.7	33.3	10.6
집과의 거리	30.2	21.7	10.7	4.8	26.7
프로그램 내용	11.0	22.7	52.0	19.0	16.1
형제자매와 함께	5.3	3.4	4.0	-	4.6
아이 적응	4.9	2.9	1.3	-	4.2
운영시간	4.6	1.6	1.3	-	3.6
교사가 좋아서	9.2	5.6	5.3	19.0	8.1
특기교육	0.4	1.1	5.3	-	0.8
차량이용	0.8	0.7	-	-	0.7
시설환경	5.7	6.4	-	-	5.7
주변평판이 좋아서	15.6	17.6	2.7	4.8	15.7
종교적 이유로	1.6	0.8	-	19.1	1.5
기타	2.4	1.4	2.7	-	2.1
계(수)	100.0(1,342)	100.0(612)	100.0(75)	100.0(21)	100.0(2,047)

출처: 서문희 외(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고.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연구소.

이는 즉, 부모들이 자녀를 보낼 기관을 선택할 때는 국적에 상관없이 집과의 거리가 가까워 영유아가 이용하기에 편리한 접근성을 중시하며, 단지 자녀를 부모 대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원하기 때문에 어떠한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됨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또한 기관 이용비용이 가계 경제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비용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선택 기준이 되고 있고, 개인적으로 수많은 기관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주변의 평판이나 소개는 같은 부모의 입장에서 좋은 기관을 고르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이 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마. 비용

다음으로 현재 이용하는 기관에 지불하는 비용과 비용 지원, 비용의 부담도 등 국내에서 중국동포들의 자녀들이 기관을 이용할 때의 비용적인 특징을 살펴보았다.

먼저, 기관 이용시 비용 부담의 특징을 살펴보면 현재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중국동포의 가정은 월평균 268,485원의 비용을 기관 이용을 위해 지불하고 있었고, 현재 기관에서 특별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18사례인데, 이중 일부만이 월평균 특별활동에 비용을 지출하였는데, 비용은 평균 28,611원이었다(표 IV-4-11, 표 IV-4-12 참조). 이러한 특별활동 실시 비율이나 비용은 한국아동의 실태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아동 평균보다 높다. 2009년 보육실태조사에서 한국 영유아 기관 특별활동 참여율은 58% 수준이며 평균 비용은 39,600원이었다.

〈표 IV-4-11〉 월평균 기관 이용 비용

단위: %(명)					
구분	20만원 미만	20~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계	평균(원)
비율	25.0	31.3	43.8	100.0	268,485
(수)	(12)	(15)	(21)	(48)	

〈표 IV-4-12〉 월평균 특별활동 비용

단위: %(명)					
구분	비용지출 없음	5만원 이하	5~10만원 이하	계	평균(원)
비율	44.4	33.4	22.2	100.0	28,611
(수)	(8)	(6)	(4)	(18)	

또한 기관 이용 시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10.4%로 매우 적었고, 그 액수도 평균 15,208원에 불과해 매우 미미하였다(표 IV-4-13 참조). 결국 중국동포의 자녀가 기관을 이용할 경우 정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

기 때문에 기관 이용비용을 지원 받는다고 하여도 종교단체, 민간단체나 이용하는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등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며, 그 사례도 흔하지 않다.

〈표 IV-4-13〉 기관 이용비용 지원 수혜 여부

단위: %(명)

구분	지원없음	지원받음	계	평균(원)
비율	89.6	10.4	100.0	
(수)	(43)	(5)	(48)	15,208

〈표 IV-4-14〉 기관 이용비용 부담 정도

단위: %(명)

구분	전혀 부담 되지 않음	별로 부담 되지 않음	적당함	부담되는 편	매우 부담됨	계
비율	8.3	-	10.4	33.3	47.9	100.0
(수)	(4)	-	(5)	(16)	(23)	(48)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별활동 비용은 포함하지 않은 기관 이용 비용 26만 8485원은 이들 중국동포의 가구월평균 소득인 212만원에서 약 12.7%를 차지하는데, 이에 대해 느끼는 심리적 부담도를 살펴본 결과는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81.2%로 대부분의 중국동포 가정이 기관이용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4-14 참조).

이를 한국가정의 교육·보육기관 이용 시의 비용 부담의 특징과 비교하기 위해 2009년도 전국보육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해 살펴보았다. 이를 보면 한국가구의 기관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부담³³⁾은 크게 낮아서, 월평균 18만 9천 5백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었고, 가구소득 대비 비율도

33) 이는 유치원,보육시설, 학원 등의 기관 이용 뿐 아니라 개인에 의한 비공식 부문 등 모든 형태의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으로 소요되는 총 비용을 의미한다.

6.4%로 중국동포 가구의 월평균 소득 대비 12.7%의 반 정도로 부담이 크게 낮았다. 또한 한국 가정의 아동들은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이용 시의 이용비용이 지원되는데, 이러한 지원을 통해 기관 이용 시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경우도 전체 교육·보육 서비스 이용 영유아의 29.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거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국동포의 가정과 크게 대비되는 결과를 보였다(표 IV-4-15, 표 IV-4-16 참조).

〈표 IV-4-15〉 월평균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비용(한국)

단위: %(명)

구분	분포			계(수)	평균 (천원)	가구소득 대비비율
	20만원 미만	20~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비율	62.4	12.4	25.2	100.0(3,301)	189.5	6.4

출처: 서문희 외(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고.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연구소. 표 IV-3-5, 표 IV-3-6 재구성

〈표 IV-4-16〉 보육 교육비용 지불 아동 비율

단위: %(명)

연령	전체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수)
비율	70.1	20.9	49.5	75.9	92.4	96.7	98.9	(3,301)

출처: 서문희 외(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고.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연구소. 표 IV-3-3 재구성

따라서,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동포의 아동들에게도 유치원, 보육시설 이용시의 비용에 지원이 한국국적의 아동들과 똑같이, 혹은 차등적으로라도 주어질 수 있다면 이들의 기관 이용 부담을 낮추고 이용률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바. 특별프로그램

이처럼 영유아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는 중국동포 가구 대부분이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바, 이들이 느끼는 기관에서의 서비스나 자녀의 적응 등은 기관이용 만족도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자녀들의 기관 이용 시 외국인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원되는 프로그램이나 혜택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지원받은 경우는 14.6%로 적은 편이었다(표 IV-4-17 참조).

〈표 IV-4-17〉 외국인 특별프로그램 혜택 여부

단위: %(명)			
구분	있음	없음	계
비율(수)	14.6(7)	85.4(41)	100.0(48)

사. 자녀 적응 및 만족도

중국동포의 자녀들은 기관에서 대체로 적응을 잘하고 있고 잘 적응하지 못한 경우가 10%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였고, 부모들의 만족도도 만족한다는 응답이 80% 이상을 차지하였다.

〈표 IV-4-18〉 적응정도

단위: %(명)					
구분	매우 잘 적응	비교적 잘 적응	잘 적응 못함	모르겠음	계(수)
교사와의 적응					
전체	63.8	29.8	6.4	-	100(47)
중국국적	68.4	26.3	5.3	-	100(38)
무국적	44.4	44.4	11.1	-	100(9)
또래와의 적응					
전체	63.8	25.5	8.5	2.1	100(41)
중국국적	68.4	23.7	7.9	-	100(34)
무국적	44.4	33.3	11.1	11.1	100(7)

〈표 IV-4-19〉 기관이용 만족도

구분					단위: %(명)		
	매우 불만족	약간 만족	어느 정도 만족	매우 만족	계(수)	4점 척도	t
전체	-	19.1	55.3	25.5	100(47)	3.06	
중국국적	-	21.1	52.6	26.3	100(38)	3.05	-0.23
무국적	-	11.1	66.7	22.2	100(9)	3.11	

자녀 중국국적과 무국적으로 나누어 비교해 보면 무국적 아동이 교사나 또래에 적응을 잘 못한다는 비율이 다소 높다. 그러나 기관 이용 만족도는 무국적 아동 부모가 조금 더 높게 조사되었다(표 IV-4-18, 표 IV-4-19 참조).

이렇게 비용 부담이 적지 않고 비용지원이나 특별한 혜택이 별로 없음에도 부모들의 기관 이용 만족도가 높은 것은 앞서 중국동포의 부모들이 기관에 자녀를 보내는 경우 자녀 교육과 또래 사귀 등을 위해 이용한다는 응답이 많았음을 고려할 때 의도하는 바가 충족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즉, 자녀들이 기관 내에서 교사나 또래들과 잘 적응하고 있는 현실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이는 (기관에서) 다른 또래들과 잘 어울리는 편이에요(어머니 6).

자녀교육에 대해 중국동포라고 예외는 아니었다. 대부분의 중국동포 부모들은 자녀교육에 관심이 많았으며 자녀가 좋아하는 것, 잘 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아낌없이 지원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한국에 돈을 벌기 위해 온 중국동포 부모들이지만, 한국에서 자녀의 비싼 사교육비로 인해 돈을 모으지 못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다음은 자녀가 바둑과 축구 등에 남다른 적성을 보이자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비싼 사교육비를 ‘기꺼이’ 지불하는 경우이다.

1년째 버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거의 벌어도 아이한테 받은 들어가요. 지금 아직 학원에 다니거든요 바둑학원... 거의 매달 50만원 들어가요. 그래도 아이가 바둑을 잘해서 오늘도 바둑대회에 나갔어요. 머리가 좋아서 수학적인 머리가 좋아서 2학년인데 금상을 받고 학고서도 다 볼백이예요. (어머니 2)

한국에 온 지 20년이 되었지만 저축이 뭐요. 우리 큰 애가 볼 찾아요. 축구했어요. 축구하는데 개한테 돈을 칩에는 애가 어렸을 때 3학년부터 시작해가 야가 축구하겠다 해서 시키가 야한테 돈 많이 넣었어요.. 애 아빠가 여서 벌어가 애 축구 하겠다해가 거기에 다 투자했지.. (어머니 4)

제5절 자녀양육 지원 및 요구

1. 서비스 및 정보 제공의 충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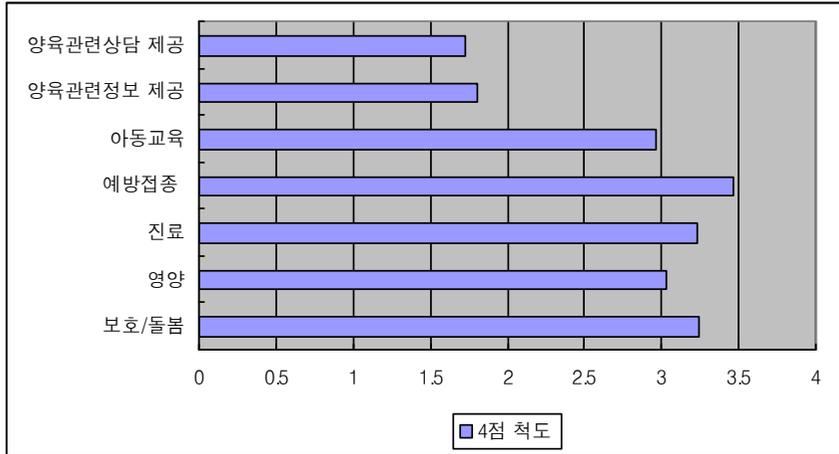
가. 개요

한국에서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7개 영역의 양육환경 평가와 부모에의 정보제공의 충분함에 대해 한국의 또래아이들과 비교해서 본인 자녀에게 충분히 제공된다고 생각하는지 4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영유아 자녀에게 제공되는 안정적 보호/돌봄, 균형잡힌 영양 섭취, 아플 때 의료 진료 이용, 예방접종, 아동 교육의 5개 영역에 대한 의견에서 '교육'을 제외한 4개 영역에서 평균 3점 이상의 '충분한 편'이라는 응답이 나타났다. 특히 예방접종서비스의 제공에서 약 62% 부모가 '매우 충분'하다고 가장 높게 응답한 반면, 자녀 '교육'과 '영양'의 제공이 한국 또래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모에게 제공되는 자녀 양육 관련 정보 및 상담서비스에 대해 충분도를 조사한 결과, 앞의 5개 항목에 비해 전반적으로 매우 불충분과 불충분한 편이라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현 시점 중국동포 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돌봄·교육·진료 등의 서비스보다는 부모대상 자녀양육에의 지원을 더 필요로 함을 알 수 있다.

[그림 IV-5-1] 자녀양육관련 서비스 및 정보제공 충분성 평균 비교



나. 항목별 자녀양육관련 서비스 제공의 충분성

1) 영유아 자녀 안정적 보호 및 기본적 돌봄

중국동포가정 영유아 자녀 안정적 보호 및 기본적 돌봄의 충분함에 대해 0세의 경우 76%가 매우 충분으로 응답하여 전 연령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1세와 2세도 마찬가지로 매우 충분이 각각 50.0%, 41.4%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전반적으로 자녀의 연령이 많아질수록 자녀에 대한 보호와 돌봄의 제공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녀 국적을 구분하여 보면 무국적 아동 부모가 불충분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다(표 IV-5-1 참조).

〈표 IV-5-1〉 자녀양육관련 서비스 제공 충분성_아동에 대한 보호/돌봄

단위: %(명)

구분	매우 불충분	불충분	충분	매우충분	계(수)	평균(표준편차)
전체	4.2	16.7	30.0	49.2	100.0(120)	3.24(0.88)
연령						
0세	-	8.0	16.0	76.0	100.0(25)	3.68
1세	2.6	26.3	21.1	50.0	100.0(38)	3.18
2세	3.4	17.2	37.9	41.4	100.0(29)	3.17
3세	-	20.0	40.0	40.0	100.0(10)	3.20
4세이상	16.7	5.6	50.0	27.8	100.0(18)	2.89
X ² (df)/F			25.0(12)*			1.83*
국적						
중국국적	2.9	16.7	27.5	52.9	100.0(102)	3.30
무국적	11.8	17.6	47.1	23.5	100.0(17)	2.82
X ² (df)/t			-			2.11*

주: * p<.05

자녀가 만 0, 1세 영아인 경우, 가족 내 돌봄과 조부모 및 친척의 양육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기관에서의 지원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이는 (한국 국적이신) 시어머니가 돌봐주고 계세요. 따로 살고 있는데, 일 끝나고 밤 11시 12시가 되어도 아이가 안자고 저를 기다려요. 밤 늦게라도 집에 데려가 같이 자고 아침에 다시 데려다줘요. (국내 4)

학교에서 잘 지내요. 친구도 잘 사귀고. 선생님들이 아이를 잘 봐주시는 것 같아요. 똑같이 어린이집 다니고, 유치원 다니고. 유치원 원장님께만 (중국동포인거) 말씀드렸는데, 주위 친구들은 잘 몰라요. (국내 1, 2)

2) 영유아 자녀 영양

영유아 자녀의 균형 잡힌 영양섭취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충분하다는 응답이 72.5%로 높게 나타났다. 자녀 국적을 구분하여 보면 무국적 아동 부모가 불충분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다. 가구 특성에 따라 비교한

결과, 맞벌이인 경우보다 부모 중 한 분이 집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외벌이인 경우의 영양이 충분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의 건강보험을 가입한 가정의 경우가 비가입 가정보다 자녀의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상대적으로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모의 취업상황과 건강보험 가입과 같은 변인이 유의미함을 알 수 있다(표 IV-5-2 참조).

맞벌이로 바빠서 할머니에게 맡겨 키우는데, 할머니가 아이 먹으려서 어떻게 제대로 챙겨주실까 마음이 아프죠. 영양 상태는.. 애가 장이 좁아 안 좋아요. 한번 장염이 났가지고 그걸로 계속 아픈데.. (국내 7)

운동같은 거 안 하면 아이가 다리가 아프고 그래요. 애가 나이에 비해 몸무게가 안 나가고 그런 건 내가 바빠서 잘 해먹이지 못하니까. (국내 6)

〈표 IV-5-2〉 자녀양육관련 서비스 제공 충분성_영양

단위: %(명)

구분	매우 불충분	불충분	충분	매우 충분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5.8	21.7	35.8	36.7	100.0(120)	3.03(0.91)
자녀 국적						
중국국적	5.9	19.6	35.3	39.2	100.0(102)	3.08
무국적	5.9	35.3	41.2	17.6	100.0(17)	2.71
$X^2(df)/t$			-			1.58
맞벌이여부						
맞벌이	5.7	26.4	43.4	24.5	100.0(53)	2.87
비맞벌이	6.0	17.9	29.9	46.3	100.0(67)	3.16
$X^2(df)/t$			6.32(3) [#]			3.22 [#]
건강보험여부 ^{*)}						
가입	3.7	19.8	35.8	40.7	100.0(81)	3.14
비가입	10.8	24.3	37.8	27.0	100.0(37)	2.81
$X^2(df)/t$			3.75(3)			3.34 [#]

주: 자녀의 가입 여부임. # p<.10

불충분하다고 느끼는 27.5% 가정의 영유아자녀의 식생활에 대한 지원이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우선적으로 맞벌이 가정과 건강보험 가입을 못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취약 가정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3) 영유아 자녀 의료 서비스

영유아 자녀가 아플 때 의료 및 진료 서비스 이용의 충분함에 대하여 전체적으로는 충분하다는 의견이 81.3%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러나 자녀 국적을 구분하여 보면 무국적 아동 부모가 불충분하다는 응답 비율이 17.6%로 중국국적 2.9%보다 높고 4점 척도로도 3.27, 2.97점으로 차이를 보였다. 건강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비교한 결과도, 가입을 한 경우는 4점 평균 3.43점으로 충분도가 높은 편이었으나, 건강보험 비가입가정의 경우 4점 평균 2.78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표 IV-5-3 참조).

〈표 IV-5-3〉 자녀양육관련 서비스 제공 충분성_진료

구분	매우 불충분	불충분	충분	매우충분	계(수)	단위: %(명)
						평균 (표준편차)
전체	5.1	13.6	34.7	46.6	100.0(118)	3.23(0.87)
자녀국적						
중국국적	2.9	14.7	35.3	47.1	100.0(102)	3.26
무국적	17.6	11.8	29.4	41.2	100.0(17)	2.94
$X^2(df)/t$			-			1.42
건강보험여부						
가입	1.2	9.9	33.3	55.6	100.0(81)	3.43
비가입	13.5	21.6	37.8	27.0	100.0(37)	2.78
$X^2(df)/t$			14.70(3)**			15.85***

주. ** p<.01, *** p<.001

동포가정 영유아 자녀의 건강보험 가입률 제고 및 체류신분으로 인해 비제도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유아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제가 지금 제일 후회되는 게 아이가 눈이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의료보험이 없어서 조금씩 찡자하면서 눈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이제는 안경 쓴 상태에서 0.6까지밖에 못 본다 고 하더라고요. 많이 속상해요.. (국내 5)

한편 영유아 자녀에 대한 예방접종 이용의 충분함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61.7%로 매우 충분하다는 응답을 하였다. 자녀연령별로는 연령이 어릴수록 예방접종이 충분하게 제공된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고, 국적별 차이는 무국적자 부모가 매우 불충분하다는 비율이 높았다. 모학력은 고졸 이상인 가정에 비해 최종학력 중졸이하의 가정에서 예방접종제공의 충분함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5-4 참조).

〈표 IV-5-4〉 자녀양육관련 서비스 제공 충분성_예방접종

단위: %(명)

구분	매우불충분	불충분	충분	매우충분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5.0	5.8	27.5	61.7	100.0(120)	3.46(0.82)
자녀연령						
0세	-	-	32.0	68.0	100.0(25)	3.68
1세	-	5.3	21.1	73.7	100.0(38)	3.68
2세	10.3	3.4	34.5	51.7	100.0(29)	3.28
3세	10.0	10.0	30.0	50.0	100.0(10)	3.20
4세이상	11.1	16.7	22.2	50.0	100.0(18)	3.11
X ² (df)/F			15.95(12)			2.75*
국적						
중국국적	3.9	6.9	28.4	60.8	100.0(102)	3.46
무국적	11.8	-	23.5	64.7	100.0(17)	3.41
X ² (df)/t			-			0.23
모학력						
중졸 이하	11.1	11.1	25.0	52.8	100.0(36)	3.19
고졸	3.3	3.3	24.6	68.9	100.0(61)	3.59
전문대졸이상	-	4.5	36.4	59.1	100.0(22)	3.55
X ² (df)/F			8.44(6)			2.85 [#]
건강보험여부						
가입	2.5	4.9	24.7	67.9	100.0(81)	3.58
비가입	10.8	8.1	35.1	45.9	100.0(37)	3.16
X ² (df)/t			6.90(3) [#]			6.89*

주: # p<.1, * p<.05

자녀의 건강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예방접종 서비스가 충분하게 느낀다는 의견이 많았다.

보건소 등을 통해서 아이 맞히는 건 거의 다 맞혔어요. 기본접종만. 학교 갈 때 필요하다고 해서요. (국내 9)

예방접종은 돈 내고 하는 것도 있고, 무료를 하는 데도 있는데.. 보건소에 가면 거기서 자꾸 주연번호를 물어봐요. 근데 아직 안 됐다고 하고 그냥 맞고 대서는, 다음에 연락 오면 지연되고 있다고 말해요. (국내 8)

응답자 중 일부는 심층면접에서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유행 시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실시된 예방접종에서 어린이집에 다니던 자신의 자녀를 제외시킨 적이 있는 데 이러한 차별에 대하여 중국의 유사한 정책과 비교하여 낙후되었다고 커다란 불만과 소외감을 표현하였다.

4) 부모 자녀 교육

유아 자녀에 대한 교육의 충분함에 대해 조사한 결과, 충분하다는 의견이 28명의 응답자 중 20명, 71.4%이었다(표 IV-5-5 참조). 불충분하다는 비율이 무국적자가 높다.³⁴⁾

〈표 IV-5-5〉 유아 자녀양육관련 서비스 제공 충분성_교육

단위: %(명)

구분	매우불충분	불충분	충분	매우충분	계(수)	평균(표준편차)
전체	7.1	21.4	39.3	32.1	100.0(28)	2.96(0.92)
중국국적	9.1	18.2	36.4	36.4	100.0(22)	3.00(0.98)
무국적	-	33.3	50.0	16.7	100.0(6)	2.83(0.75)

주: 적은 사례수로 인해 유의도 검증은 실시하지 않음.

그러나 면담조사를 통해서도 전반적인 자녀 교육에 대해 다양한 의견

34) 0~만2세의 영유아를 둔 부모들은 교육서비스의 충분성 질문에 무응답이 많아 제외하였음.

이 표출되었다. 자녀가 무국적 또는 불법체류 외국인 신분으로 인해 학교 입학이 어려우나,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장 재량으로 그리고 학교 교사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학교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초등학생 및 중학교 자녀를 둔 응답자의 경우는 학교교육의 연속성, 학업과 교우관계, 학교생활 전반의 어려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응답하였다. 취학 전 영유아, 초등, 중등 자녀를 둔 가정 사례별로 다른 의견을 나타낸 가운데, 초등 이후의 학교생활의 불안정성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³⁵⁾

애들 교육이 가장 힘들어요. 양육자체는 별 어려움이 없어요. (국내 8)

자녀교육을 위한 노력이에요? 노력이 아예 안돼, 이런 문제들이 가는 데 마다 부딪히니까. 아예 학교측과 상담해보지도 못 했어요. (국내 2)

아이가 공부를 얼마나 잘 하는지... 4학년애 급메달을 땀어요. 그런데 주련번호가 없어, 가생번호를 가지고 나가서 상을 받았어요. 4급 이상으론 올라가면 국가공인자격증을 준다는데, 주련번호가 없어서 못 따고 있어요. (국내 2)

그걸요, 바둑과 수학을 잘 해 국제수학대회에 나가고 싶어도 주련번호가 없어서 나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내년 1월 경시대회 참가인정서를 받기는 했는데 그게 될지안될지 아직 모르겠어요. (국내 1)

초등학교 다니는 거 자체는 크게 지장이 없더라고요. 이제 동포 몇 더문화 관련 정책이 많이 좋아져서 학교에서 다 받아주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학교는 거의 못 들어가요. 우리는 교장선생님과 통화를 해서 이런 상황이다 했더니, 중학교에서 받아주더라고요. (국내 1)

우리는 몇 번 따온 찾아갔었어요. 이게 가는 (중)학교마다 다는데, 학교에서 저희가 더문화(결혼이민자)인줄 알고 상담을 하다가 그게 아니니까

35) 교육과학기술부가 2010년 8월 17일 입법예고한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의무교육 과정인 중학교에 취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초등학교 입학절차를 그대로 준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개정되면 일부 문제는 완화될 것으로 봄.

경국 입학이 안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국내 3)

솔직히 우리 아이가 지금 학교를 다니지만, 졸업증이 안 나와요. 수료증만 나와요. 실제로 졸업을 해도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국내 2)

아이가 언어가 부족하니까.. 뭘때를 당했던 거 같아요. 공부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모르고, 아이가 성격이 점점 내성적으로 변한다 했어요. (국내 5).

취학전 영유아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보육 서비스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다.

교육이 좋다 하길래 자식교육 좀 잘 시키라고 했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너무 만족해서 그저 이래 데리고 오는거지. 안그런 뭐 오늘에라도 당장 중국에 돌아가겠는데. 아이들 지적인거 중시하고, 뭐 할가지 자세히 설명해주고 정말 파고드는게 있어요. 체험하는 것도 좋고. 그런데 경제상에서 이렇게 막히네요. (국내 4)

5) 양육 정보 및 상담

양육정보의 충분성은 전체적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응답이 87.5%로 높게 나타났다. 자녀 연령별로는 4세 이상의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에 비해 4세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들이 양육정보에 대해 불충분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중국 국적 자녀 부모들이 불충분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무국적자 아동 부모 보다 높다.

심층면접에서도 자녀양육정보와 관련하여 부모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응답되었다.

아이를 키우는 정보요? 그런건.. 몰라요. 그냥 애를 할머니한테 맡기고 이러니까. 정보같은 거 들을 시간도 없고. 아이 키울 때 상담 같은 거는... 받고싶은데, 제가 지금 제 신분 때문에 당당하게 나서지를 못하니까요. (국내 6)

(학부모내면) 거의 뭐 똑같이 접하지 않음까요. 특별히 (자녀양육관련) 정보 때문에 어려운 점은 없었던 거 같아요. 그런데 뭐, 어느 학군, 어느 학교가 좋은 지 그런 구체적인 (교육관련) 정보는 전혀 모르고 있지요. 그런게 궁금할 때가 있는데, 주변에 알겠수가 없으니까 혼자 인터넷 찾거나 그냥 알아서 해오던 대로 해야죠. (국내 2).

〈표 IV-5-6〉 자녀양육관련 서비스 제공 충분성_양육정보

단위: %(명)

구분	매우 불충분	불충분	충분	매우 충분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34.2	53.3	10.8	1.7	100.0(120)	1.80(0.69)
자녀연령						
0세	32.0	68.0	-	-	100.0(25)	1.68
1세	42.1	44.7	13.2	-	100.0(38)	1.71
2세	24.1	69.0	6.9	-	100.0(29)	1.83
3세	50.0	40.0	10.0	-	100.0(10)	1.60
4세이상	27.8	33.3	27.8	11.1	100.0(18)	2.22
X ² (df)/F			26.51(12)**			2.33#
자녀 국적						
중국국적	34.3	55.9	7.8	2.0	100.0(102)	1.77
무국적	35.3	41.2	23.5	-	100.0(17)	1.88
X ² (df)/t			-			-0.60

주: # p<.1, ** p<.01

자녀양육 및 육아정보를 주로 얻는 곳을 조사한 결과, 'TV/인터넷' 매체 이용과 '주변/이웃'을 통해 주로 얻는 것으로 나타나 온라인과 오프라인 양자를 통해 개별적으로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공공기관이나 종교단체, 친인척 가족을 통해 정보를 얻는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심층면접을 통해 조사된 바에 의하면, 실제로 중국동포 부모들이 종교단체와 자녀 보육·교육 기관 등을 통해 자녀양육 정보와 도움을 구하고 얻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표 IV-5-7〉 자녀 양육 정보를 구하는 곳

단위: %(명)

구분	TV/인터넷	종교단체	주변/이웃	공공기관	친인척	없음	계(수)
이용율	44.2	3.3	30.0	3.3	5.8	13.3	100.0(120)

한편, 중국동포가정의 영유아 자녀에 상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응답이 88.42%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상대적으로 4세 이상의 모가 양육상담이 충분하다는 응답이 적게 나타났다. 자녀의 연령이 높아져 유아교육·보육 기관 이용이 높아짐에 따라 기관을 통한 자녀 양육 상담 용이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표 IV-5-8 참조).

〈표 IV-5-8〉 자녀양육관련 서비스 제공 충분성_상담

단위: %(명)

구분	매우불충분	불충분	충분	매우충분	계(수)	평균(표준편차)
전체	39.2	49.2	10.8	0.8	100.0(120)	1.73(0.68)
자녀 연령						
0세	32.0	64.0	4.0	-	100.0(25)	1.72
1세	52.6	44.7	2.6	-	100.0(38)	1.50
2세	27.6	58.6	13.8	-	100.0(29)	1.86
3세	50.0	40.0	10.0	-	100.0(10)	1.60
4세이상	33.3	27.8	33.3	5.6	100.0(18)	2.11
$X^2(df)/F$			24.94(12)			3.04*
자녀 국적						
중국국적	36.3	53.9	8.8	1.0	100.0(102)	1.75
무국적	58.8	17.6	23.5	-	100.0(17)	1.65
$X^2(df)/t$			-			-0.55
모연령						
2-30대	42.7	47.9	8.3	1.0	100.0(96)	1.68
40대 이상	26.1	52.2	21.7	-	100.0(23)	1.96
$X^2(df)/t$			4.66(3)			3.14#
맞벌이여부						
맞벌이	32.1	50.9	15.1	1.9	100.0(53)	1.87
비맞벌이	44.8	47.8	7.5	-	100.0(67)	1.63
$X^2(df)/t$			4.14(3)			3.78#

주: # p<.1, * p<.05

모 연령 2~30대에서, 그리고 맞벌이 모가 양육 상담서비스의 불충분이 덜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면담결과를 통해서는 실제 교회 등의 종교기관의 상담서비스를 통해 국적과 취업관련 외, 양육관련 상담과 도움을 구하고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학교·학원의 교사들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배려하고 교육 관련하여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교육을 위한 노력이요? 노력이 아예 없어요. (불법체류 관련하여)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마다 부딪히니까. 아예 학교 측과 상담해보지도 못 했어요. (국내2)

교회를 알게 되어서 저희는 멀리서 다니고 있어요. 여기 와서 이런저런 면담을 받을 수 있으니까. (국내1)

아이(7살)가 중국에서 저희를 보러왔다가 언니아빠한테 살겠다고 중국으로 가려하지 않아 억지로 보낼 수가 없어서 어린이집을 보내면서 그때부터 아이와 함께 이곳에서 살게 됐어요. 불법이어서 학교에 보낼 수가 없었는데, 교회 전도사님들이 아이들은 법적으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해서, 초등학교에 찾아가 교장선생님 뵈고 말씀드렸더니, 교장선생님이 흔쾌히 받아 주시더라고요. 교회의 도움으로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 있었어요. (국내 5)

주변번호가 없는 상태에서 가깝식은 님선생님이 본인 자녀나 친척들 것을 이용해서 컴퓨터 교육을 하도록 하기도 해주세요. (선생님들 통해) 여러모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국내 5)

님선생님이 좋은 분이 계셨는데 항상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서 얘기 해주시고 그러셔서 아이가 조금씩 밝아진 모습도 보여주고 그렸어요. 학원선생님들도 좋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국내 5)

2. 자녀양육의 어려운 점

한국에서 자녀 양육 시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1순위는 '양육비 및 병원비 부담'을 70.8%로 가장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2순위 응답으

로는 양육비/병원비 부담(23.7%) 외에 부모가 바빠서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적은 것과 ‘아이의 장래에 대한 불안’ 두 가지로 응답하였다.

〈표 IV-5-9〉 한국에서 자녀양육의 어려운 점 (1,2 순위)

단위: %(명)

구분	양육비용 부담	병원비 부담	자녀와의 시간부족	아이 또래관계	아이 학업으로	아이 장래불안	정보 부족	계(수)
1순위								
전체	70.6	12.6	7.6	1.7	1.7	5.9	-	100(119)
중국국적	73.5	10.8	7.8	1.0	2.0	4.9	-	100(102)
무국적	52.9	23.5	5.9	5.9	-	11.8	-	100(17)
2순위								
전체	17.1	23.9	25.6	5.1	6.0	13.7	8.5	100(117)
중국국적	16.0	25.0	24.0	5.0	6.0	16.0	8.0	100(100)
무국적	23.5	17.6	35.3	5.9	5.9	-	11.8	100(17)

면담조사결과에서도 양육 및 교육 비용, 의료비용의 부담에 대한 응답이 많았으나, 그러한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자녀교육에의 투자를 가장 우선시하는 자녀교육관을 보이기도 했다.

가장 어려운 점은 양육비이지요. 중국에서 볼 때는 같은 조선민족으로 그대도 교육비라고 쥬...(지원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어유). 아이 학비가 이렇게 현찰 죽은 목값어유. 교육비가 정말 비싸더러구유. (국내 4)

소득대비 자녀 교육비용에의 많은 지출에 대해 가계 부담이 되지 않는냐는 질문에 대해 중국동포가정의 응답을 들어본 결과, 자녀교육에의 투자가 가계지출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었으며, 높은 의료비용의 부담에 대한 응답이 있었다.

부담터쥬.. 거의 1년째 제가 일을 못하고 있는데. 그대도 벌어도 거의 받은 아이한테 들어가유. 지금 아직 학원에 다니거든유. 학원비로 거의 50만원 들어가유 (국내 2).

특별히 어려운 건 없어유. 아이가 아플 때가 가장 걱정이쥬. 아이가 응급

살에 한 3~4번 씹려 갔었거든요. 그러면 기본 뭐 20만원을 훌쩍 넘어가
 요. 저도 머리 CT 한번 찍고났더니 그냥 2~30만원. 병원 한번 가려면
 한 50만원을 든다 해요. 충치 치료하는데에도 30만원 들었어요. (국내 2)

의료보험이 있으면 약국가도 보통 1500원인데, 저희들은 기본 1만원당위
 에요. 1만원천원, 2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거의 열배 차이가 나는
 거지요. (국내 1)

자녀가 성장하면서 겪게 되는 애로사항과 또래관계에의 어려움, 자녀
 와 보내는 시간부족에서 오는 양육의 어려움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저는 나중대로 식당 다니면서 늦게 퇴근하고 하니 같이 있으면서도 아이
 교육을 제대로 책임지지 못하는 거지요.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방
 따를 많이 당했다는 걸 한참 지나서야 알았어요. 한국어를 잘 모른다는
 이유 때문에 (초등)학교에서 애들한테 방따 많이 당한 것 같아요. 할당
 하던 아이 성격이 많이 변했어요. 처음 6개월 동안은 아이가 말을 안하고
 완전 병어리처럼 지냈어요 (국내 4)

초등·중등 자녀의 경우, 학업애로 및 언어습득에의 어려움도 면담조사
 를 통해 나타났다.

애(중1)가 적응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중간고사를 봤는데, 애가 완전히
 바닥이에요. 학원에 보냈는데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가 아이가 공부에 관
 심이 없고 엉뚱한 생각만 하는 것 같다고 그러세요. 아이가 한국에 와서
 말수도 줄고, 성격이 변했어요. (국내 5)

면접을 통해 자녀양육의 어려움으로 '아이 장래에 대한 불안'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지금 저희 아이가 2학년이지만, 초등과정을 어느 정도 다 떼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혹시 중국으로 돌아가게 되거나 하면 경제적 어려움 등으
 로 아이가 공부하는데 공백 기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장래
 어려움을 생각해 아이한테 미리 초등과정을 다 떼게 하려구 해요, 지금.

(국내 2, 미래체육희망-중복)

다른 애들은 다 제 국적가지고 지 나라에서 이려는데, 외국인이러 하면
준 애한테는 부담이 안 되겠어요. 차라리 나를 중국에다 공부를 시킬 일
이지 왜 외국에 와서 시켰냐는 얘기 안 들겠어요 (국내 4)

그 밖에 주거, 신분 불안정 등 기타 구체적인 어려움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하였다

집이 제일 근심 태요, 여기 살라니까요. 집값이 너무 비싸요. (국내 4)

학교에서 아이가 시험에서 다 볼백이에요. 이런 상황을 학부모한테 다
공개할 수 없어서 모입같은 데 참여하기가 쥌.. 성적은 공개되지만 주면
번호가 들어가는 서류작성이 안 태니까, 항상 선생님한테 따르 말쑤드
고...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담임선생님이 바뀌시잖아요. 매년 새 선생
님께 자초지종을 설명 드리고 매번 양해를 구해야 해요. (국내 2)

유급은 자원봉사를 해도 주면번호가 있어야 하더라구요. 동사무소니 주
면센터, 도서관 같은 데에서 도서대출을 받으려 해도 도서대출증을 못
만들어 항상 책을 못 빌려요. 친구가 빌린 것 빌려봐요. 인터넷 강의도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안태요. (국내 2)

3. 지원 수혜 및 요구

가. 지원 수혜

조사시점인 2010년 7~8월을 기준으로 지난 상반기동안 NGO 단체, 정
부, 관련 기관 등을 통해 지원받았던 서비스나 비용, 물품 등이 있었는지
조사한 결과, 전체 120가정 응답자 중 4.2%인 5사례만이 '지원받은 적 있
다'고 응답하여 지원 수혜율이 저조하게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식품을
2.5%로 가장 많이 지원받았던 것으로 응답되었다. 지원기관은 중복응답
에 의해 종교기관이 4사례이고 이외, 보육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
국인 지원기관, 기타가 각각 1사례씩으로 조사되었다(표 IV-5-10 참조).

〈표 IV-5-10〉 양육지원 여부 및 지원내용

단위: %(명)

구분	전체	주거	식품	의류	보건 /의료	교육 /보육	상담 /정보	자조 /친교	계(수)
받은 적 있다	4.2	-	2.5	0.8	1.7	-	1.6	-	100.0(120)

그러나 면담조사를 통해 만나본 중국동포가정 부모들 중 실제 적지 않은 부모들이 국적 및 체류 문제를 중심으로 종교기관에 문의하고 상담을 하며, 이 과정에서 자녀양육 관련하여 문의도 하고 상담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 국적문제를 많이 해결해준다고 해서 저희도 멀어서 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이해저래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국내 1)

나. 애로사항 및 요구

자녀를 키우는데 한국정부에 가장 바라는 지원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1순위 응답으로 '보육·교육 비용지원'에 대한 요구도가 82.5%로 가장 컸다. 그 다음으로 2순위 응답을 통해 병원 이용 시 일반 진료비 지원과 무료 예방접종에 대한 지원 등 '의료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다.

〈표 IV-5-11〉 정부에 바라는 지원 (1, 2순위)

구분	보육교육 비용지원	출산비용 지원	무료 예방접종	일반진료 비용지원	동포자녀 전용기관	정보제공 및 상담	동포자녀 프로그램	계(수)
1순위	82.5	2.5	1.7	8.3	3.3	-	0.8	100.0(120)
2순위	8.9	7.1	16.1	33.9	10.7	11.6	10.7	100.0(112)

주: 기타응답 1사례 제외

애가 빨리 적응이 되니 정말 기쁘더라구요. 돈 벌어도 힘든 줄 모르겠어요, 저는요. 경제상이고 조금이고 이해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살 것 같아요 (국내 4).

그밖에 불법체류 신분인 가정의 자녀에 대한 인정과 교재교구의 제공 등과 같은 구체적인 의견이 응답되었다.

아이 아플때에는 병원 제대로 다닐수 있었음 해요. (국내 1)

초등학교, 중학교 마치면 수료증이 아닌 졸업장이 나왔음 좋겠어요. (국내 2)

저희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안 하지만, 아이뿐이라도 주민번호를 받아 학교 졸업도 하고, 학교 성적도 공식 기록으로 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도서관 책 대여라든가, 인터넷 회원가입이라든가. (국내 1, 2)

아이들이 집에서 갖고 놀 것이 없어요. 살라하니 4~5만원씩은 하지, 몇 천원짜리는 근새 망가지지. 어떤 때는 버리는 장난감도 많던데, 그런 것들을 다시 사용하게 해 필요한 가정들에 지원해주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국내 4)

4. 자녀 한국체류희망 여부

부모에게 자녀가 한국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하는지 물어본 결과, 국적 취득이 된다면 한국에서 계속 살게 하고 싶다 86.7%, 돈을 벌거나 학업을 마치게 되면 중국으로 돌아갈 계획이다 13.3%로, 대다수가 한국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하는 가운데 중국으로 돌아갈 계획을 가진 동포가정도 일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득수준 등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표 IV-5-12 참조).

〈표 IV-5-12〉 자녀가 한국에서 계속 살기를 바라는 지

구분	단위: %(명)		
	(국적취득이 된다면) 한국에서 계속 살게하고싶다	(돈을번후, 공부를 마친후) 중국으로 돌아갈 계획이다	계(수)
전체	86.7	13.3	100.0(120)

심층면접 결과, 이는 자녀와 부모 두 가지 측면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었다. 우선 자녀가 한국어를 제1의 모국어로 사용하고 여러 가지 점에서 중국인보다는 한국인으로서의 문화적 정서와 정체성이 형성되었다는 측면이다. 또한 당사자도 오랜 한국 생활로 중국에는 삶의 기반도 없어졌고 중국 사회의 빠른 변화 등으로 중국에 가서 산다는 것에 두려움마저 생겨서 한국을 실질적인 삶의 터전으로 인식하는 응답도 있었다.

저희가 아이를 여기서 키워왔잖아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고 속여서 키워왔어요. 솔직히 중국어를 모르고 한국어만 써요. 중국말을 못하니까 아이를 데리고 중국으로 돌아가기가 그래요 (국내2)

우리가 여기 불법으로 지내다보니, 일자리도 어렵고 불법체류하는 것 때문에 아이가 자신감을 잃는 것 같아 중국으로 돌아가자고 했으나, 이제는 중국말도 못하고 중국에도 적응하기 힘들니까 아이가 도통 중국으로 가려 하지 않아요. 중국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잘 먹던 중국음식도 안 먹고, 중국말 하는 것도 굉장히 싫어할 정도로 변했어요. 애들은 정말 어디에서 무슨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 많이 튼튼 구나 생각했어요. (국내 5)

아유, 돌아가갈 수는 없지요. 이제 이래 다 맞들어놓고. 갠다하면 이걸 뭐 이도저도 아니고.. 실패가 많잖아요, 이래 돌아가면 (국내 4)

저희들도 여기 온 지가 오래, 약 20년 되어 가지구요. 중국에 생활기반이 전혀 없습니다. 솔직히 뭐 집도 절도 없는 사람.. 지금 한국생활에 너무 익숙해져서 옆에서 중국말을 해도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국내 2)

저도 10년 가까이 되니까 역시 중국에 돌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거의 여기 적응이 되어서 중국사람이라는게 없어질 정도예요. (국내 10)

제6절 시사점

국내거주 중국동포가정의 사회경제적 특성, 자녀 양육 실태 및 요구 등에 근거하여 몇 가지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국내에서 자라는 중국 동포가 우리의 미래 인적 자원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중국에서 비교적 다양한 학력수준과 직업종사자들이 주로 경제적 수입을 목표로 한국으로 이주하였으며, 한국에서의 대부분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면서 장시간 근로로 월 가구소득은 100~200만원대로 높지 않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아이 및 부모 요인으로 인하여 87%인 다수가 한국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한다. 특히 아이들은 적응 과정 또는 환경 요인에 의하여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하게 형성된다. 이러한 이들의 희망은 결국 이들의 자녀들이 우리의 미래 인적 자원이 될 것임을 시사한다.

둘째, 중국동포가정에 대한 차별적 접근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중국 동포의 전반적 생활여건은 열악하고, 특히 장시간 근로로 자녀 양육환경 역시 열악하다. 그러나 중국 동포 내에서도 저소득층과 중산층으로 분포하고, 합법체류와 불법체류, 건강보험 가입 가정과 미가입 가정, 맞벌이와 외벌이 가정 등 경제력과 생활상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경제력 및 체류신분에 의한 중국동포가정 내의 차이를 고려하여,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동포가정 지원 정책과 함께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제공되는 지원정책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불법체류자의 자녀에 대한 고려이다. 본 조사에서도 무국적 아동이 14% 정도로 조사되었다. 조사 대상 영유아 중 80% 이상이 한국에서 태어난 아동이다. 특히 불법체류자 가정의 자녀들은 비제도권의 사각지대에 머무르고 있는 아동들에 대한 적정수준의 의료와 교육 서비스의

제공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부이지만 부모의 불법체류 신분으로 인하여 자녀도 무국적 상태가 되고, 따라서 의료지원, 심리적 적응과 정체성, 학업의 지속성 등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동권리보장 차원에서도 국내거주 영유아에 대한 기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넷째, 교육 및 보육 서비스 기회를 보장하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자녀양육의 어려운 점으로 병원비를 포함한 양육비용의 부담과 그 다음으로 자녀와의 시간 부족, 아이의 장래불안으로 응답되었다. 중장기적으로 보육·교육료 지원체계에 외국국적의 중국동포가정 영유아를 편입시키는 방안의 마련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동포가정에 맞벌이가 많고 부모의 긴 노동시간으로 인하여 영유아 어린 자녀와의 시간 확보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동포가정 자녀 대상의 연장 보육 서비스 제공의 지원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의료서비스 즉 건강보험 가입가정과 미가입가정의 자녀양육의 어려움과 자녀양육환경의 충분성의 의견에 차이가 있었다. 건강보험의 가입률이 약 60% 이상으로 나타난 가운데, 상대적으로 부모가 젊은 세대일수록, 고학력일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건강보험 가입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즉, 열악한 환경의 자녀는 중복된 불이익 구조 속에 놓이게 된다.

여섯째,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자녀 양육 정보 제공 및 상담 등 지원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중국동포가정의 응답을 통해서 나타난 동포가정에 대한 자녀양육지원의 수혜률이 약 4% 수준으로 매우 저조하였으며, 공공 및 비영리 기관의 제공과 알림에 의한 서비스 수혜보다는 동포가정에서 개별적으로 찾고 구하는 노력에 의한 서비스 수혜가 많았고, 대체로 경제적 어려움과 자녀교육의 어려움을 당면문제로 인식하였다. 7개 항목을 통해 자녀 양육환경에 대해 평가 결과에서도 영유아 자녀에 대한 보호·돌봄, 영양, 의료, 예방접종 등의 영유아 대상 서비스 제공보

다는 '부모 대상'의 자녀양육 및 교육에의 정보 제공이 더욱 더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동포가정 영유아자녀에게 제공되는 직접적인 보육·교육 서비스뿐만 아니라 부모들에게 제공하는 구체적인 정보 알림과 양육지원의 노력이 요구된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한 관련 기관의 '정보제공' 및 '상담' 서비스의 강화 그리고 방문형 등의 '찾아가고 먼저 제공하는' 서비스의 강화가 요구된다. 또한 정부 및 비정부 전달체계를 통한 동포가정에의 자녀 양육 지원이 의료, 교육, 법률 등 영역별로 좀 더 체계화·구체화 되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제5장 중국 거주 중국동포의 영유아 육아실태

제1절 중국 조선족 인구나 육아지원기관 개요

1. 중국 조선족과 소수민족정책

2000년 기준으로 중국 조선족은 1,923,842명으로 전체 중국 인구의 0.16%, 소수민족의 약 1.8%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중국 2000년 제5차 인구조사에 의하면 중국 내 총 인구수는 1,242,612,226명이며 이 중 한족이 91.6%인 1,137,386,112명으로 중국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8.4%는 104,490,735명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소수민족 중 조선족이 1,923,842명으로 소수민족의 약 1.8%정도를 차지한다.

한편, 조선족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길림성 내 연변조선족자치주³⁶⁾의

36) 중국조선족은 중국의 다른 민족에 비해 거주 역사는 짧지만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에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1949년 신중국 정부가 성립된 후, 중국국민과 동등한 사회적 지위를 갖게 되었고 “중화인민공화국민족구역자치실시요강”에 따라 1952년 9월 연변조선족 자치구를 성립하였고 1955년 12월에는 헌법에 근거하여 ‘자치구’를 ‘자치주’로 변경하였다. 연변조선족자치주는 중국조선족의 중요한 집단거주지역으로 조선족이 집단자치제를 행사하는 지역으로, 자치주 정부는 조선말과 조선글의 사용을

총 인구수는 2000년 제5차 인구조사에서는 2,184,502명인데 이 중 조선족 인구수는 842,135명으로 연변주 전체 인구수의 38.6%를 차지하였다(吳仕民主編, 2006). 그러나 2009년 중국 인구통계 자료에 의하면 연변조선족 자치주 조선족 인구는 806,000명으로 전체 연변 인구수의 36.8%로서 2000년도에 비해 인구수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³⁷⁾ 이는 중국 정부의 한족(漢族) 자치구역 이주 정책을 통한 소수민족 동화 정책, 그리고 한편으로 중국동포의 도시 지역으로의 진출 등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조선족은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 적용 대상의 일부이다. 중국정부는 소수민족의 고유한 언어와 고유 풍습을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소수민족을 위한 특별한 보호와 교육정책, 의료서비스 정책 등을 추진하는 등의 소수민족 포용정책을 추진해 왔다. 소수민족 아동도 한족 아동과 동일한 권리와 자유뿐 아니라 중앙정부 정책과 법에 의하여 특별한 보호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소수민족 자치법(the Regional Ethnic Autonomy Act)이다.

특히 중국은 2001년 2월 중국인민대회 상임위원회(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에서는 법적·제도적으로 소수민족의 자치를 중국정치체도의 기초로 삼으려는 목적으로 소수민족 자치법(the Regional Ethnic Autonomy Act)을 개정하였다. 동법 제10조에는 “자치구 자치정부는 소수민족 고유의 언어, 전통과 관습을 보존하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자치구 정부에 번역과를 두어 조선어, 조선문과, 한어(漢語), 조문(朝文)을 동시 사용하고 있으며 간판, 상표, 보고문, 회의, 법원소송과 판결 등 모두 이중언어, 이중문자를 사용하고 있음(안분옥·홍설화, 2009).

37) 중국공산당 정부는 그간 한족(漢族)을 자치구역에 이주시키는 정책을 실시하여, 오랜 세월 동안 부지불식간에 소수민족을 동화시켜 왔음. 이러한 정책으로 말미암아 내몽고자치구(內蒙古自治區), 광시좡족자치구(廣西壯族自治區), 닝샤후이족자치구(寧夏回族自治區)에서 한족(漢族)의 인구 비율은 자체지구 소수민족인구보다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고 발전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받는다”라고 명시하였다. 교육관련 법조항을 살펴보면, 자치구 자치정부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학교급별, 교육제도, 교육과정, 교수용어, 학교등록절차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제36조), 소수민족 아동들이 대부분 다니는 학교에서는 소수민족의 언어로 된 교과서와 교수매체를 사용하며, 교육과정에 따라 다르지만 중국어 수업은 표준 중국어³⁸⁾를 소학교 고학년부터 시작하도록(제37조) 규정하고 있다. 법적·제도적 보호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수민족 아동을 위한 교육비용을 증액하여 의무교육 국가 프로그램에 할당된 중국화폐단위로 39억원(RMB) 중에서 22억원을 소수민족에 사용하는 등 소수민족의 의무교육 확충을 위해 노력하였다. 소수민족 아동의 의무교육확충 정책이외에도 소수민족의 아동을 위해 양질의 보건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유아사망율이 현저하게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다(UN CRC, 2005).

2. 조선족 유치원 교육 발전과정과 법규: 연변조선족자치주 중심³⁹⁾

가. 보육·유아교육의 연혁

중국은 아직 사회적 자녀 돌봄이나 이에 대한 정책 수요가 우리나라 처럼 강하지 않다. 이는 대부분 자녀 수가 한 자녀이고 확대가족의 비율이 비교적 높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탁아와 보육이 구분되고 있으며 주요한 자녀 돌봄 지원제도인 출산 및 출산휴가 비용은 생육보험⁴⁰⁾으로 지원하며 이외 수당제도는 없다. 이러한 중국 생육보험, 탁아 및 유아교육 정책은 사회주의 혁명기, 대약진 운동기, 문화대혁명기,

38) 북경을 중심으로 사용되는 현대 표준 중국어(Putonghua)임

39) 연변조선족 유치원 연혁, 법규, 특징은 안분옥·홍설화(2009) 논문에서 발췌함.

40) 1951년 5대 사회보험의 하나로 출발하였으며, 출산휴가, 주산기 급여, 생활보조로 구성

개혁개방 등의 시대적 변화를 거치면서 변모하여 왔다.

중국에서 탁아소와 유치원이 함께 발전한 시기는 사회주의 혁명기(1949년 10월~1956년 8월)와 대약진 운동기(1956년 9월~1966년 4월)라 할 수 있다. 이 두 시기 약 17년 동안 중국의 유아교육의 임무는 “신민주주의 교육방침에 의하여 유아를 교육하며 그들의 심신이 소학교 들어가기 전에 건전하게 발육하게 하며 동시에 유아에 대한 어머니의 부담을 경감시켜 어머니들이 정치생활, 생산노동, 문화교육활동 등에 참가하게 해야한다”고 1952년 3월 18일에 반포한 「유치원잠행규정초안」에 규정하였다. 이어서 1955년 1월 중앙 교육부에서 발표한 「공장, 광산, 기업에서 자체로 중소학과 유치원을 설립에 관한 규정에 관하여」 규정에 근거하여 1956년 2월 23일 교육부, 위생부, 내무부에서는 ‘연합통지’를 내보내어 “수요와 가능한 조건에 근거하여 적극적으로 탁아소와 유치원 등을 발전시키며……교육행정부문에서 가능한 조건에서 일부 유치원을 꾸리어 시범작용을 하라”고 지시하면서 동시에 “탁아소, 유치원을 가능한 다종다양한 방법으로 꾸려서 반드시 전일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리화, 2009).

이처럼 1950년대에는 ‘유아의 심신발달’과 ‘부녀자의 노동력’이란 두 축을 목적으로 유아교육사업을 추진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주로 영아의 보육을 담당하는 탁아소가 유치원과 함께 문서에 병기되고, 중요하게 다뤄져왔다. 요컨대 당시 농촌에서 생산량 확대를 강조하기 위해 ‘세날 탁아소’(三日託兒所), ‘하루밤 탁아화’, ‘좋은 탁아소와 유치원을 꾸리자’ 등의 구호에서 ‘탁아소’란 단어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66년 5월부터 1976년 9월까지 문화대혁명시기에는 유아교육사업도 다른 교육사업과 마찬가지로 퇴보하는 시련을 겪게 된다. 그러다가 1978년 말 개혁개방의 열기 속에서 유아교육은 또 다시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그러나 개혁개방시기에 촉발된 유아교육사업은 이전의

사회주의 성격과는 분명 달랐다.

이 시기의 도시와 농촌 사업구조의 급속한 변화는 개체(민영)유치원의 설립과 발전을 촉진하였고 산아제한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조기인지개발(유아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조기교육 열풍이 일어나면서 탁아소란 물리적 공간과 단어가 1980년대 일부 정책문서에서 잠깐 등장할 뿐, 점차 사라지게 된다. 사회가 개방화되면서 직장을 중심으로 무상으로 영아의 보육을 담당하는 탁아소는 서서히 사라지고 유아교육은 3세부터 취학전 유아의 교육을 담당하는 유치원으로 한정하는 개념으로 변화, 고착화 되어갔다.

유아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수요가 커지면서 유치원은 계속 증가하고 그 운영여건은 점차 개선되면서 교육의 질도 향상되었다. 특히, 2000년대 들어서면서 유아교육사업은 교육행정부문과 사회민족교육 체계의 변화로 빠르게 발전하였다.

〈표 V-1-1〉 중국 보육, 유아교육 관련 정책 변화

구분	내용
1949-1950중반 (사회주의 혁명기)	- 노동보험조례 제정, 생육보험과 국영탁아소 설치 명시 - 1951년 탁아소와 수유실 설치 의무 규정
1950 후반-1960 중반 (대약진 운동기)	- 탁아소와 유아원 등 보육시설 폭발적 증가로 양적 팽창 - 국가 책임을 기업이나 지역으로 어느 정도 이전
1960 후반-1970 중반 (문화대혁명기)	- 자녀돌봄정책의 일시적 후퇴기, - 생육보험 정지 및 탁아소와 유아원 실질적 휴원, 후퇴 - 유치원과 학교는 수정주의자의 제도로 선언
1970 후반-1980년대 (개혁개방 시작)	- 자녀돌봄정책 재정비 - 기업과 민간의 역할 강조로 생육보험은 개별 기업이 부담하며 보육은 국가와 민간 간의 협력적 발전 선언 - 서구국가들의 영향으로 교육 목적을 강조하고 유치원 설립
1990년대 이후	- 시장경제에 기반한 체계로 이동 중 - 생육보험은 기업독자 운영에서 사회기금 방식으로 재정통합 - 탁아소는 단위제도 해체에 따라 정부책임 축소, 사립유아원 우대

자료: 연변조선족자치주교육국편(2010). 2008-2009학년도 연변교육통계자료. 195쪽.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도 1952년 9월 성립 이후 조선족들은 민족교육에 주력해 왔는데, 유아교육도 민족교육과 궤도를 같이 하여 그 중요성을 인식함과 더불어 여성 노동력을 통한 경제발전을 위해 탁아소, 유치원 사업을 발전시켜왔다. 연변조선족자치주는 1945년 이후 유아교육관계자들에 의해 설립된 민영 형태의 탁아반, 유아반들이 해방초기 여성 노동력의 해방으로 유아교육사업발전을 더욱 촉진시켜 탁아소와 유치원을 발전시켰다. 이후, 중국의 전반적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현재와 같이 민간 우세의 유아교육체계를 갖게 되었다. 즉, 2008년~2009년 연변유치원수는 총 305개이며 민영유치원은 총 226개로 총 유치원수의 74%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조선족유치원은 19개인데, 공영보다 민간의 비중이 더 크다(표 V-1-2 참조).

〈표 V-1-2〉 연변조선족자치주 유치원숫자통계 : 2008-2009학년도

단위: 개

구분	계	도시		현진(縣鎮)				농촌			
		공영	집체 민영 기타	공영	집체	민영	기타	공영	집체	민영	기타
경영주체											
합계	305	1		23	2	191	10	30	11	35	2
조선족	19			7		8		1		3	

자료: 연변조선족자치주교육국편(2010). 2008-2009학년도 연변교육통계자료. 188쪽.

〈표 V-1-3〉 연변조선족자치주 유치원생 현황 : 2008-2009학년도

단위: 명

	입학생수	유치원 재학생수
합계	17,353(이 중 학전반 입학생수 6,017)	32,936(이 중 학전반 재학생수9,445)
조선족유치원	2,815(이 중 학전반 입학생수 1,006)	6,408(이 중 학전반 재학생수1,698)

자료: 연변조선족자치주교육국편(2010). 2008-2009학년도 연변교육통계자료. 195쪽.

2008년~2009년 연변자치주의 유치원에 입학한 유아는 17,353명이며 이 중 초등학교 예비교육단계인 학전반의 입원생은 6,017명으로 조사되었다. 동(同) 기간에 조선족유치원을 입학한 유아는 2,815명으로 유치원

입학생의 약 16%를 차지하였다.

2008년~2009년 연변자치주의 유치원을 다니는 재원아는 32,936명이며 이 중 조선족유치원을 다니는 재원아는 6,408명으로 전체 재원아수의 19%정도를 차지하고 있다(표 V-1-3 참조).

나. 유아교육 관련 법규

현재 연변조선족 유치원에 적용되는 유아교육 관련 법규로는 1996년 3월 9일에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교육위원회 명령'으로 채택되어 1996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유치원사업규정」과 1997년 1월 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연변조선족자치주 유치원 관리규정」과 「연변조선족자치주 개체유치원 관리세칙」 등이 있다. 이들 법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유치원 사업규정

「유치원사업규정」은 1996년 3월 9일에 국가교육위원회령으로 채택되어 1996년 6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총 10장 62조의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총칙으로 1조에서 7조까지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는 목적, 임무, 대상, 유치원수업형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2장은 8조에서 11조까지로 유아모집과 반편성에 대한 규정이며, 제3장은 12조에서 20조까지이며 보건과 위생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4장은 21조에서 29조로 구성되어 교육의 원칙과 교육활동형식, 소수민족의 언어사용 허가, 소학 교와의 연계성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제5장은 30조에서 33조까지로 유치원의 건물과 설비를, 제6장은 34조에서 41조까지로 교직원의 자격과 의무를, 제7장은 42조에서 49조까지로 유치원의 경비관리 방법과 경비심사 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8장에는 48조에서 51조까지로 유치원과 가정과의 연계성 교육, 부모교육, 지역사회교육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으며, 제9장에서는 52에서 58조까지로 유치원의 관리사업을, 그리고 마지막 제10장은 부칙으로 62조까지 구성되어 있다.

2) 연변조선족자치주 유치원 관리규정

「연변조선족자치주 유치원 관리규정」은 「유치원사업규정」에 근거한 규정으로서 1997년 1월 5일 주정부에서 각 현(시), 향(진), 각 위원회, 판공실, 각 기업, 사업장에 명령하여 유아교육에 대한 관리체제를 완벽화하며 유치원에 대한 과학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조선족자치주의 신청에 따라 제정한 규정이다. 이 규정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유치원 관리규칙, 제3장은 유치원 보육과 교육에 대해, 제4장은 유치원 행정사무, 제5장은 장려와 처벌의 내용을 담고 있다.

3) 연변조선족자치주 개체유치원 관리 세칙

「연변조선족자치주 개체유치원 관리세칙」은 총 6장으로 개인유치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유아교육의 발전을 위한 국가와 길림성의 관계 규정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제1장은 총칙으로 개인유치원의 관리와 역할, 제2장은 개인유치원 운영조건과 심사과정, 제3장은 유치원교원의 자격, 직책 및 행정사무, 제4장은 유치원 등급에 따른 관리비와 교육비 징수 규정, 제5장은 상과 형사처벌, 제6장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조선족 유치원 운영 현황⁴¹⁾

조선족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연변과 심양에 소재한 주요 조선족유치원을 중심으로 본 조선족 유치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41) 본 연구를 위해 연구진이 방문한 조선족유치원을 중심으로 기술함.

1) 유아교육 특징

연변자치주 조선족 유아교육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유아교육은 민족교육의 중요한 단계로서 유아교육 관리, 유치원 시설, 교양원 양성, 교재출판 등 다양한 면에서 민족교육사업의 기초를 다진다.

둘째, 조선족의 높은 교육열에 의해 유아교육 발전이 추진되고 있다. 연변의 조선족은 예로부터 문화를 숭상하고 교육을 중시하는 전통을 갖고 있어 연변의 유치원 보급률은 비교적 높고 취원율도 높다. 연변의 향과 진에는 모두 78개의 중심(거점)유치원이 있고 이외에도 개체(사립)유치원도 많이 분포되어 있다.

셋째, 유치원에서는 우리말과 글로 가르치며 민족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조선족유치원에서는 우리민족의 전설, 민간이야기, 동화, 우화 등 민간문학 작품으로 어린이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기도 하며, 다양한 민속놀이, 태권도를 가르친다. 또한 찰떡, 김밥, 꽃떡, 선떡, 순대 등 민족의 고유한 음식을 맛보게 하며 교사와 유아들이 함께 김장도 담그고 김밥도 만드는 전통음식 체험활동을 실시한다.

넷째, 조선족의 “노래의 고향, 춤의 고향”으로 불리는 연변의 유아교육에서는 여러 가지 사물놀이, 동이춤, 부채춤, 장고춤, 가야금 등 민족예술을 중시하고 있어 이를 유치원에서 보편적으로 보급하고 있다.

2) 일과

조선족유치원의 하루일과는 대개 표 V-1-4와 같다. 오전 7시에 교사와 원아들이 등원해서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교육과정을 보면 천자문과 같은 한자, 조선어뿐만 아니라 영어를 가르치며 수학영역의 邏輯狗이나 手指運算은 오전, 오후 시간에 모두 다루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외에

도 음악, 미술, 노래, 담화 등 기본적인 유아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낮잠은 2시간 정도 자는데 유치원에는 취침을 위해 개인 침대가 원아 수만큼 갖춰져 있다.

〈표 V-1-4〉 활동시간표(S시 조선족유치원) : 2010~2011년 1학기

순서	시간	활동내용
1	7:00 - 7:20	교사 출근
2	7:00 - 7:20	원아 등원, 조식, 방송(음악)
3	8:20 - 8:30	천자문
4	8:30 - 9:00	邏輯狗(LOGICO: 일종의 카드놀이), 手指運算(손으로 가감승제하기)
5	9:00 - 9:20	조선어 단어(어휘) 2000字
6	9:20 - 9:40	휴식
7	9:40 - 10:10	영어, 음악, 미술, 동요, 전래동화
8	10:10 - 11:00	실외활동
10	11:10 - 12:00	점심, 세계명곡, 역할극
12	12:00 - 2:00	낮잠
13	2:00 - 2:30	과일먹기(오후간식)
14	2:30 - 3:00	邏輯狗(LOGICO: 일종의 카드놀이)-오전과 동일
15	3:00 - 3:20	조선어 단어(어휘) -오전과 동일
16	3:20 - 4:00	실외활동
17	4:10 - 4:40	저녁식사
18	4:40 - 5:00	천자문, 세계명곡
19	5:00 - 6:00	하원, 자유선택(자유활동)

자료: S시 조선족유치원 내부자료

〈표 V-1-5〉 교육내용(S시 조선족유치원)

구분	내용
교재	邏輯狗, WWYY
영어	GOGO영어, WWYY영어
조선어	어휘(2000字), 스스로 전래동화 읽고 쓰기, 능숙하게 천자문 읽기(通讀)
음악	매주 전통음악(민속가곡) 1개
미술	자유롭게 그리기
체육활동	민족전통놀이(제기차기, 씨름 등)

자료: S시 조선족유치원 내부자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아 조선족유치원에서는 조선어교육(오전, 오후

실시), 전통음악, 전통놀이 등 민족교육을 중요하게 다루는 것을 알 수 있다(표 V-1-5 참조).

유치원에서 민족교육을 중요하게 다룰 수 있는 또 다른 기제로는 유치원평가를 꼽을 수 있다. 표 V-1-6을 보면 S시 유치원의 환경평가 지표인데 총 100점 만점에서 ‘민족특색’ 항목으로 20점이 책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치원의 환경이 민족특색에 맞게 구성되었는지, 그리고 민족교육을 실시하는 지가 평가의 주된 내용이다.

〈표 V-1-6〉 S시 H구 조선족유치원 환경 평가표

항목	평가표준(심사기준)
시설·설비 25점	교육목표, 내용, 주제와 부합되는가?
	원아의 연령과 학습(발달)특성에 부합하는가?
	배치가 새롭고, 심미적이며 색채가 조화로운가?
	원아들한테 유익한 경험을 제공하는가?
영역설치 20점	내용, 수량, 원아 연령에 맞게 설치됐는가?
	영역 배치가 “개방, 분할, 합리”적인 원칙을 나타내고 있는가?
	영역 배치가 명확한 규칙, 표시, 기록이 있는가?
재료사용 25점	제공한 재료가 풍부하고, 안전, 위생적인가?
	제공한 재료가 활동영역특성과 부합하는가?
	제공한 재료가 원아들의 주도성, 창의성을 키워주는가? 발달차이가 있는 아이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가? 아이들의 잠재능력을 키우는 데 유익한가?
	교사들이 원아의 흥미와 욕구에 따라 활동재료를 증가하고 변화할 수 있는가?(활동재료가 고정적이지 않고 자유자재로 변화가능한가?)
민족특색 20점	환경이 민족특색에 맞게 구성되었는가? 민족교육특색을 반영하고 있는가?
구두면접 10점	각 반의 환경 설계 목적이 명확하고 새롭고 독특한가? 면접시 언어 표현을 잘하는가?

자료: S시 조선족유치원 내부자료

3) 특별활동

표 V-1-7은 한 조선족유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별활동프로그램 시간표로, 이를 통하여 부분적이거나 조선족 유치원 내 특별활동 경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보면, S시 조선족유치원에서는 소반(3~4세)에서

대반(5세~취학전)까지 전체 유아들에게는 영어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영어수업시간이 많아지고 있다. 소반의 경우 1회당 20분 수업을 일주일에 2회 실시하여 일주일에 총 40분 영어수업을 한다면, 중반은 1회당 20분 수업을 일주일에 4회 실시하여 일주일에 총 80분 수업을 한다. 대반은 일주일에 2회 수업하는 것은 소반, 중반과 동일하나 수업시간이 20분과 30분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일주일 총 수업시간은 총 100분이다. 체육은 중반부터 실시하며, 무용과 율동은 대반에서만 실시하고 있었다.

〈표 V-1-7〉 특별활동수업시간표 : 2010-2011년 1학기

구분		월	화	수	목	금
소반(3-4세) (1반, 2반)	오전					
	오후	소1반 영어 2:40-3:00	소2반 영어 2:40-3:00	소1반 영어 2:40-3:00	소2반 영어 2:40-3:00	
중반(4-5세) (1반, 2반)	오전	영어/중1,2 반 9:40-10:00 10:10-10:30		영어/중1,2 반 9:40-10:00 10:10-10:30		
	오후		중1반 체육 3:20-4:00		중2반 체육 3:20-4:00	
대반(5세-취 학전) (1반, 2반)	오전		영어/대1,2 반 8:00-8:20 8:30-9:00		영어/대1,2 반 8:00-8:20 8:30-9:00	
		무용반 10:10-11:00	대1반 율동 ⁴²⁾ 10:10-10:40	무용반 10:10-11:00	대2반 율동 10:10-10:40	무용반 10:10-11:00
	오후	대1반 체육 3:20-4:00		대2반 체육 3:20-4:00		

자료: S시 조선족유치원 내부자료

42) 절주(節奏): 선생님하고 애들이 박수치며 하는 게임형식

제2절 중국거주 동포의 영유아 자녀 양육자

제2절에서는 연길시, 도문, 심양시 등 중국 조선족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을 중심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자료와 (조)부모, 부모, 유치원교사 및 원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면담 자료를 이용하여 중국 동포의 자녀 양육 실태와 요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 자료 분석은 전반적 경향과 악과 더불어 학력과 가구소득을 독립변수로 하여 집단간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았다.⁴³⁾

1. 중국내 자녀 양육자

가. 부모와의 동거

중국 조선족 어머니나 아버지들은 외국으로 일을 찾아서 집을 떠나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자녀를 포함한 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사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조선족 부모들은 중국의 다른 소수 민족보다 자녀 교육열이 높고, 자녀의 교육 성취도 또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족 부모들은 가구소득 향상을 통하여 풍요로움을 추구하며 자녀에게 더 좋은 성장과 교육 환경을 자녀에게 제공하고 미래를 더욱 더 보장하기 위하여 부부, 자녀 등 가족과의 장기간 별거를 감수하고 있다. 방문취업 제도 등으로 한국 입국 기회가 많아지면서 이러한 현상은 중국 동포 사회에 보편적 현상이 되고 있다. 부부가 자녀만을 중국에 둔 채 한국에 함께 와서 일을 하는 경우도 많다.

길림성 연변자치주와 심양에서 조사한 본 조사 대상 가구 중에서도 조사 당시 아버지의 18.5%는 한국에 4.2%는 다른 국가에 나가 있었고

43) 조사 사례수가 한정되어 여러 집단으로의 나누어 보는데 한계가 있었음.

어머니는 한국에 나가 있다는 비율이 12.9%이고 1.8%는 다른 나라⁴⁴⁾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현재 중국 거주자 중 과거에 한국에 살았던 경험이 있다는 비율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30%를 넘었다. 아버지나 어머니의 약 27%는 과거에 한국에 거주한 경험이 있다. 현재 거주자까지 합하면 아버지는 45.9%, 어머니는 39.5%가 한국에 거주한 경험이 있다(표 V-2-1 참조).

한국에 거주하게 되었던 유경험자들은 그 이유가 취업이 67.9%로 다수를 차지하고 15.1%가 친인척 방문이며 11.3%는 유학⁴⁵⁾ 등이었다(표 V-2-2 참조).

〈표 V-2-1〉 현재 부모 거주 국가

단위: %(명)

구분	현거주지				한국거주 경험 비율
	중국	한국	기타	계(수)	
부	77.3	18.5	4.2	100.0(216)	27.4
모	85.3	12.9	1.8	100.0(217)	26.6

〈표 V-2-2〉 한국에 거주하게 된 이유

단위: %(명)

구분	취업	유학	친인척 방문	기타	계(수)
전체	67.9	11.3	15.1	5.7	100.0(106)

부모들이 한국 등 다른 나라로 일자리를 찾아서 돈을 벌기 위해 나가는 경우에 자녀를 데리고 가지 못하고 중국에 두고 가는 이유로는 중국에 두는 것이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더 나을 것 같아서가 약 40%이고, 23.5%는 제도적으로 데리고 나가기가 어려워서, 16.3%는 경제적으로 비

44) 한국 이외 다른 나라는 미국, 일본, 사이판 등임.

45) 본 조사 대상자 특성상 한국유학 경험자가 다수가 포함된 것으로, 중국동포 전체를 반영하는 것은 아님.

용이 많이 들 것 같아서, 12.2%는 한국에서 자녀 양육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등이다(표 V-2-3 참조).

〈표 V-2-3〉 한국 거주 이유별 자녀를 한국에 데려가지 않은 이유

단위: %(명)

구분	자녀가 어려서	한국에 양육 도와줄 사람 없어서	중국이 더 나은 것 같아서	비용이 많이 들것 같아서	제도적으로 어려워서	기타	계(수)
전체	5.1	12.2	39.8	16.3	23.5	3.1	100.0(98)
방문 이유							
취업	4.8	9.5	36.5	22.2	25.4	1.6	100.0(63)
유학	9.1	45.5	9.1	-	27.3	9.1	100.0(11)
친인척 방문	6.3	-	68.3	12.5	12.5	-	100.0(16)
기타	5.2	12.5	38.5	16.7	24.0	3.1	100.0(6)

자녀를 중국에 두고 한국에 가는 이유로는 한국을 방문하는 이유별로 는 다소 차이를 보였으나 사례수가 한정되어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사실 중국 조선족 사회에서 중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데리고 외국으로 일하러 나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한국에서는 자녀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도 비쌀 뿐 아니라 아이들 돌보아 줄 사람도 없다.

부모들만 가고, 아이들은 가는 거 잘 못 봤어요. 제 친구들은 다 가고 애 들은 다 여기에 있고, 다 워킹러니랑 있고, 친척들이 많으니까 다 여기에 서 보고, 돈 벌러 가는 거니까 애들 데리고 가면 안 되죠. 한국 육아비가 엄청 비싸잖아요. 여기에서 돈 벌러 가는 건데 애들 데려가면 안 되고 돌 바줄 사람도 없고. 여기에는 친척들 많으니까 돌봐주시니까... (어머니 5)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가 어릴 때 몇 년 나가서 돈을 벌어서 와서 자녀 가 공부할 나이가 되면 자녀를 직접 보살피겠다고 마음먹는다고 한다.

초등학교 4학년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4학년 이후부터 애 키우 자. 그래서 유치원생들이 그냥, 언더 아니면 아빠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 지 아니면 양고 지내는 고모..., 일 하면서 애 키우는 것이 무리니까요.

(교사 2)

초등학교 4,5학년까지. 4학년부터는 내가 키우겠다. 그러니까 3,4년 동안 돈 벌어서 오지요. 내 애가 대학교까지 공부할 것만 만들어 놓으면 된다. 이렇지요. (원장 2)

어떤 아이들은 업자가 들어와요. 초등학교 들어가거나 애가 너무 커서 고등학교 들어가면 어린이를 잡아주는 것이 부모잖아요. 할아버지 딸 안 들고 하니깐, 업자 아빠가 와서 지켜줘야 하니깐 어렸을 때 갔다가 굶방 돈 벌어서 오지요. (어머니 4)

그러나 한국에서 일하다 보면 한국에 체류하거나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기간은 길어진다는 경우도 많다. 귀국했다가도 중국에서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경제적 욕구가 충족이 안 되면 다시 일자리를 찾아 외국으로 나가는 것이다.

항상 갈 때는 한 1년 정도 2년 정도 갔다온다 하지만 하다보면 5년, 6년 그렇게 되요. 온다고 왔지만 또 생각이 바뀌어서 다시 가고 그래요. (교사 2)

한 몇 년 가서 벌고 왔는데 와서 보니 물론 한국보다 돈을 많이 못 벌니까 눈에 안 차니 다시 가는 거죠. (교사 1)

부모들 중 한 사람만 한국이나 외국으로 가고 부모 중 한 사람은 중국에 남아서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는 문제가 비교적 적다. 또한 부모가 다가는 경우에도 친인척이나 조부모가 있으면 이들이 아이들을 돌본다. 그러나 친인척이나 조부모 보육이 어려운 경우 보모를 고용한다. 자녀를 한국에 데리고 가는 것보다 중국에 두고 양육비용을 지원하는 편이 경제적으로도 절약이 된다.

아들 아이들은 2명 돌보아요. 둘째 아들 여자아이한테 죽은 큰 아들 낳자 아이는 내가 키워요. 둘째 아들은 딸이 4살, 아들은 3살인데, 3살 낳자

아이는 외가집에서 키우고, 큰 며느리는 한국에서 재혼했다고..(조모 1)

둘째 아들 손녀는 3개월부터 키웠어요. 혼자서 키웠어요 한 아이에 30씩 60만원 타요... 데려가서는 일을 못하니깐...우리가 같이 나가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나까지 먹고 살아야 하니..(조모 1)

희귀한 면담 사례이지만 한국에서 한국 국적 없이 잠시라도 자녀를 길러 본 사람들은 특히 의료비와 유치원 교육비 부담이 만만치 않음을 토로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조선족 사회에 보편화되어 있었다.

언자가 있어서 갔는데, 한국에 계속 쪽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모로 어렵 더구요. 의료보험이 안 되잖아요. 애가 아플 때 열도 많이 나고. 이빨이 안 좋으니까 치과에 갔는데 특히 진균 가는데 10만원. 아플 때 그게 제일 어렵고. 유치원도 다녀보고 학교도 다녀봤어요. 2009년도 갔을 때는 유치원도 갔다가. 유치원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어려워도 외국인이니까. 그래서 들어와서..(어머니 2)

그러나 한국의 유치원 교육에 대해서는 평가가 매우 긍정적이었고, 자녀들도 한국 유치원을 좋아하고 매우 잘 적응하였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한국 육아지원기관 이용 아동이 활발하고 자기표현을 잘한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이는 윤갑정(2008) 연구에서도 보고된 바와 같은 결과이다.

본 설문조사에서는 한국에서 중국 동포 자녀 양육을 지원할 경우 한국에 자녀를 데리고 갈 의향에 대해서는 11.0%만이 무조건 데리고 간다고 응답하였고, 다수인 53.4%는 조건을 보아가며 선택한다고 하였고, 35.6%는 아이 장래를 위해서는 그래도 중국에서 자녀를 기를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모의 학력이 대학이상이고 가구소득 수준이 중국화폐로 6,000원 이상인 경우 자녀를 무조건 데리고 가겠다는 비율이 다소 높았다(표 V-2-4 참조).

〈표 V-2-4〉 모 학력별 제도적, 경제적 지원 시 한국 거주 여부

단위: %(명)

구분	무조건 데리고 나감	조건 보가며 선택	아이 장래위해 중국에 둠	계(수)
전체	11.0	53.4	35.6	100.0(73)
모학력				
고급중학교 이하	16.2	45.9	37.8	100.0(37)
중등전문학교+3년제	-	72.7	27.3	100.0(22)
대학	28.6	42.9	28.6	100.0(7)
가구 소득				
3000원 미만	16.2	45.9	37.8	100.0(37)
6000원 미만	-	72.7	27.3	100.0(22)
6000원 이상	28.6	42.9	28.6	100.0(7)

심층면접 결과에 의하면 최근에 들어서 중국의 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그들의 자녀들은 외국보다 오히려 중국에 기회가 더 많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 교육이 멀은 딱 한 건 아니구요. 경제적 발전 추세나 이전 걸 봤을 때 여기서 있는 게 좀 더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국에 서도 여기 와서 공부하는 사람 많아지잖아요.. (어머니 2)

따라서 국적 취득보다는 중국 국적을 거지고 한국 영주권을 확보하여 두 나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유리한 점을 취하면서 살고자 하는 의견들이 많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사는 게 좋아서나기보다는 편하게 돈을 벌고자 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으로는 중국이 더 나은 거라 생각하니까 국적은 포기 안 하고 영주권만 얻어서 한국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거죠. (원장 2)

나. 대리 양육자

자녀를 중국에 두고 부모들이 한국 등 다른 나라로 돈을 벌기 위해 나

가는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부모의 자녀 양육 빈 자리는 조부모, 친인척 및 전문보모가 대신 채운다. 가족유형을 보면 부모 모두와 자녀가 함께 살지 않는 비율이 높다. 본 조사 대상자도 15.0%는 한부모와 살며 10.1%는 조부모와 사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 양육자도 18.6%가 조부모이며 6.3%는 전문보모로 나타났다.

친정어머니도 없고 시어머니도 없으면 보모를 쓸 수밖에 없어요. 유치원은 잘 안 받아요. 24개월 이후부터 유치원에서 받으니까..(어머니 1)

엄마, 아빠 다 떨어져 있는 아이들은 또 할머니하고 있지도 못해서 다른 집에서 살면서 있는 아이도 있어요, 그 애들은 더 불쌍하죠. (교사 2)

보모는 이웃집 사람도 있으나 직장을 가진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교사가 담당하는 사례가 있다. 자녀의 학업 부진을 우려하여 부모가 자녀 양육을 전문보모는 현직 유치원교사나 초등학교 교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한 유치원교사의 경우 유치원 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유치원에서 일하면서 유치원생, 방과후 초등학생을 돌보다 함께 퇴근한다. 유치원에서도 교사 급여가 많지 않으므로 대체 인정해 주는 분위기이었다.

유치원에서 허가를 맡아야지요. 괜찮겠습니까? 애가 얼마나 먹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원장 2)

〈표 V-2-5〉 가족유형

단위: %(명)

구분	부모와 자녀	아버지와 자녀	엄마와 자녀	조부모와 자녀	친인척과 자녀	기타	계(수)
전체	58.1	4.0	11.0	10.1	2.2	14.5	100.0(227)

〈표 V-2-6〉 현재 영유아 주 양육자

단위: %(명)

구분	모	부	조부모	친척	전문직 보모	기타	계(수)
전체	35.2	4.0	18.6	4.0	6.3	32.0	100.0(253)

가족 유형은 부모와 자녀가 58.1%이고 약 15%가 한부모 가족이며 10% 정도는 조부모 가족이다. 자녀의 주 양육자는 모 35.2%, 조부모 18.6%이 부와 친인척이 각각 4%를 차지한다. 전문보모는 6.3%이다(표 V-2-5, 표 V-2-6 참조).

한국에 거주한 경험자의 당시 자녀의 주 양육자는 조부모가 33.6%이며 부와 친인척이 각각 7.3%, 기타 6.3%이다(표 V-2-7 참조).

중국 조선족 가정은 약 37%는 확대가족 형태이므로 친족에 의한 지원 체계가 유용한 것으로 보인다(천희영 외, 2006). 그러나 전문보모의 등장은 직계 대가족으로부터 핵가족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표 V-2-7〉 한국 거주 이유별 영유아 양육자

단위: %(명)

구분	모	부	조부모	조부모 외 친인척	기타	계(수)
전체	42.7	9.1	33.6	7.3	7.3	100.0(110)
취업	32.4	7.0	43.7	11.3	5.6	100.0(71)
유학	41.7	8.3	33.3	-	16.7	100.0(12)
친인척방문	68.8	12.5	12.5	-	6.3	100.0(16)
기타	83.3	-	-	-	16.7	100.0(6)

부모가 모두 외국으로 나가고 조부모 친인척, 전문보모가 아동을 맡아서 양육하게 될 때 대리양육인 중 38.2%는 별도의 댓가를 받지 않는데, 이 경우는 대부분이 조부모로 파악된다. 조부모는 댓가를 받지 않거나 소액을 받는 것으로 파악된다(표 V-2-8 참조).

둘째 아등네는 엄마는 150만원, 아빠는 200만원을 버는데..., 두 아이에 60만원씩 보내고 거기서 집세내고 먹고 하면서 쓰고.. (조모 1)

〈표 V-2-8〉 가구소득별 영유아 대리 양육인 월평균 임금

단위: %(명)

구분	없음	1000원 미만	2000원 미만	3000원 미만	3000원 이상	계(수)
전체	38.2	20.5	30.9	8.8	1.5	100.0(68)
3000원 미만	66.7	-	33.3	-	-	100.0(3)
6000원 미만	56.3	25.0	12.5	6.3	-	100.0(16)
6000원 이상	25.0	10.0	60.0	5.0	-	100.0(20)

한편 전문보모는 급여와 아동에 들어가는 생활비를 받게 되는데, 급여 수준은 다양하지만 대체로 800원 이상이 들고 최근에 1,000원 내외로 올랐다고 한다. 본 조사에서도 35%는 500~1,000원, 35%는 1,000~1,500원 수준으로 조사되었다(표 V-2-9 참조).

〈표 V-2-9〉 월평균 시설 이용비: 전문 보모

단위: %(명)

구분	500원 미만	500~ 1000원 미만	1000~ 1500원 미만	1500원 이상	계(수)
전체	14.3	35.7	35.6	14.3	100.0(14)

심층면접한 보모 사례자도 월 1,000원은 자신의 수고비로 받고, 또 1,000원은 아이에게 들어가는 생활비, 학비 등으로 받고 있다고 하였다. 즉, 한국 돈으로 40만원 미만이면 중국에 두고 온 자녀를 보모를 고용하여 양육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 수고비 1,000원 이고. 애 학비, 옷도 사 입히고. 다 포함된다 맞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2천원이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도 내 자식처럼 유치원에서 얼마 얼마 내라고 하고. 옷은 사 주고 갹식 주고. 내 자식처럼 한다 맞습니다. (보모 1)

다. 부모의 역할과 아이에 미치는 영향

부모들이 자녀와 떨어져서 외국에서 일하는 경우에 양국의 임금 격차로 단시간의 경제적인 안정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부부가 함께 일하는 가정은 더 빠른 기간 안에 조금 더 여유 있는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멀리 떨어져서 본국에 두고 온 아이를 위해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자주 아이의 상황을 물어보는 것으로 다하는 것이며,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보내는 것뿐이다. 이러한 한계는 모의 특성에 따라 차이를 내기도 어렵다.

조선족 부모의 외국 취업은 조선족 사회에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이나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아직 큰 문제로 인식하지는 않는 것 같다. 이는 조부모 등 친인척의 자녀 양육 지원 기능이 아직 작동하고 있고, 또한 방문 취업 등 한국 입국기회 확대 기간이 길지 않아서 자녀들의 연령도 아직은 어린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녀와 떨어져 있어도 전화, 인터넷 등으로 어느 정도 접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표 V-2-10〉 모학력별 영유아 돌보는 방법

단위: %(명)

구분	정기적으로 양육비 보내줌	자주 아이의 상황을 물어봄	별로 신경쓰지 않음	기타	계(수)
전체	23.9	72.8	1.1	2.2	100.0(92)
고급중학교 이하	19.1	78.7	2.1	-	100.0(47)
중등전문학교43년제	26.1	65.2	-	8.7	100.0(23)
대학	21.4	78.6	-	-	100.0(14)

아이들이 업자 아빠를 찾고 크게 그런 건 없어요. 일요일이면 컴퓨터로 업자아빠 본다 하니까.... (조모 1)

중국에서는 사증을 갱신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을 두고 중국에 다녀와야 하는 제도를 부모가 자녀를 만나는 기회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도 한다.

전에는 이렇게 떨어져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아이들이 다른 쪽으로 나가고 그런 경우가 많고 그랬어요. 근데 한국에서 한 번씩 왔다 갈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줘서 한 번씩 왔다 가니까 훨씬 괜찮죠. (교사 2)

2-3년에 한 번씩 오고... 지난해는 3년이 되어 기한이 되어 왔다 가야하니..9월에 왔다갔어요. (조모 1)

흔하지는 않은 일이지만 또한 자녀가 방학을 이용하여 한국을 방문하여 부모와 한 달 정도 함께 지내다 가기도 한다.

지난 방학 때 한 한달 정도 방학 기간에 가서 아빠를 만나고 오고. 애도 크니까 한다는 자체도 비행기 타고 갔다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모와 자녀가 몇 년에 한번 만나게 되므로 성장기 자녀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부모들은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것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63.3% 정도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고 27.6%는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았다. 모의 학력별로 일관성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V-2-11 참조).

〈표 V-2-11〉 모학력별 부모와 떨어진 후 영유아 영향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분	매우 좋지 않음	부정적임	영향이 없음	좋은점 없음	기타	계(수)
전체	4.1	59.2	27.6	7.1	2.0	100.0(98)
고급중학교 이하	62.0	30.0	4.0	4.0	-	100.0(50)
중등전문학교+3년제	48.0	32.0	8.0	8.0	4.0	100.0(25)
대학	73.3	-	20.0	-	6.7	100.0(15)

구체적으로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것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

에 대한 부모의 걱정으로는 질병, 정서적 결함, 외부적 사고가 각각 30% 내외이고, 6.3%는 학업부진을 들었다. 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외부적인 사고나 정서적 결함을 우려하는 비율이 높다(표 V-2-12 참조).

〈표 V-2-12〉 모학력별 대리 양육시 걱정되는 사항

구분	아이의 병	정서적 결함	외부적인 사고	뒤처지는 학업	단위: %(명)
					계(수)
전체	31.7	30.2	31.7	6.3	100.0(63)
고급중학교 이하	37.5	34.4	21.9	6.3	100.0(32)
중등전문학교이상	21.1	21.1	47.4	10.5	100.0(19)
대학	33.3	16.7	50.0	-	100.0(6)

우선 정서적으로 부모를 그리워하고 풀이 죽어서 아이들이 생기를 잃는 것을 우려한다. 조선족 아동의 별거 후 적응양상을 조사한 선행 연구에서도 외로움의 측면에서 부정적인 적응을 보였는데 이는 부모-자녀 별거현상이 아동발달의 정서적 적응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반증한다(조복희·이주연, 2005).

아직은 어려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럴지는 않은데도 정서적으로 많이 영향 받는 거 같아요. (아버지 1)

조선족 유치원 한반에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아이들이 총 30명에서 5, 6명 정도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아동을 매일 대하고 이들이 변화를 민감하게 관찰하는 유치원 교사들도 이들의 정서적 안정을 우려하였다.

부모가 그리우니 자기들은 왔다 갔다 하고 싶은데 경비가 많았지 않으니 까...부모들은 방학 때 오자하면 아이들이 그 때를 기다리는 데 그것도 창 옆에서 보기도 힘들더라구요. (교사 2)

한국에서 살면 집세도 내야 하고 하다보니 얼마 남지 않잖아요. 생활이 그러니 많은 습지만 만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애들이 언더아빠 얘기 하면 눈물 글썽이고 그래요. 굉장히 보고 싶어해요. (교사 1)

아빠하고 있는 아이들이 거의 다 언마 보고 싶어 하고 그래요 그리고 떠나는 날 일주일 전만 되면 얼굴에 웃음도 없고 눈물도 금성하면서 언마 그리워하고 그래요. 언마가 한국에 있고 왔다가 다시 한국 가면 천당과 지옥에 있는 것처럼 가련은 그래요. 학교에 있을 때 보면 다 얼굴에 나타나고 그래요. (교사 2)

우리 반 아이 중에도 언마 아빠 항상 같이 있다가 저번 학기 보니까 방학에 떠났는데 떨어지게 되니까 자꾸 그때부터 그래요. 선생님 보는 것 같지만 자꾸 떳생각하는 거 같고.... (교사 1)

학업의 문제는 아동 보호자의 심층면접에서도 이러한 우려가 표출되었다. 특히 조부모가 키우는 경우에 우려가 컸다. 특히, 별거 자녀 대리양육자 역할을 담당하는 조부모들은 손자녀 양육에 노파심과 걱정을 드러내면서 손자녀가 학습에 뒤떨어지지 않고 잘 따라갈 수 있을지를 염려하고 있었고, 교사 등 교육자의 관점에서도 이러한 점을 우려하였다. 유아가 할머니를 대리양육자로 인식하는 정도가 강할수록 말을 듣지 않는다는 선행연구(윤갑정·정계숙, 2007)와도 같은 맥락이다.

여기 나간 분들이 다 자식 위해 돈 번다고 나갔는데 돌아오면 다 자식이 잘못되죠. 부모는 나가서 돈 버는데 아이는 여기서 망가지는 게 안타깝죠. 소학교에 가면 그런 아이들이 많아요. 말 안 듣고 공부도 떨어지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우니까 말을 안 들어요. (어머니 1)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같이 있을 경우에는 아빠 언마만큼 신경을 못 써주니까 그렇죠. (교사 2)

돈만 벌지 말고 자식 교육에 많이 신경 써 주었으면 좋겠어요. 자식이 무엇보다 제일 큰 재산이잖아요. 보편은 한국에 가서 몇 년 벌어서 여기 와서 공장이 없으니까 또 놓아요. 그러니까 몇 년 쓰다가 또 없으면 한국에 가서 또 벌어야하거든요. 그러니까 힘들게 돈 벌고 자식과 떨어져 교육도 제대로 못하니까 가슴 아픈 일이에요. 중국 아이들 보면 유새 언마나 공부에 부모님들이 신경 쓰는지 몰라요. 그러니 여기서 신경을 못써주니 따라가지도 못해요. (교사 2)

자녀의 학업 부진을 우려하여 부모가 자녀 양육을 현직 유치원교사나 초등학교 교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다. 일부 유치원교사들은 자신이 돌보는 아이를 직장에서 하루 종일 데리고 있다가 함께 퇴근하고, 초등학교의 경우도 학교 끝나고 유치원에 와서 있다가 유치원교사 부모와 함께 퇴근한다. 이러한 경우에 교사 부모는 아동에게 공부는 잘 시킬 수 있으나 이외 영역에서는 부모의 역할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우려하였다. 특히 현직 유치원교사가 초등학교 아동 부모 역할을 담당하는 한 사례를 지켜보는 유치원 원장은 아동의 영양 문제를 우려하였다. 한참 잘 먹어야 할 나이에 유치원에서 유치원 아동들이 먹는 것을 같이 먹으니 영양이 충분하지 않다는 걱정이다.

애들이 영양실조 걸렸까봐 그거라도 정말 근심입니다. 선생님이 한 분 계시는데, 유아 전문 학교 출신도 아닌데, 그 분이 한국 간 애기를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여기가 직장이니깐 애기를 여기로 데리고 와서 똑같이 먹인다는 말입니다. 집에서는 안 하지요. 그 아이가 국면학교, 중학교 들어가서 애가 우리 유치원으로 와서 아침도 여기로 오고 점심도 와서 빵 먹입니다. 여기다가 와서 숙제 시키고 그러면 그 애기가 영양실조가 걸리지 않을까 너무나 근심됩니다. (원장 2)

또한 건전한 성장이라는 측면에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사실상 한 부모 가족인 한쪽 부모의 빈자리를 채우지 못하게 된다. 특히 사춘기에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데 돈으로만 해결하려다 보면 자녀가 올바르게 자라지 못하는 어려운 국면을 맞게 된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아빠하고 있는 아이들은 딱 두 갓내쥬. 딸하고 아빠, 아들하고 아빠, 아들은 크면 아빠하고 지내는 게 괜찮은데 딸들이 크면 아빠하고 지내는 게 사춘기도 오고 아빠하고 잘 못하는 경우도 많고... (교사 2).

우리 각도에서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부모가 옆에 있어주면서 올바른 교육을 해주면서 가정교육도 중요하니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떨어져서 돈으로만 아이들을 막 족시키고 그러니까 특히나 중학교 들어가면 사춘기도 오고해서 아이들이 교육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많이 변하는 것 같더라구요. (원장 1)

가족 간의 오랜 기간 별거는 부부간의 관계는 물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서먹하게 만들어서, 가족의 연대감이나 결속력을 상실시키고 심지어는 가족해체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다.

아빠가 8년 뒤에 오니까 아빠가 아빠 같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식구가 아니고 낯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보다도 더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애가 정이 없으니까 장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가 갈라진다고 하니깐 ‘마음대로 하세요’라는 겁니다. 아빠라도 해도 정이 없으니까요. 아빠가 나가서 8년 있다가 왔는데 결국에는 와서 1년 있다가 갈라져서 가더라구요. 그러니까 피해가 애들이죠. (원장 2)

제3절 자녀양육방식 및 가치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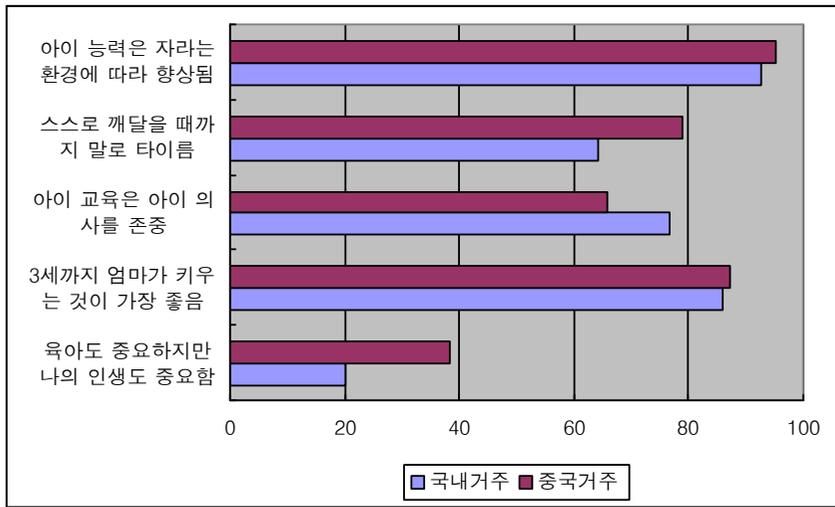
1. 양육관

다음은 자녀 양육방식과 자녀 관련 가치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응답자의 대표성이나 제 특성의 차이로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⁴⁶⁾, 조사 결과는 국내거주 조선족의 응답과 비율의 차이는 약간씩 난다. 다섯 문항 중 환경의 중요성과 3살까지 엄마가 기르는 일의 중요성은 별 차이가 없으나 육아도 중요하지만 나의 인생이 중요하다는 비율,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말로 타이른다는 비율이 국내거주 중국 동포가 10%p 이상 높고, 아이교육은 이이 의사보다는 부모가 판단하여 결정한다는 응답 비율은 중국거주 동포가 10%p 이상 높다. 국내 거주자가 아이 의사 존중

46) 국내 및 중국 동포 조사 모두 임의표집임.

비율이 높으면서도 말로 타이른다는 비율은 또 낮은 부조화를 보였다. 국내 거주 동포의 나의 인생이 중요하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자녀를 위해 희생한다는 의식은 더 높다고 하겠다.

[그림 V-3-1] 중국 동포 자녀 양육관 비교



각 항목별로 특성별 차이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육아와 나의 인생의 중요성'에 대한 어머니의 학력 및 가구 소득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육아를 위해 희생가능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낮고 내 인생도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는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동포의 인식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내 인생도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구소득 3,000원 미만인 경우가 육아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희생한다는 비율이 71%로 가장 높고 6,000원 미만은 55.8%, 6,000원 이상은 47.3% 순이다.

〈표 V-3-1〉 내 인생의 중요성 및 직접 양육의 중요성

단위: %(명)

구분	부모 인생의 중요성		직접 양육 중요성		계(수)
	내 인생도 소중함	내 인생 희생가능	3세까지 엄마가 키우는 것이 좋음	결에 없어도 크게 상관 없음	
전체	38.2	61.8	87.1	12.9	100.0(241)
모학력					
고급중학교 이하	21.1	78.9	79.3	20.7	100.0(92)
중등전문학교+3년제 대학	50.7	49.3	94.5	5.5	100.0(73)
대학	57.1	42.9	87.3	12.7	100.0(63)
X ² (df)	25.33(2)***		8.03(2)*		
가구 소득					
3,000원 미만	29.0	71.0	96.7	3.3	100.0(30)
6,000원 미만	44.2	55.8	88.2	11.8	100.0(85)
6,000원 이상	52.7	47.3	81.8	18.2	100.0(55)
X ² (df)	4.51(2)		4.00(2)		

주: * p<.05, *** p<.001

두 번째로 '엄마의 직접 양육의 중요성'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3세 전까지 엄마가 직접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중등전문학교 졸업이 94.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대학 졸업, 고급중학교 이하 순으로 통계적으로 집단간 차이가 있으나 일관성 있는 경향을 보아지 않았다. 가구소득별 차이는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3세까지 엄마가 키우는 것이 좋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어떤 아이들은 엄마가 타운. 너무 오래된, 초등학교 들어가거나 애가 너무 커서 고등학교 들어가면은 어딘이를 장아주는 것이 부모잖아. 할아버지 딸 안 들고 하니까, 엄마 아빠가 타서 지켜줘야 하니까 어렸을 때 갔다가 급방 돈 벌러 타야지. (보모 1)

여기에서 우리 학부모가 시집으로 갔는데, 여기 국적 다 있고 했는데 연년생 낳고 하니까 거기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여기 타러다니 있는데 애를 보내서 우리 유치원에서 교육 받고. 육아비가 여기보다 엄청 비싸기 때문에 자기 거기에서 돈 벌어서 여기에서 보내서 생활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돈 벌어서 거기에서 애 둘 다 보내는 게 쉽니까 그렇게 보내는

가정등도 많았어요. (어머니 4)

여기서 돈 벌어서 우리 아이들 잘 크게 해줬음 좋겠는데 그게 점점 안 되고 있어요. 중국 아이들 보면 유세 얼마나 공부에 부모님들이 신경 쓰는지 몰라요. 그러니 여기서 신경을 못써주니 따라가지도 못해요. (유치원 교사 1)

세 번째 '아이 의사 존중 여부'에 대해서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단, 대학 졸업이 아이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71.4%로 가장 높다.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는 아이 의사 존중이 좋다는 의견에 3,000~6,000원 미만인 경우가 71.8%로 가장 높았으며, 3,000원 미만이 62.5%, 6,000원 이상이 50%순으로 나타났다.

〈표 V-3-2〉 아이 의사존중 여부 및 훈육방법

단위: %(명)

구분	아이 의사 존중		훈육방법		계(수)
	부모 판단이 좋음	아이 의사 존중이 좋음	체벌하는 것이 좋음	말로 타이르는 것이 좋음	
전체	34.1	65.9	21.1	78.9	100.0(254)
모학력					
고급중학교 이하	31.6	68.4	15.6	84.4	100.0(96)
중등전문학교+3년제	37.0	63.0	26.8	73.2	100.0(71)
대학 이상	28.6	71.4	25.4	74.6	100.0(63)
X ² (df)	1.15(2)		3.65(2)		
가구 소득					
3000원 미만	37.5	62.5	12.5	87.5	100.0(32)
6000원 미만	28.2	71.8	19.8	80.2	100.0(86)
6000원 이상	50.0	50.0	36.4	63.6	100.0(55)
X ² (df)	6.86(2)*		7.83(2)*		

주: * p<.05

네 번째로 '훈육방법'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말로 타이르는 것이 좋다는 의견에 상대적으로 학력이 낮은 고급중학교 이하가 84.4%로 가장 높았고,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는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말로 타이르는 것

이 좋다는 의견이 높은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말로 타이르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3,000원 미만인 87.5%, 6,000원 미만인 80.2%, 6,000원 이상이 63.6%이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보수적 경향이 있음을 나타냈다.

다섯 번째, ‘아이 능력 계발’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학력이나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일관성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V-3-3〉 아이 능력 계발

구분	단위: %(명)		
	선천적 결정	후천적 향상 가능	계
전체	4.9	95.1	100.0(245)
모학력			
고급중학교 이하	4.2	95.8	100.0(95)
중등전문학교+3년제	2.7	97.3	100.0(73)
대학	9.5	90.5	100.0(63)
가구 소득			
3000원 미만	-	100.0	100.0(32)
6000원 미만	7.1	92.9	100.0(85)
6000원 이상	3.6	96.4	100.0(56)

2. 자녀 양육시 정서

자녀 양육시 정서는 7개 문항으로 조사하였다.

먼저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신도 성장’한다는 정서에 90% 정도가 그렇다는 쪽으로 응답했으며, ‘행복하다’는 정서에도 95% 정도가 그렇다고 대답해서 대다수가 자녀 양육시 느끼는 정서가 긍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표 V-3-4 참조).

사실 중국 거주 동포도 집에서는 거의 한국말을 사용하고 TV로도 한국 방송을 많이 보기 때문에 아이들은 국적을 떠나서 한국이 자신의 나라인 줄 알 정도로 한국 문화나 정서를 가깝게 느끼고 있다. 그러나 많은 부모들은 이러한 정서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자라면서 느껴야 하는 혼란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한국이 가깝게 느껴지는. 언젠가 아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니까. 우리 문화에 대한 이때까지는 한국 환경적으로 볼 때, 이 문화를 우리가 이끌어 갈 수 있겠냐 하는 게 의문스럽습니다. (중략) 이렇게 타 가지고 조선말 하고 한국말 하고 이럴 때는 ‘나는 한국사람이다’ 라고 얘기가 되는데, 자부심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외부 환경이 우리 애들이 민족 문화에 대해서 크게.. 그죠? 크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어머니 3)

〈표 V-3-4〉 자녀 양육시 느끼는 정서

단위: %(명)

구분	전혀 아님	아님	약간 그러함	매우 그러함	계	평균(표준편차)
자신도 성장	2.9	6.5	40.0	50.6	100.0(245)	3.38(0.73)
행복하다	4.5	0.4	14.2	80.9	100.0(246)	3.71(0.69)
양육방법 혼란	13.2	21.8	54.7	10.3	100.0(243)	2.62(0.84)
귀찮고 짜증스러움	27.0	37.3	31.6	4.1	100.0(244)	2.12(0.85)
참고 산다	29.5	31.1	29.9	9.5	100.0(241)	2.19(0.97)
화풀이 하고 싶음	37.7	25.9	32.6	3.8	100.0(239)	2.02(0.92)
아이 미래 걱정됨	7.4	18.0	49.6	25.0	100.0(244)	2.92(0.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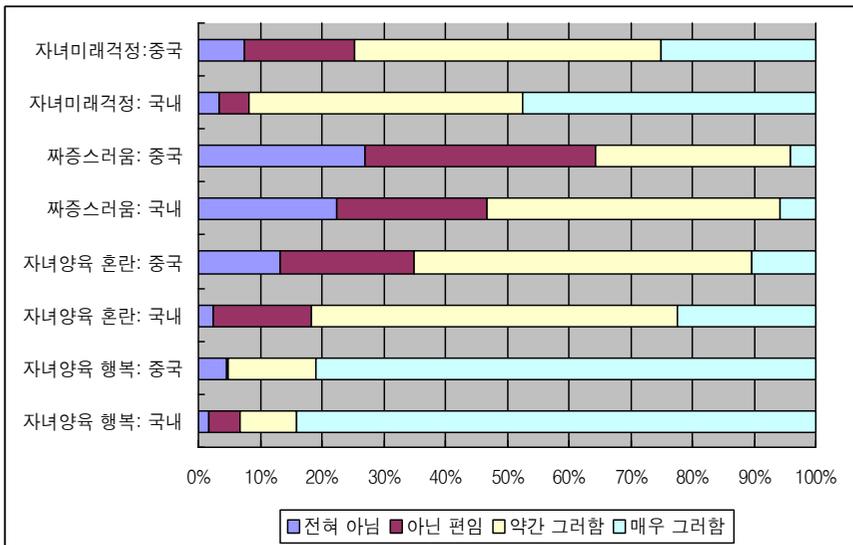
자녀 양육이 ‘귀찮고 짜증스러움’에 대해 65%정도가 그렇지 않은 쪽으로 대답했다. ‘아이 미래 걱정’에 대해 75%정도가 그렇다는 쪽으로 대답했다.

그러니까 가서 아빠를 만나고 유학하고 오고. 거기에서 살자 그렇게는 못 하죠. 그리고 아빠도 거기에 돈 벌고 갔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쭉 나아져서 유학 같은 거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크면 유학을 보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가서 교육시키고 그런 거는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커서 유학가면 자기들이 아르바이트 해서 돈도 벌 수 있고 자립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모 1)

저는 원래 조선족이니까 그런 거죠. 중국말을 많이 배웠어요. 보내고 그렇게 보내 때에도 생각했었어요. 우리 애가 좋은 대학교로 갈까. 좋은 대학교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 사회에 들어올 때도 괜찮으니까요. (아버지 1)

이러한 정서 응답은 제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신의 성장이나 행복 정도는 국내거주 중국동포의 자녀 양육시 느끼는 정서와 유사한 수준이다. 그러나 양육방법 혼란, 자녀 미래 걱정, 자녀 양육시 짜증 등은 중국 거주 조선족이 국내 거주 조선족에 비하여 부정적 비율이 낮다.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동포보다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동포가 자녀미래에 대해 더 걱정하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그림 V-3-2 참조).

[그림 V-3-2] 자녀 양육 시 정서 비교



그러나 이러한 비교는 해석상 주의를 요한다. 중국 거주 조선족의 자녀 양육 정서나 만족도가 비교적 긍정적이고 높은 것은 중국 조사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비교적 높다는 응답자 특성 요인에서 기인하는 바도 있는 것으로 유추되기 때문이다.

3. 만족도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 매우 불만족과 별로 만족하지 않음이 2.8%로 97%이상이 만족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자녀성장에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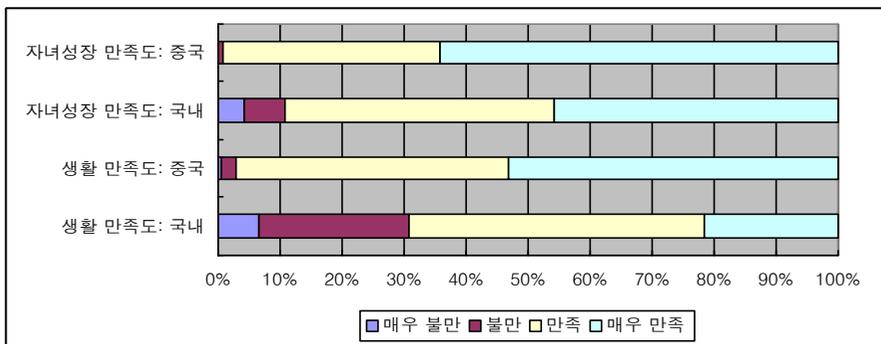
만족도에서 불만족하는 쪽이 0.8%, 만족하는 쪽이 99% 이상으로 대부분 자녀성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만족하는 경향이 있었다(표 V-3-5 참조).

〈표 V-3-5〉 현재생활 및 자녀양육 만족도

구분	단위: %(명)				계(수)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생활만족도	53.2	44.0	2.4	0.4	100.0(250)
성장만족도	64.1	35.1	0.8	-	100.0(248)

반면 국내 거주 중국동포인 경우 현재 생활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이 69%정도로 이들과 비교하여 중국 거주 조선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⁴⁷⁾ 또한 자녀성장에 대해 불만족 비율도 국내거주 조선족은 11%로, 이 역시 상대적으로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동포가 자녀성장에 대해 더 만족한다(그림 V-3-3 참조). 그러나 앞서의 다른 항목 비교와 마찬가지로 응답자 대표성의 차이 등으로 직접 비교는 주의를 요한다.

〔그림 V-3-3〕 생활 및 자녀양육 만족도 비교



47) 중국 거주 조선족의 만족도가 비교적 긍정적이고 높은 것 역시 중국 조사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비교적 높다는 응답자 특성 요인에서 기인하는 바도 있는 것으로 유추됨.

제4절 유아교육 실태

1. 유아교육

가. 조선족 유치원 개요

중국동포 설문조사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을 중심으로 실시되었으므로 대다수의 조사대상 가구의 영유아는 조선족 유치원이나 조선족 및 한족 연합 유치원이나 탁아소에 다녔고 이외 기관 이용은 소수에 불과하였다(표 V-4-1 참조).

〈표 V-4-1〉 조사대상자가 현재 다니는 기관

단위: %(명)

구분	조선족 유치원	조선족 탁아소	한족 유치원	조선족 한족연합 유치원탁아소	없음	계(수)
전체	77.6	0.4	1.2	16.1	4.7	100.0(254)

과거에는 조선어를 하나의 자산으로써 인식하고 언어를 잃으면 민족을 잃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조선어 사용을 문화민족의 긍지로 받아들여 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러한 인식에 변화가 다소 변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조선족 유치원 상당수가 문을 닫고 줄어들고 있다. 부모들은 조선족이라는 중국내 소수 민족임은 선택의 여지가 없으나 중국이 빠른 속도로 경제 국가로 부상하면서 명분보다는 현실을 선택을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윤갑정 외(2008)는 이미 이러한 경향을 언급한 바 있는데, 최근에 이러한 추세가 가속화되는 것이 아닌가 사료된다.

유치원 보낼 때 중국유치원을 다녔어요. 막 세살에 보냈고, 거기 2개월 터니까요. 애가 조선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작년에 11월 달에 바꿨어요. 주말에는 영어 배우고 있고, 중국어유치원 갔다가. 조선족 유치원으로 왔다가, 초등학교는 중국 소학교로. (어머니 4)

그러나 조선족 유치원 이용 부모는 조선어를 잃어버리지 않고 동시에 한어를 잘 하는 이중언어 구사능력 함양을 위해서 영유아기에는 조선족 유치원을 선택하는 경향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생각해볼 중국인으로 살아가는 게 맞지만 그대도 자기 인종을 잊진 않아야죠. 그리고 한 가지 언어를 더 앞으로 아이들의 취업도 더 좋아요. 여기 연변대학교 학생들을 보면 한족아이들보다 조선족아이들이 영어도 알고 한국말도 알고 중국어를 아니까 취업률이 더 나아요. (어머니 2)

몇 년 전 말해도 우리 조선족아이들이 한족학교를 많이 몰랐어요. 앞으로 사회 나가면 한족 말도 잘 해야 하고 중국어도 더 잘 해야 한대해서 한족 학교를 몰리고 그게 낫다 했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어머니 3)

조선족 유치원은 한국 관련 책자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다. 방문한 대부분의 조선족 유치원은 한국 기관과 협력하고 지원을 받는 사례가 있었으나, 일부는 현재도 한국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으나 일부는 몇 년간 지원을 하다가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나 교사는 한국 유치원 시설 설비나 교재·교구 등의 우수함을 잘 알고 있고, 자신의 자녀들이 한국아이들처럼 활발하고 언어 구사 등 자기표현을 잘하는 자녀로 교육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나) 비용

중국 조선족 이용 유치원의 특성은 유치원간 비용의 격차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정부의 비용에 대한 규제나 부모 부담 지원은 거의 없다.

조사대상자들은 유치원 등 기관을 이용할 경우의 비용은 편차가 매우 커서 중국화폐로 월 200원 미만을 낸다는 비율이 8%인 반면에 14.7%는 월 1,000원 이상을 내고 있었다(표 V-4-2 참조).

〈표 V-4-2〉 가구소득별 월평균 유치원 교육비: 부모조사

단위: %(명)

구분	200원 미만	200~400원 미만	400~600원 미만	600~1,000원 미만	1,000원 이상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8.0	43.0	27.2	7.6	14.7	100.0(177)	3.10(1.13)
3,000원 미만	12.9	32.3	9.7	41.9	3.2	100.0(31)	2.90(1.19)
6,000원 미만	3.7	38.3	32.1	19.8	6.2	100.0(81)	2.86(0.98)
6,000원 이상	-	23.6	16.4	36.4	23.6	100.0(55)	3.60(1.09)

이러한 비용의 격차는 유치원 설치 및 운영 유형과는 무관하게 시설설비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V-4-3 참조). 월 1,000원의 학비를 받는 한 유치원의 사례를 보면, 공립유치원으로 유치원비를 정부가 받고 원장 및 교사 급여와 운영비를 정부로부터 배정받아서 사용하고 있었다. 시설설비는 단독 건물에 1~3층을 교실로 사용하고 4층은 특별활동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⁴⁸⁾, 교재교구는 매우 풍부하였다. 원장은 이만한 설비를 갖춘 유치원이면 중국화폐 월 1,000원은 충분히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표 V-4-3〉 연변·심양 소재 조선족 유치원 사례

구분	Y대학 부속유치원	D시 조선족유치원	S시 조선족유치원	S시 조선족 소학교 학전반
설립시기(년)	1964	1996	1952	1920
교직원수(명)	26	22	34	-
재원아수(명)	257	150	200	-
학급수(개)	-	6개	7개	2개
비고	- 1982년에 탁아소에 서 명칭 변경 - 조선족 약 50%	- 탁아반 1개, 소반(3~4세) 1개, 중반(4~5세) 2개, 대반(5~취학전) 2개		
설비수준	미흡	보통	우수	보통
교육비	300원	200원	1,000원	120원

48) 중국에서도 유치원 설비 규정 상 3층 이상을 교실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음.

다. 이용자 만족도

중국 유치원 등 기관 이용 만족도 등은 시설 양호성, 교사 수준, 프로그램 다양성, 유치원 간 균질성 등 4가지 문항으로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교사 수준 만족도가 가장 높고 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교사 수준이 높은가에는 매우 그렇다는 비율이 59.8%로 가장 높고 6.1%만이 부정적으로 응답하였고, 시설 수준이 양호한가 하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는 비율이 40.0%로 가장 낮고 22.9%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여서 시설·설비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4점 척도로는 각각 3.51점, 3.13점이었다. 이외 프로그램 다양성이나 유치원간의 격차에 대해서는 부정적 응답이 10%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비교적 긍정적 평가 정도가 높다(표 V-4-4 참조).

〈표 V-4-4〉 중국 내 육아지원기관 평가

구분	단위: %(명)				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1.6	15.3	52.8	30.2	100.0(248)	3.37(0.61)
시설 양호함	3.3	19.6	37.1	40.0	100.0(245)	3.13(0.84)
교사 수준 높음	2.0	4.1	34.1	59.8	100.0(246)	3.51(0.67)
프로그램 다양함	2.5	9.9	34.3	53.3	100.0(242)	3.38(0.76)
유치원간 차이 없음	4.4	6.5	24.2	64.9	100.0(248)	3.49(0.80)

가구소득에 따른 평가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유치원 교육비에 따른 차이는 시설 양호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사후검증 결과 월 유치원 학비가 중국화폐로 1,000원 이상인 경우와 그 미만인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하였고 1,000원 미만인 집단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표 V-4-5 참조).

〈표 V-4-5〉 비용부담별 중국 내 육아지원기관 평가 점수

단위: %(명)

구분	시설양호합	교사수준	프로그램	유치원간 차이
전체	3.13(0.84)	3.51(0.67)	3.38(0.76)	3.49(0.80)
가구소득				
3,000원 미만	3.03(0.85)	3.58(0.50)	3.48(0.67)	3.61(0.61)
3,000~6,000원 미만	3.04(0.88)	3.58(0.68)	3.41(0.82)	3.57(0.76)
6,000원 이상	3.28(0.91)	3.64(0.56)	3.61(0.57)	3.61(0.71)
F	1.46	0.19	1.23	0.07
유치원 교육비				
200원 미만	2.93(0.82)	3.86(0.36)	3.36(0.84)	3.71(0.61)
200~400원 미만	3.11(0.78)	3.55(0.58)	3.31(0.68)	3.41(0.82)
400~600원 미만	3.02(1.00)	3.49(0.75)	3.45(0.78)	3.63(0.79)
600~1,000원 미만	3.14(0.80)	3.37(0.77)	3.39(0.83)	3.46(0.89)
1,000원 이상	3.60(0.58)	3.56(0.65)	3.56(0.65)	3.48(0.65)
F	2.48*	1.78	0.62	0.79

주: * p<.05.

그러므로 대다수의 유치원 관계자나 부모들은 유치원의 설비나 프로그램들에 대하여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조기교육 같은 게 정말 중요한 건데. 저희들이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시설이 조금씩 더 좋아지고 시설도 좋고, 놀이감 교재 같은 게 조금씩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어머니 3)

2. 사교육 실태

중국도 학업 경쟁이 치열하다. 자녀의 우수한 대학 입학에 갈망하고, 고등학교에 서열이 있어서, 서로 좋은 고등학교에 보내려고 애를 쓴다. 이러한 경쟁은 영유아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조기교육을 시키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조사 아동의 73.3%가 사교육을 받는다고 응답하였는데, 사교육 이용

자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 종류도 많아지는 경향이다(표 V-4-6 참조).

〈표 V-4-6〉 가구소득별 3세 이상아 사교육 종류 수

단위: %(명)

구분	1종	2종	3종	4종	계(수)
전체	58.6	34.3	5.7	1.4	100.0(70)
3000원 미만	80.0	20.0	-	-	100.0(46)
3000~6000원 미만	54.5	31.8	13.6	-	100.0(22)
6000원 이상	52.6	42.1	5.3	-	100.0(19)

중국동포 영유아들이 주로 받는 사교육 내용은 영어(언어), 피아노 등 악기, 미술, 무용, 체육, 속셈, 주산 등이 보편적이었다. 특히 중국에서는 언어교육을 매우 강조하였다. 조선족 유치원에서도 조선어와 한족어를 함께 배우도록 권장하며, 앞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영어를 교과목에 포함하고 있다.

사교육을 많이 시키는 경우에는 토티, 잉이 없는. 피아노 갔다가 성악하는 데 보냈다가. 또 어디로 보냈다가. (어머니 3)

미술은.. 한 달에 150원 정도. 영어 학원은.. 한 200원 정도죠. 지금도 미술 교육을 계속 받고 있고요. 지금 끝이 아니고 시작이니까 계속 받아야지요. 잘 하고 있어요. 영어교육도 잘 하고 있어요. 토티잉하고 잉잉 잉 주깍에 가서 영어를 따르 배우고요. (아버지 1)

중국거주 동포의 영유아 자녀 사교육 시 비용은 200원 미만이 33.3%, 200~400만원 미만이 34.9%이고 이외 약 1/3은 40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평균은 230원 수준이다. 사교육 비용도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지출하는 비용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표 V-4-7 참조).

〈표 V-4-7〉 가구소득별 사교육 월평균 비용

단위: %(명)

구분	200원 미만	400원 미만	600원 미만	800원 미만	1,000원 미만	1,000원 이상	계(수)	평균(표준편차)
전체	33.3	34.9	14.3	9.6	1.6	6.4	100.0(63)	2.30(1.39)
3,000원 미만	60.0	40.0	-	-	-	-	100.0(5)	1.40(0.54)
6,000원 미만	42.9	23.8	14.3	14.3	-	4.8	100.0(21)	2.19(1.40)
6,000원 이상	16.7	38.9	11.1	16.7	5.6	11.1	100.0(18)	2.38(1.48)

제5절 시사점

중국 조선족 중의 상당수가 근로자로 한국 등 외국에 일하러 나가기 때문에 영유아 등 자녀는 실제로 한 부모가 돌보거나 아니면 조부모, 친인척이 돌보고 이도 안 되면 보모를 고용하여 아이의 양육을 맡기게 된다. 조선족 부모는 대체로 자녀가 초등학교 4학년을 기점으로 그때까지는 자녀와 떨어져서 돈을 벌어서 자녀가 공부할 때가 되면 함께 살면서 뒷바라지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녀와의 장기간 별거는 경제적 풍요를 가져올 수는 있겠으나 부모와의 애착이 형성되어야 하는 시기에 자녀와의 접촉 및 관심 부족은 아동에게 직접 또는 가족 문제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정서발달 등 아동이 성장이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는 학업 성취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 국적 동포 가족이나 아동을 대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원이나 정책은 매우 제한적이다. 정부보다 민간 차원에서 지원하여야 하며, 중국에 거주하는 동포보다는 자녀를 중국에 두고 국내에 와 있는 취업 동포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즉,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자녀를 중국에 두고 있는 취업 동포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하여 부모 자녀와의 관계나 부모의 역할 등은 교육함으로써 떨어져 있어도 부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편 조선족 영유아가 이용하는 조선족 유치원은 개별 유치원간의 격차가 매우 크지만, 시설 설비, 프로그램이나 교재교구 등 전반적 교육 환경이 그리 우수한 편은 아니다. 자치주 정부에서는 정책적·제도적으로 유치원에서 소수민족(조선족) 특색을 가르치는 것을 허용하여 보호하고 있기는 하지만 동화수단으로 한족의 소수민족 자치지역으로의 이주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온 만큼, 외교 마찰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보다는 민간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동이나 가족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아동이 이용하는 유치원을 통하여 지원하는 방향으로 간접적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조선족 유치원들은 한국의 민간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개별적으로 지원을 받았으며 또 일부는 현재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들이 일부 지속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몇 년 후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

제6장 정책 건의

제1절 정책 건의의 타당성

현재 중국 동포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은 전무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논하고자 한다.

첫째, 아동권리 보장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방문 취업, 친인척 초청 등으로 중국 조선족의 국내 취업 기회가 확대되어 많은 중국 동포가 혼자 또는 부부가 한국에 장기 체류하게 되었다. 기혼자들은 대부분 한국에 입국할 때 자녀들을 중국에 두고 온다. 그러나 장기체류하게 되면서 한국에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또 한국에서 결혼하여 출산하고 가정을 꾸리는 동포가 생겨났다. 이러한 취업을 위한 국제적 이동 속에서 아동의 권리 보장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중국동포 자녀는 대부분의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자녀 양육 환경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에 충분하게 조성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아동의 권리보장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특히 중국동포 중 일부는 불법체류 상태이므로 한국에서 태어난 아동 중 일부는 미등록 상태이다. 국제아동권리협약은 당사국에게 아동의 국적과 상관없이 거주하는 해당국에게 권리 보장 의무를 부

여하고 있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도 당사국에 거주 아동의 권리보장을 의무화하고 있다.

기혼자들은 대부분 한국에 입국할 때 자녀들을 중국에 두고 오는데, 부, 모 또는 부모 모두와 분리되어 중국에 남는 아동은 발달적 측면과 학습, 생활지도의 측면 등 다방면에서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동포 가정이나 부모와 떨어져 살고 있는 중국동포 자녀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국에서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중국동포에게는 어느 정도 자녀 양육을 위한 국가적 지원이 가능하며,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중국에 자녀를 두고 온 중국동포에 대해서도 이들이 비록 떨어져서도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 인적 자원 개발 차원의 접근이다. 국내거주 중국동포는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중국어 구사력 및 중국에서의 생활기반을 잃음과 동시에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된다. 특히 한국에서 자녀를 출생하여 키우는 중국동포들은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계속 한국에서 교육시키기를 희망하여 이들의 자녀는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보다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한국 사람으로서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 사실 한국에서 출생한 중국 동포 자녀는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배우고 자라며, 중국 언어는 따로 가르치지 않으면 잘 구사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들 가정에 대한 양육 지원은 외국인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라기보다는 잠재적 한국인에 대한 지원이 된다. 영유아기부터 성장한 동포가정의 영유아를 사실상 한국인으로 받아들인다는 원칙적 전제를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실제 국내 중국동포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한국국적을 취득하므로, 향후 한국인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높은 중국동포의 자녀들에게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여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할 필요성이 높으며, 이는 사회의

안정과 통합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범 민족적 국가역량 결집 측면에서 접근이다. 중국동포들이 한국에서 돈을 벌면서 자녀를 키우고 교육시키기에는 부담스러운 비용이 소요된다. 중국에서 출생한 자녀는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보다 중국에서의 적응이 더 수월하고, 경제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에 기회가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와 분리된 아동이 성장기에 경험하여야 하는 애착과 정서상의 문제, 학업 지원 부족 등의 문제는 아동에게 그 무엇으로도 보상하기 어려운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과 이스라엘의 동포정책은 국가경쟁력 확보의 차원에서 다양한 네트워크 활동의 활성화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며 동포의 인적 역량을 지속적으로 결집시키는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중국동포 정책의 수립도 동포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국가역량결집의 글로벌 지향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2절 국내 조선족 자녀양육 지원 정책 건의

1. 정책 대상과 아동 신분

가. 필요성

국제사회에서 아동의 권리는 범국가적, 범민족적인 보편적인 권리라는 인식이 공고히 자리잡고 있다. 대표적인 국제조약인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4대 기본 가치(general principles)로 ①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②아동의 의견존중의 원칙 ③아동의 생존·보호·발달의 원칙 ④아동차별금지의 원칙 등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에서도 아동(자녀) 관련 조항이 아동권리협약과 사실상 같은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녀의 권리(제29, 30조)로 아주노동자의 자녀는 성명, 출생의 등록 및 국적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당사국의 국민과 평등한 취급에 기초하여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공립의 취학 전 교육시설 또는 학교에서 교육받을 권리는 그 부모의 체류 또는 고용에 관한 비적법 상태 또는 자녀 체류의 비적법성을 이유로 하여 거부 또는 제한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권리를 ‘강력하게’ 보장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이러한 조치를 우리의 법규에서도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다. 우리 헌법에서는 외국인에게는 국가의 안전을 위해 거주·이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 일정부분 제한을 두고 있으나, 대부분의 자유권은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라는 점에서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도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적용받을 권리가 있다. 재한 외국인의 처우를 좀 더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서도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재한외국인과 그 자녀의 차별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적 근거에 따라,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동포 자녀들은 인권적·기본적 차원에서 차별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나. 정책건의

앞서 고찰한 국제협약과 국내법의 내용을 토대로 생각해볼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단기와 중·장기 정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모든 아동은 성·인종·언어·종교 또는 정치적·민족적·종족적·경제적 지위 등 어떠한 구별없이 인간으로서의 기본 권리를 존중받고 보장받아야 한다는 보편적인 가치와 이를 규정하고 있는 국제협약과 국내법에 근거하여 국내 불법체류자의 자녀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교육이나 건강 관련 정책대상으로 인지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에서 출생한 동포의 자녀에게는 부모의 국적과는 상관없이 원할 경우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하여 다른 한국인들과 다름없이 지원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혈통주의의 탄력적 적용도 고려할 수 있다.

2. 교육 및 보육 기회 확대

가. 필요성

설문조사 결과 국내거주 중국동포 가정은 한국의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등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만족도가 높음에도 이용률이 한국 아동보다는 훨씬 낮았다. 이는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들 기관의 이용비용은 가계 경제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이며, 또한 기관 이용을 위한 정보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취학연령이 되어서 상급학교로 진학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록 2001년도에 개정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19조 1항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국내 학교 입학 기회가 법적으로 보장받게 되었으나, 현실적으로 입학 후 '졸업'과 관련해 학교들이 대응하는 방식은 지역별, 학교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졸업장 수여 여부 등 일반 학교생활과 관련한 규정이 없고, 중학교의 경우는 입학도 '학칙'에 의거하도록 되어 있어 학교가 허용하지 않으면 입학도 불가능하여 중

국동포 자녀와 같은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들의 교육 기회는 매우 한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의무교육 과정인 중학교에 취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초등학교 입학절차를 그대로 준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이러한 문제는 점차 개선될 것이다.

그런데, 본 조사에 응한 중국동포 가정 영유아는 한국에서 출생한 경우가 80%를 넘으며 모국어인 중국어를 하는 경우도 많지 않았다. 이는 국내 거주 중국동포들이 그들 자녀들이 계속 한국에서 성장하고 교육받기를 위하여 중국어를 굳이 가르치려는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국인임을 자녀에게 숨기고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이미 자녀를 한국에서 양육하고 본인들도 한국에서 정착하여 살기로 마음을 먹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본인들보다도 자녀에 대해서는 더욱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에서 교육받고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열이 높은 중국동포들이 한국의 교육 환경을 높게 평가하고 있고, 뿌리가 한국에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현재 국내에서 거주하는 중국동포 가정의 자녀들은 향후 중국인으로서는 보다는 한국인으로서는 정체성을 가지고 자라날 가능성이 크며, 이들이 비록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한국에서의 양육 및 교육 경험은 이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과 한국인과의 화합 등 개인적 차원을 넘어선 국제적·사회적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중국동포 자녀들에 대해서 아동권리적 차원·인도적 차원에서의 교육·보육 지원 뿐 아니라 이들이 미래의 잠재적 한국인이거나 한국에 우호적인 우리 동포 외국인일 수 있음을 고려한 접근이 고려되어야 한다.

나. 정책건의

이에 따라 중국동포 자녀의 교육·보육에 대한 지원은 다음과 같이 이들의 신분상의 차이에 따른 단기적·중·장기적 접근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현재 한국국적이 없는 중국동포 자녀에게 주어질 수 있는 '아동권리적 차원'에서의 접근이다. 이는 아동의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할 때의 비용을 일부분 지원하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 교육기관 이용은 조기에 한글과 한국 문화를 접하게 하므로 장기적으로 언어적, 문화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있으므로 그 중요성이 있다. 이와 함께 상급학교 진학 등 공식적인 학사과정 이수를 위해서 부모의 불법체류 신분으로 인하여 주민번호가 없는 동포가정 자녀에게 단기적으로 주민번호에 준하는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것도 고려할만한 사항이다. 최소한 공식적 교육은 보장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도 효율적일 것으로 보인다.

둘째, 중기적 정책방안으로서 한국국적이 아닌 '영주권'만을 취득한 경우에도 한국인과 동일한 교육적 지원의 제공을 생각할 수 있다. 즉, 영유아기의 유치원·보육시설 이용비용을 한국인과 같은 수준에서 지원하며, 상급학교 진학 시에도 한국민과 동일하거나 한국인에 준하는 권리와 지원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부모의 '영주권' 취득과 상관없이 입학과 졸업, 혹은 수료 등이 공식적인 학사과정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법적 구속력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러한 사항이 모든 초·중등 학교장과 교사에 정확히 전달되어 진학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비록 외국인에게 국가 예산을 지출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중국동포의 자녀가 한국에서 성장하며 지원받은 경험과 양질의 교육은 한국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을 심어주어 장기적으로는 국가이

미지와 경쟁력, 중국과의 관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중국에서 출생하여 입국한 중국동포의 자녀들에 대한 지속적인 단기적·중·장기적 교육·보육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들이 부모를 따라 한국에 중도 입국한 경우 한국어와 한국 문화 등에의 적응에서 어려움을 겪고 학교생활에서도 따돌림과 학습 부진 등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 한국 문화 교육 프로그램, 부모교육 프로그램,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정부적 차원에서 마련하고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또는 공공기관을 통해 보급하여 이들의 적응을 도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인과의 결혼을 통해 이루어지는 다문화가정뿐 아니라 순수 외국국적 가정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포용하는 진정한 '다문화 교육'이 한국아동과 학생들에게도 보급·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3. 의료 지원 방안

가. 필요성

아동권리협약 제24조 제1항은 아동은 무차별의 원칙에 따라 건강과 복지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당사국은 어떠한 아동도 건강관리 지원의 이용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두 가지 점에서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는 건강보험 미가입과 높은 의료비 부담이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로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자격에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F-4), 영주(F-5), 방문취업(H-2)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결과 응답자중 약 30%

가 건강보험 미가입자이고 특히 자녀들도 1/3이 의료보험 미가입자이다. 이들 미가입자는 '월납입액이 비싸서'라는 경제적 비용부담의 응답이 63% 정도이고 나머지는 '가입대상이 아니다'라는 응답이 많아서 체류신분상의 이유로 합법적인 가입대상에 속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자녀를 기르는 부모들은 자녀 의료비 부담이 무겁다. 실제로 부모들이 자녀를 기르면서 겪는 어려움 중 병원비를 지정한 비율이 12%이다. 영유아 자녀가 아플 때 의료 및 진료 서비스 이용의 충분함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서도 전체적으로는 충분하다는 의견이 81.3%로 높았으나 건강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가입자는 4점 평균 3.43점, 비가입가정은 2.78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두 번째는 무료 예방접종 정책과 같은 기본적 영유아 건강 지원정책에 모든 아동에게 차별 없는 적용이 부족하다. 영유아 자녀에 대한 예방접종 이용의 충분함에 대해 조사한 결과, 중국 동포는 전체적으로는 10.8%가 불충분하다는 응답을 하였다.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유행시에 예방접종 대상으로 일반 아동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후 순위로 밀렸던 경험도 중국 동포에게는 차별에 의한 소외감을 주었다. 어린이집 등 아동이 모여 하루 종일 함께 생활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염성 질환 예방접종 시 일부 아동을 국적 등 체류 신분 차이를 이유로 제외한다는 것은 국내 아동 보호 차원에서도 합리성이 낮다고 하겠다.

나. 정책 건의

단기적으로는 첫째, 국가 영유아 예방접종이나 전염성 질환 예방 정책 대상에 한국에 거주하는 모든 영유아가 포함되도록 하여, 외국 국적자나 무국적자 등이 국적과 무관하게 한국 자녀와 동일한 질병 예방 서비스를

받도록 한다. 이는 법이나 제도의 개선 없이도 정책적 결정만으로도 가능하다.

다음은 동포가정 영유아 자녀의 건강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고, 아울러 체류신분으로 인해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비제도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유아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우선은 민간에서 추진하는 공제제도 등 외국인을 위한 의료관련 지원 활동을 적극 안내하여 이를 활용하여 영유아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수혜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중장기적으로는 영유아에 한해서 만이라도 국적과 관계없이 의료보호 등의 대상으로 포함하여 아동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방안 강구를 검토하여야 한다.

4. 부모 정보, 상담 등 육아 지원 방안

가. 필요성

영유아 자녀를 기르는 모든 가정은 국가와 지역 사회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 더욱이 한국에서의 적응과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안고 있는 중국동포가정의 영유아 부모에 대한 육아 지원은 국가적 이익을 논의하기에 앞서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할 사회 안전망이다. 이는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을 피하는 우리 사회에서 미래 한국인 인적자원 육성 측면에서도 국가적 이익을 수반하는 정책이기도 하다.

본 연구의 조사는 지금까지의 중국동포가정에 대한 지원이 주로 전자의 영유아 아동에 대한 보육·교육 서비스의 제공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이루어져왔음을 보여주었다. 보호·돌봄, 영양, 의료, 예방접종, 교육 등 5개 영역에 대한 서비스 제공의 충분성에 대한 조사 결과, 평균 3.0(보통)

이상의 응답을 보였으며, 면접조사를 통해서도 보육기관에 다니고 있는 동포가정 영유아의 성장과 교육, 적응이 양호하고, 이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 또한 매우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보육·교육기관을 알게 된 경로는 ‘우연히’, 그리고 ‘집근처에 있어서’라는 응답이 많아 관련 정보제공의 체계가 정비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양육정보 및 상담의 제공에 대한 충분도 4점 평가에서도 평균 2점 미만인 불충분으로 응답되어 부모대상 육아지원 서비스의 부재를 보여준다. 따라서 보육·교육 서비스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가정과 그렇지 못한 가정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우선적 조치로 이러한 보육·교육서비스 제공에 대한 알림서비스의 강화와 상시화가 요구된다.

또한 중국에서와 같은 확대가족의 양육 지지 기반 부족, 보육·교육기관 서비스에 대한 정보 부재, 과반수 이상의 맞벌이 가정 등의 국내 중국동포 영유아 가정의 현황을 고려할 때, 자녀양육 정보, 정서적 지지 및 물리적 지원, 상담과 안내, 네트워크 교류 기회의 제공 등은 정책적으로 추구해야할 주요 서비스이다. 특히 영유아기 자녀에 대한 양육부담으로 모의 외부활동의 기회가 제한되고, 신분특성상 지역사회 네트워크와의 교류가 제한적인 중국동포 부모에게 더욱 시급한 과제이다.

나. 정책 건의

단기적으로는 우선, 보육·교육 기관에 다니고 있는 아동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양육에의 안내 및 상담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 관내 부모 교육 및 부모참여의 기회를 통해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의논하고 부모들 간에 멘토링 등의 상호작용을 제공하는 네트워크 교류 서비스가 요구된다. 또한 기관의 안내 게시대를 통해 관련 정책 정보와 상담기관, 영유아기 자녀양육에 대한 안내책자의 제공 등 기관이용을 통한 알림서비스가

상시화 될 필요가 있다.

둘째, 기관 미이용 아동을 고려하여 외국인 등록번호를 신청하거나 부여받는 장소에 그리고 체류신분을 위해 사증 신청을 하는 관공서 등에 안내 데스크를 설치하여 정책홍보책자와 양육정보제공, 상담서비스, 영유아기 자녀 양육에 대한 안내책자를 제공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는 홍보 지원이 요구된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중국동포 부모에 대한 육아 지원의 기본 정책 방향이 한국부모 대상 정책과 달라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는 첫째, 중국동포 부모 대상의 특별한 지원이 아니라, 영유아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받는 보편적 육아지원서비스로의 접근이 요구된다. 즉 국내 부모들에게 제공되는 육아 정보 제공과 상담, 안내 등의 모든 서비스 동일하게 중국동포가정 부모대상의 서비스가 되도록 편입, 확대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둘째, 장기적으로 중국동포가정이 공동체 네트워크를 구성하도록 하여 이를 통한 자발적인 양육 원조 체계, 안내와 상담, 정보제공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5. 전달체계의 거점 마련

가. 필요성

앞서 논의된 중국동포가정에 대한 지원 방안들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전달체계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중국동포가정에의 지원 전달체계가 의료·보건, 교육, 직업교육, 법률 등 영역별로 체계화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공식적·비공식적, 정부·비정부의 전달체계가 해당 지역 내에서 거점형을 중심으로 협력,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

이 요구된다. 이는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증가하고 있는 정책지원과 비용 및 자원 배분의 효율성 면에서도 중요하다.

나. 단 증장기 정책 건의

단기적으로 첫째,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영역에서의 중국동포 지원활동이 자생적으로 성장하여 중국동포가정의 요구와 수요에 적절히 응대할 수 있도록 포용하고 지지하는 입장이 요구된다. 정부 전달체계에 의한 공공서비스 영역의 확대만으로는 당면한 동포가정의 지원과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공재정 및 서비스에의 과도한 의존은 향후 다문화사회 및 재외국민의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안이 아니다. 장기적으로 중요한 것은 제도적 기반 자체가 아니라 사회적 인식과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상호작용과 소통에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의료보험 미가입 가정의 아동이 자원봉사에 의한 의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멘토링 사업을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차원에서 '사회참여 인증제' 등의 시행으로 활성화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중국동포가정에 대한 지원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체계와 함께 수행되도록 하되, 다문화 가족과 중국동포가정은 특성과 요구에 차이가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중국동포가정 지원을 다문화 정책과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하여 장기적으로 안산시와 같이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의 협력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외국인지원센터, 이주민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글로벌 센터 등의 기능을 활용하여 국내 해외동포 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고려하여야 한다. 현재와 같이 여러 부처의 다양한 산하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 정책 수행은 중복투자의 쓸림과 사각지대 방치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상호

연계 시스템의 구성 등의 조정 노력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하겠다.

제3절 중국 조선족 유치원 지원 정책 건의

현재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동포의 가정이나 현재 중국에 떨어져 살고 있는 중국동포의 자녀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어렵다. 그렇지만 민간 차원에서의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민간 차원의 지원임을 전제로 지원 가능한 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1. 필요성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국 조선족 부모들 대부분 자녀를 조선족유치원에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내에서 '중국인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 민족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정서가 아직까지는 지배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중국어를 일찍이 가르치려는 분위기가 점차 커지고 있으며 한족유치원에 보내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조선족이 중국 내에서 적응하며 살아가기 위한 전략이지 조선족이란 민족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정책적·제도적으로 연변조선족 자치주 정부는 유치원에서 소수민족(조선족) 특색을 가르치는 것을 허용하여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이나 가족을 직접 지원할 수 없으므로 아동이 이용하는 조선족유치원을 통한 간접적 지원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조선족 영유아가 이용하는 조선족 유치원의 비용이 월 200원에서 월 1,000원까지 개별 유치원간의 편차가 매우 크며, 시설 설비, 프로그램이나 교재교구 등 전반적 교육 환경이 그리 우수한 편은 아니었다. 부모들도 유치원의 교사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으나 시설·설비에 대한 만족도는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선족 유치원의 고유한 특색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선진적인 한국 유치원의 시설·설비, 프로그램이나 교재·교구 등을 민간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요구도 있다. 실제로 일부 조선족유치원은 한국의 민간기관, 단체로부터 프로그램 지원, 차량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은 적이 있으며 또 일부는 현재도 받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조선족 유치원 요구에 부응하면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2. 정책 건의

가. 유치원에 언어교육 지원

민족교육을 중시하는 조선족 유치원이지만 개방화 사회에서 중국어뿐만 아니라 영어에 대한 수요도 날로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영어를 유치원의 소반부터 가르치고 있으며 연령이 올라갈수록 영어교육시간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영어교육 프로그램은 그다지 다양해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다채로운 영어프로그램이 많이 보급된 우리의 영어프로그램을 중국 조선족유치원에 보급, 지원할 것을 건의한다. 우리말이 함께 병기된 영어프로그램을 교재로 지원하면 조선족 유아들은 영어와 더불어, 우리말도 지속적으로 배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면담조사에서 유치원 원장들은 중국어로 된 영어프로그램보다 한국어로 된 영어프로그램이 훨씬 잘 만들어졌고 유아들도 좋아한다고 하였다.

나.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지원

자치주 정부에서는 정책적·제도적으로 유치원에서 소수민족(조선족) 특색을 가르치는 것을 허용하여 보호하고 있지만 세대가 지나고 사회가 개방됨에 따라 조선민족 고유의 특색은 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 조선족 유치원에서는 교사가 우리말(조선어)로 아동에게 우리말과 글을 가르치며 우리민족의 전설, 민간이야기, 동화, 우화, 태권도, 씨름 등 전래동화와 민속놀이를 가르치고 있다. 이에 중국조선족 유치원교육 과정에 한국전래, 한국전통놀이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된 교재교구 및 도서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약화되고 있는 조선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 강화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할 것이다.

다. 부모 교육 지원

조선족 유치원에서 부모교육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현실적으로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 부모가 돈을 벌기 위해 가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유치원에서 부모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나, 아직까지 부모교육의 중요성이 확산되지 않은 것 같았다. 그러나 부모가 취업을 위해 한국에 갈 가능성이 상존하고, 이러한 경우 대부분은 자녀를 중국에 두게 높다.

따라서 탁아소나 유치원에서 일찍부터 부모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에는 양질의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어 있다. 이를 조선족 유치원과 협의하여 필요한 내용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재조직한다거나 개발하여 보급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소가 2009년도 연변대학교와 공동으로 주최한 국제학술세미나

에서 백미화(2009)는 정기적인 학부모 강좌를 개최하여 학부모들로 하여금 자녀들의 연령 및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여 하루빨리 유아중심적 교육 목적으로 갖게 해야 하며, 또한 젊은 세대 조선족부모들에게 '조선민족의 훌륭한 전통과 문화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조선 민족교육을 발전시키고 계승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라. 유치원 간 자매결연 확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지금까지 제안한 프로그램·교재교구·부모교육 지원의 주체는 한국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보다는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민간차원이라면 한국의 유치원·보육시설과 조선족 유치원 간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현장에서의 교류를 의미한다.

자매결연 기관 간에 상호 교재교구를 교환할 수 있으며 상호방문으로 중국 조선족유치원은 한국의 우수한 육아지원기관의 시설·설비, 프로그램, 교재·교구 등을 견학하고 배우는 기회를 얻게 되고, 우리는 조선족, 더 나아가 중국을 보다 더 잘 알고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민간 기관, 단체간 자매결연이 활성화되기 위해 정부는 지원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김낙순(2003). 한국의 재외동포 정책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구자익 외(2008). 재외동포 교육실태 및 인재육성 방안 연구: 중국 조선민족교육의 실태 및 발전방안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 김익기·이동훈(2007). 중국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정원·이혜영·배은주·허창수(2005). 외국인근로자 자녀 교육복지 실태 분석 연구. 교육개발원.
- 김정원(2006). 외국인 근로자 자녀 교육 문제와 다문화 교육, 국회도서관보, 43(5), 29-39.
- 노충래·홍진주(2006). 이주노동자 자녀의 한국사회 적응실태 연구: 서울경기지역 몽골 출신 이주노동자 자녀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22, 127-159.
- 리화(2009). 건국후 유아교육정책의 발전상황 및 약간의 사고. 다원화사회에서 자녀양육의 방안모색. 유아정책연구소·연변대학교교육연구소 공동주최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 문형진(2008). 한국내 조선족 노동자들의 갈등사례에 관한 연구. 국제지역연구, 12(1), 131-156.
- 박민정·박혜원(2006). 자아개념, 애착, 교사 및 또래관계가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 조선족 및 한족 청소년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4(3), 79-89.

- 박민정·박혜원(2007). 조선족, 화교, 한족 그리고 한국아동의 기질에서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8(1), 129-145.
- 박성혁·곽한영(2009) 다문화교육정책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다문화 교육정책의 방향 모색. 시민교육연구, 41(2), 97-127.
- 백미화(2009). 중국조선족부모의 자녀교육과 양육태도 연구. 다문화사회에서 자녀양육의 방안모색. 육아정책연구소·연변대학교교육연구소 공동주최 국제학술회의자료집.
-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08).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08-2012): 2010년 중앙부처 시행계획.
- 법무부(2010).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 월보 2010.6.30.
- 서문희·김은설·최진·안재진·최혜선·김유경·조애저(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 설동훈·이혜경·조성남(2006).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한국사회학회·여성가족부.
- 설동훈·한건수·이란주(2003). 국내 거주 외국인노동자아동의 인권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안병삼(2009). 초국가적 이동현상에 따른 중국 조선족의 가족해체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제52집, 153-177.
- 안분옥·홍설화(2009). 중국조선족 유아교육의 현황과 실태. 다문화사회에서 자녀양육의 방안모색. 육아정책연구소·연변대학교교육연구소 공동주최 국제학술회의자료집.
- 안화선(2009). 한국 및 중국 조선족 기혼취업여성 생활만족도에 관한 비교연구, 서석 사회과학논총, 2(2), 315-340.
- 여수경(2005). 한국체류 조선족의 갈등과 적응.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연구, 48, 243-277.
- 유길상(2007). 외국인고용허가제 시행 3년에 대한 평가, 한국사회정책, 14(2), 242-279.
- 윤갑정·정계숙(2007). 중국연변 조선족 별거가족과 동거가족 유아의 가족생활 경험. 아동학회지, 28(4), 169-185.
- 윤갑정·고은경·정계숙(2008). 중국 연변 조선족 유아 양육 실제에 나타난 시대성과 민족성 이슈. 아동학회지, 29(5), 31-50.
- 윤진기(200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방안, 경남법학, 24, 47-73.
- 윤혜경·박혜원·권오식(2009). 이중언어능력의 조선족 아동과 청소년의 한글, 한자, 한글·한자혼합문 형태의 덩이글 이해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30(2), 15-28.

- 원영미·박혜원·이귀옥(2004). 유아의 기질과 가정환경 및 유아의 부적응행동 간의 관계: 연변 조선족과 한국 유아의 비교연구. 유아교육연구, 24(2), 311-333.
- 이기숙·정미라·김현정(2008). 한국, 일본, 중국 부모들의 자녀양육에 대한 비교연구. 유아교육연구, 28(3), 151-171
- 이선주·민무숙·신현옥·이태정(2009).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패러다임 구축 III. 한국여성정책연구원·경제인문사회연구원.
- 이시라·박혜원(2005). 중국조선족 아동의 어머니와의 애착이 자아개념, 또래관계 및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3(9), 109-127.
- 이혜경·한경구·전주상·한승준·정연정(2009). 외국인정책 추진실적 평가체계 구축 방안. 법무부 연구용역보고서. (사)한국이민학회.
- 임연신·현은강(2002). 한국과 연변조선족 어머니의 부모역할 만족도 및 양육태도 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0(11), 23-37.
- 전형배(2009). 외국인근로자 고용정책, 저스티스, 109, 290-315.
- 정인섭·박정혜·이철우·이호택(2009). 무국적자 관리 및 체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연구. 법무부 연구용역보고서.
- 조경서·유준호·오승아(2007).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자녀양육과 교육실태, 유아교육학논집, 11(3), 5-25.
- 조복희·이주연(2005). 부모와 별거하는 중국조선족 아동의 생활환경과 적응문제. 아동학회지, 26(4), 231-245.
- 조복희·이주연(2006). 부모와 별거하는 중국 조선족 아동의 양육자에 대한 애착과 적응문제. 아동학회지, 27(4), 247-263.
- 조복희·이주연(2006). 중국 조선족 아동과 한국 화교 아동의 문화적변 유형 및 학교적응 비교연구. 아동학회지, 27(1), 95-111.
- 조복희·이진숙·한세영(2005). 연변 조선족 아동의 가정환경, 내외통제성, 사회적 지지 및 행동문제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3(3), 91-104.
- 조혜영 외(2007).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 국내체류 해외 한민족청소년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천희영 외(2006). 부모별거 초등학생의 별거경험 및 양육요인에 따른 사회·정서적 적응력 연구-연변조선족 아동과 한국아동 비교. 아동학회지, 27(2), 101-126.
- 행정안전부(2010). 2010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결과.

[국외문헌]

연변조선족자치주교육국편(2010), 2008-2009학년도 연변교육통계자료. 188, 195.

吳仕民主編(2006) 『中國民族理論新編』 中央民族大學出版社

Chung, In-Seup, "Korean Accession to Human Rights Conventions",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 국제인권법 워크숍(1998년 9월 17~18일) 발표논문, p.2.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2005), General Recommendation XXX, paras.14-15, 16.

UN Committee on the Right of the Child(2005).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of the convention. Second periodic report of States parties due in 1997

UN Committee on the Right of the Child, Doc. CRC/C/5(1991), General Guidelines Regarding the Form and Content of Initial Reports to be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para 1(a), of the Convention.

[웹사이트]

법제처 <http://www.law.go.kr>

안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http://www.afwc.or.kr>

안산시외국인주민센터 <http://www.iansan.net>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http://www.immigration.go.kr>

부록

부록 1. 국내 중국동포 자녀양육 실태조사 설문지

부록 2. 중국 조선족 자녀양육 실태조사 설문지

부록 1.

지역	일련번호	아동번호

국내 중국동포 자녀양육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www.kicce.re.kr)는 육아정책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소에서는 2010년도 「국내거주 중국동포 영유아 양육지원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중국동포가 한국에서 다양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육아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고 합리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귀하가 작성하신 설문지는 육아지원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서 사용될 것이오니 정확하고 성실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연구외의 다른 용도로는 활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0년 7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조복희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7층, 10층

육아정책연구소 「중국동포 연구팀」

최윤경 부연구위원 ☎ 02)398-7706, FAX 02) 730-3317

e-mail: ykchoi@kicce.re.kr

※ 귀하는 조선족이고 한국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녀의 국적이 중국입니까?

①예 → 설문 계속 ②아니오 → 설문 중단

(부모 중 한 분이 조선족이고, 자녀가 무국적인 경우는 설문 계속)

육 아 정 책 연 구 소

1. 자녀의 가족특성 및 일반적 현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 먼저 가구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합니다.

구분	총가구원 수	총자녀 수	총영유아 수	중국거주 가구원
수, 관계	명	명	명	명 / 자녀와의 관계 _____

1. 귀댁의 자녀 출생순위에 따라 가장 나이 어린 자녀부터 각각 이름과 연령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한국과 중국에 있는 자녀 모두에 대해, 각 자녀별로 해당번호를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1) *막내부터	2)	3)
1) 이 름	년 월	년 월	년 월
2) 생년월일	만 세	만 세	만 세
3) 만 나이 (* 6월 30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4) 성별 ① 남 ② 여			
5) 출생순위 ① 첫째아 ② 둘째아 ③ 셋째아 ④ 넷째아 이상			
6) 아동 현재 건강상태 ① 건강함 ② 질병있음 ③ 장애있음 ④ 장애와 질병 있음			
7) 자녀의 현재 국적 ① 중국국적 ② 무국적 ③ 기타(무엇: _____)			
8) 출생 및 거주 국가 ① 한국에서 출생하여 한국에 거주 ② 한국에서 출생하여 중국에 거주 ③ 중국에서 출생하여 중국에 거주 ④ 중국에서 출생하여 한국에 거주 ⑤ 기타(어느 곳: _____)			
9) (중국에서 출생하여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최초 입국시 자녀의 연령	만 세	만 세	만 세
9-1) 부모 (최초) 입국시 자녀 동반여부 ① 동반입국함 ② 동반입국하지 않음 → 문 9-2), 9-3) ③ 기타(무엇: _____)			
9-2) 부모 (최초) 입국시 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중복응답 가능: 해당번호를 모두 적어주십시오.) ① 자녀가 어려서(환경 변화에 따른 적응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② 한국에 자녀를 키워줄 대리 양육자가 없어서 ③ 중국에 자녀를 키워줄 대리 양육자가 있어서 ④ 사증발급이 안돼서 ⑤ 경제적 부담 때문에 ⑥ 중국에서 교육받는 것이 자녀에게 더 좋을 것 같아서 ⑦ 기타(무엇: _____)			
9-3) 부모 (최초) 입국시 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경우, 자녀를 한국에 데려오기까지 떨어져 지낸 기간은 얼마입니까? (개월로 환산, 비례당 888)	개월	개월	개월
9-4) 자녀가 한국에서 지낸 총 기간은 얼마입니까? (개월로 환산)	개월	개월	개월
10) 현재 (자녀) 부모님의 결혼상태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① 초혼 ② 재혼 ③ 이혼 ④ 별거중 ⑤ 비혼인/동거 ⑥ 사별 ⑦ 기타(무엇: _____)			
11) 자녀의 의료보험 가입여부 ① 가입하였다 ② 가입하지 않았다 ③ 기타(무엇: _____)			
12) 의료보험 외 자녀를 위해 가입한 보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문 12-1) ② 없다 ③ 기타(무엇: _____)			
12-1) (자녀를 위해 의료보험외 가입보험이 있다면)그것은 무엇입니까? 직접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14) 현재는 어떤 종류의 비자로 한국에 머물고 계십니까? ① 방문취업(H-2) ② 단순방문/관광 ③ 취업/고용 ④ 영주권(F-5) ⑤ 재외동포자격(F-4) ⑥ 가족초청 ⑦ (단기)연수 ⑧ 학생 ⑨ 동반가족으로서 ⑩ 결혼이민 ⑪ 무비자 ⑫ 기타(무엇:_____)		
15) 한국에 온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부모의 취업 ② 부모의 학업 ③ 자녀의 학업 ④ 기타(무엇:_____)		
16) 부모님의 한국에서의 총 체류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년 개월	년 개월
17) 부모님의 한국 국적 취득(회복)을 희망하십니까? ① 한국 국적 취득 추진 중 ② 기회가 되면 한국 국적 취득 희망 ③ 한국 국적 취득 희망하지 않음 ④ 잘 모르겠음		
17-1) (국적취득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언제 중국으로 돌아갈 계획입니까? ① 돌아가지 않을 것임 ② 1-2년 내에 돌아갈 것임 ③ 3~5년 내에 돌아갈 것임 ④ 5년 이후에 돌아갈 것임 ⑤ 잘 모름		
18) 부모님께서서는 자녀의 한국 국적 취득(회복)을 희망하십니까? ① 한국 국적 취득 추진 중 ② 기회가 되면 한국 국적 취득 희망 ③ 한국 국적 취득 희망하지 않음 ④ 잘 모르겠음		
18-1) (자녀의 국적취득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9) 부모님의 의료보험 가입여부 ① 가입하였다 ② 가입하지 않았다 ③ 기타(무엇:_____)		
19-1) (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종류는 무엇이며 매월 얼마를 지불하십니까?	종류: 월납입액수:	
19-2)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가입 대상이 아님 ② 월 납입액이 비싸서 ③ 한국 의료보험에 관한 정보가 없어서 ④ 기타(무엇:_____)		
20) 의료보험 외 가입한 (사회)보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있는대로 표시해 주세요 ① 연금보험 ② 산재보험 ③ 고용보험 ④ 기타:		

※ 조사원은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기록합니다

3. 배우자와 동거 여부 ① 배우자와 한국에서 같이 지냄 ② 배우자가 한국에 있으나 함께 안 지냄 ③ 배우자는 중국에 있음 ④ 배우자 없음 ⑤ 기타	4. 자녀 거주 국가 ① 자녀가 모두 한국에 있음 ② 자녀 중 일부는 한국에 있고 일부는 중국에 있음	5. 한국 거주 자녀 동거여부 ① 자녀 모두와 함께 살고 있음 ② 자녀 일부가 따로 살고 있음 ③ 자녀 모두와 따로 지냄
---	--	--

6. 귀하의 현재 (한국에서의) 가족형태는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① 부부와 자녀 ② 한부모와 자녀 ③ 3세대 이상 ④ 기타(무엇:_____)

7. 현재 귀하의 가족이 직면한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두 가지를 꼽는다면 무엇입니까?

(※어려움이 없는 경우는 9번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가장 어려운 점
1) 경제적 어려움	2) 자녀 양육의 어려움	3) 자녀 교육의 어려움	1순위: _____ 2순위: _____
4) 가족간의 이별	5) 가족간의 갈등	6) 실직의 두려움	
7) 국적 취득의 어려움	8) 기타:()		
9) 특별히 없음			

III. 자녀양육 방식과 가치관에 관한 질문입니다.

8. 다음은 자녀양육관에 대한 문항입니다. 각 구분에서 제시된 두 보기 중 본인이 생각하는 바와 더욱 일치하는 것 하나를 선택해주시시오.

구 분	보 기
1) 육아와 나의 인생의 중요성	① 육아도 중요하지만 나의 인생도 소중히 여기고 싶다. ② 아이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 인생을 희생할 수 있다.
2) 엄마의 직접 양육의 중요성	① 아이가 3세가 될 때까지는 엄마가 키우는 것이 가장 좋다. ② 엄마가 항상 곁에 없더라도 애정을 갖고 키우면 크게 상관없다.
3) 아이 의사 존중 여부	① 아이의 교육은 부모가 판단해서 선택하는 것이 좋다. ② 아이의 교육은 아이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좋다.
4) 훈육방법	① 버릇없이 굴 때에는 매질을 해서라도 야단치는 것이 좋다. ② 버릇없이 굴 때에는 스스로 깨달을때까지 말로 타이르는 것이 좋다.
5) 아이의 능력 개발	① 아이의 능력은 선천적으로 정해져 있다. ② 아이는 자라는 환경에 따라 후천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9. 자녀 양육시 느끼는 정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어떻게 느끼시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않다	별로 그렇지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아이를 키우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2) 아이양육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혼란스럽다.				
3) 아이가 귀찮고 짜증스러울 때가 많다.				
4) 아이가 장래에 잘 성장할지 걱정된다.				

10. 현재 생활 및 자녀양육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항목	매우 불만족스럽다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약간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1)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도				
2) 현재 자녀성장에 대한 만족도				

IV. 현재 한국에서 자녀 양육 현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11. 다음의 사항이 한국의 또래 아이들과 비교해서 귀댁 자녀에게 충분히 제공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한국의 학부모와 비교해서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이 충분히 제공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매우 불충분	불충분한편	충분한편	매우 충분
아동				
1) 안정된 보호(기본적 돌봄)				
2) 성장에 필요한 영양(균형잡힌 영양소 섭취)				
3) 아플 때 진료				
4) 예방접종				
5) 교육				
부모				
6) 양육 관련 정보				
7) 자녀양육 관련 상담				

12. 귀하가 한국에서 자녀를 키우면서 직면하는 어려움들 중 두 가지를 꼽는다면 무엇입니까?
(※ 어려움이 없는 경우는 9번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가장 어려운 점
1) 양육비용이 많이 듦	1순위: _____ 2순위: _____
2) 병원비가 많이 듦	
3) 부모(또는 주양육자)가 바빠서 자녀와 지내는 시간이 부족	
4) 아이가 또래와 어울리지 못하는 것	
5) 아이 학업의 어려움	
6) 아이 장애에 대한 불안	
7) 정보의 부족	
8) 기타:()	
9) 특별히 없음	

13. 지난 상반기 동안 귀 가정이 NGO 단체나 기관 및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던/지원받고 있는 양육 비용이나 물품, (상담) 서비스 등이 있습니까? 있다면 모두 적어주세요.

- ① 없다 → 14번 질문으로 ② 있다

구 분	어디로부터 (제공기관)	누구에게 (대상)	무엇을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빈도/기간 (예: 1주에 2회)
	① NGO단체 ② 보육시설 ③ 유치원 ④ 종교기관 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⑥ 외국인 지원기관 ⑦ 기타: (기입해주세요)	① 자녀 ② 부모 ③ 가족		
1) 주거				
2) 식품 등 식생활				
3) 의류				
4) 보건의료				
5) 교육, 보육				
6) 상담, 정보				
7) 자조, 친교모임				
8) 기타				

14. 한국에서 자녀를 키우면서 육아정보를 주로 어디에서 얻습니까?
 ① TV, 인터넷 매체 등 ② 종교단체 ③ 주변 이웃 ④ 공공기관(동사무소, 보건소 등)
 ⑤ 조부모 및 친인척 ⑥ 기타(무엇: _____) ⑦ 없음
15. 자녀를 키우고 가르치는데 필요한 정보가 충분합니까?
 ① 매우 부족 ② 약간 부족 ③ 약간 충분 ④ 매우 충분
16. 자녀를 키우면서 한국정부에 가장 바라는 지원은 무엇인지 두 가지를 꼽는다면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이 없는 경우는 9번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가장 바라는 점
1) 보육시설·유치원 이용시 비용 지원 2) 출산 비용 지원(출산 전 진료비 포함)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 무료 예방접종 4) 일반 진료비 지원	
5) 동포/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설립	
6) 정보 제공 및 상담 7) 동포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8) 기타(무엇: _____)	
9) 특별히 없음	

17. 자녀가 한국에서 계속 살기를 바라십니까?
 ① (한국)국적 취득만 된다면 한국에서 계속 살게하고 싶다.
 ② 돈을 벌어서(또는 학업을 마치고) 다시 중국에 갈 계획이므로 한국에서 계속 키울 의향은 없다
 ③ 기타(_____)

V. 한국에 있는 ‘영유아’ 자녀 개개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 자녀의 번호와 연령을 먼저 기록합니다.
 한국에 있는 영유아 자녀(0~만5세)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가장 나이가 어린 자녀부터 작성하고, 그 다음으로 어린 아동의 순으로 반복하여 조사합니다.

**18-33. (한국거주 가장 어린 자녀)
 응답 대상 아동은 문 1-1)의 ()번 아동으로 연령은 만 ()세**

18. 귀하는 이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또한 다음 중 자녀를 주로 돌봐주는 사람(주양육자)은 누구입니까?
 또 부모가 돌보지 않을 경우 돌보는 사람에게 지불하는 비용은 월 얼마입니까?

구 분	보기
1) 동거여부	① 동거 ② 비동거
2) 주로 돌보는 사람	① 모 ② 부 ③ 부모의 형제자매 ④ 친조부모 ⑤ 외조부모 ⑥ 기타 친인척 ⑦ 비혈연 ⑧ 혼자 지냄
2-1) 돌보는 사람에게 지불하는 비용	월 평균 _____원

19. 현재 이 아이가 반일 이상 일정하게 다니고 있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기관명을 기록하고 기관유형을 골라주세요.

기관명: _____

- ① 국·공립보육시설 ② 사회복지법인 보육시설 ③ 기타 민간보육시설
 ④ 국공립유치원 ⑤ 사립유치원 ⑥ 선교원
 ⑦ 반일제 이상학원 ⑧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⑨ 없음 → 문 19-1)

19-1) 자녀를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등에 보내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아직 어려서 적응하기 힘들까봐
- ② 비용이 부담돼서
- ③ 보낼 만한 마땅한 기관이 없어서
- ④ 돌봐줄 사람(대리 양육자)이 있어서
- ⑤ 모(또는 부)가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미취업 등)
- ⑥ 기타(무엇:_____)

20. 현재 이용하고 있는 시간제 사교육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사 교육	어떤 내용/과목 (예: 피아노, 영어, 언어치료 등)	주당 이용횟수	월 비용
1) 학원		회	천원
		회	천원
2) (방문)학습지		회	천원
		회	천원
3) 구민회관이나 문화센터 프로그램		회	천원
		회	천원
4) 기타 교육		회	천원

21. 귀하가 보시기에 자녀의 발달 상태는 같은 연령의 또래에 비해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매우 부족	부족	충분	매우 충분
1) 신체발달				
2) 언어 발달				
3) 인지 발달				
4) 정서 발달				
5) 사회성 발달				

22. 귀하가 보시기에 같은 연령의 또래에 비하여 이 자녀의 한국어와 중국어 사용 능력은 어떠합니까?

구 분	전혀 못함	매우 부족	부족	충분	매우 충분
1) 한국어					
2) 중국어					

※ 이 아이가 현재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등 기관에 다니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위의 문 21번 질문에서 ① ~ ⑧ 에 응답한 경우입니다

23. 자녀를 한국의 보육시설이나 유치원(또는 기타 기관)을 보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순위_____ 2순위_____

- ① 자녀의 교육차원에서
- ② 자녀에게 친구를 사귀게 해 주고 싶어서
- ③ 부모 취업 등으로 돌볼 사람이 없어서
- ④ 비용부담이 적어서
- ⑤ 기타(무엇:_____)

24. 현재 다니고 있는 기관 이전에 (한국에서) 다른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25. 한국에서 현재 기관을 처음 이용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만_____세 (생후 _____개월) 때

26. 현재 이용하는 기관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신 점 2가지는 무엇입니까?

1순위_____ 2순위_____

- ① 집과의 거리 ② 교육·보육 프로그램 ③ 실내·외 환경 ④ 원장 및 교사
- ⑤ 비용 ⑥ 급·간식 ⑦ 운영시간(방학기간 등) ⑧ 주변의 소개
- ⑨ 평가인증 여부 ⑩ 잘 모르고 선택했음 ⑪ 기타(적어주세요: _____)

27. 현재 다니고 있는 기관(탁아소, 유치원)에서 하루에 자녀가 보내는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평일 하루 _____시간 _____분 정도

28. 현재 다니고 있는 기관(보육시설, 유치원 또는 기타 기관)에 매월 지불하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월 평균 _____원

28-1) 귀 자녀는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어떤 ‘특별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모두 적어주세요.
 _____ (총 _____개)

28-2) 보육시설/유치원에 지불하는 비용 중 순수 교육비/보육비 외에 ‘특별활동’을 위해 지불하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월 평균 _____원

29. 혹시 보육시설, 유치원 또는 기타 기관을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고 있습니까? 지원 받는다면 어디로부터 얼마를 지원받고 있습니까? (미지원시 0원이라 기입하십시오)

(_____)로부터 월 평균 _____원을 지원 받음

30. 현재 다니고 있는 기관(보육시설, 유치원 또는 기타 기관)에 매월 지불하는 비용은 가정에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 ①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②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 ③ 적당하다 ④ 부담되는 편이다 ⑤ 매우 부담된다

31. 현재 다니고 있는 기관(보육시설, 유치원)에서 이 자녀에게 외국인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원되는 프로그램이나 혜택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알고 계신 대로 써 주세요

- ① 있다(무엇: _____) ② 없다

32. 이 자녀는 현재 다니고 있는 기관(보육시설, 유치원 또는 기타 기관)의 교사나 또래들과 잘 적응합니까?

구 분	보 기			
교 사	① 매우 잘 적응함	② 비교적 잘 적응함	③ 잘 적응하지 못함	④ 모르겠음
또 래	① 매우 잘 적응함	② 비교적 잘 적응함	③ 잘 적응하지 못함	④ 모르겠음

33. 귀하는 현재 다니고 있는 기관(보육시설, 유치원)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 ① 매우 불만족스럽다 ② 약간 불만족스럽다 ③ 어느 정도 만족한다 ④ 매우 만족한다

VI. 현재 또는 과거에 중국에 영유아 자녀를 두고 온 경험이 있는 부모 대상 질문입니다.
 (※ 1번 질문의 9-1) 부모 최초입국시 ②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34. 중국에 자녀를 두고 온 경험 구분입니다, 해당하는 난에 표시해 주세요
 과거에 중국에 자녀를 두고 온 적이 있었음 현재 중국에 자녀를 두고 있음
35. 중국에서 자녀를 주로 돌봐주는 사람(주양육자)은 다음 중 누구입니까/누구였습니까?
 ① 모 ② 부 ③ 부모의 형제자매 ④ 친조부모
 ⑤ 외조부모 ⑥ 기타 친인척 ⑦ 비혈연 ⑧ 혼자 지냄 ⑨ 기타(누구:_____)
36. (중국에서) 자녀가 다니고 있는 육아지원기관(탁아소, 유치원)은 무엇입니까/무엇이었습니까?
 ① 탁아소 ② 유치원 ③ 기타(무엇:_____) ④ 다니고 있지 않음 → 문 42)로
37. 중국에 있는 자녀를 육아지원 기관(탁아소, 유치원)에 보낸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모(또는 부)가 한국에 일하러 가서 낮 시간에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② 돌봐줄 대리양육자는 있지만 자녀의 교육·보육 차원에서
 ③ 자녀에게 친구를 사귀게 해 주고 싶어서
 ④ 의무적으로 가야하므로
 ⑤ 기타(무엇:_____)
38. 중국에서 육아지원기관(탁아소, 유치원)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① 집과의 거리 ② 비용 ③ 프로그램 ④ 원장·교사의 자질 ⑤ 시설·설비
 ⑥ 급·간식 ⑦ 주변의 평판 ⑧ 운영시간 ⑨ 기타(무엇:_____)
39. 육아지원기관(탁아소, 유치원)에 매월 지불하는 비용은 얼마정도입니까?
 (※ 한국 화폐 기준으로 환산해서 기입해 주세요) 월 평균 _____원
40. 육아지원기관(탁아소, 유치원)에서 평일 하루에 자녀가 보내는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평일 평균 _____시간
41. 아이가 다니는 육아지원기관(탁아소, 유치원)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매우 불만족스럽다 ② 약간 불만족스럽다 ③ 어느 정도 만족한다 ④ 매우 만족한다
42. 한국 정부가 외국국적의 해외동포 자녀에게 육아지원정책을 실시한다면(예: 비용지원 등) 귀하가 한국에 있는 동안, 자녀를 데리고 와서 함께 지낼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 문 42-1) ② 없다(설문이 종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③ 해당되지 않음
- 42-1) 있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

— 끝까지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 2.

중국 조선족 자녀양육 실태조사

I. 부모 및 가구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부		모	
	만	세	만	세
다음은 부모님에 관한 질문입니다.				
1. 부모님의 나이는 몇 세입니까?				
2. 부모의 민족을 표시해 주세요. ① 조선족 ② 한족 ③ 기타(_____)				
3. 부모의 학력을 표시해 주세요. ① 무학 ② 소학교 ③ 초급중학교 ④ 고급중학교 ⑤ 대학(3년제 이하) ⑥ 대학교(4년제 이상) ⑦ 대학원 이상 ⑧ 비해당(부재)				
4. 현재 거주 국가는 어디입니까? ① 중국 ▶ 4-1로 가십시오. ② 한국 ③ 기타(_____)				
4-1. 과거 한국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5. 현재 어떤 일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6. 현재 월평균 가구소득은 어느 정도이십니까?(인민폐 기준)	월 _____		만원	
7. 총 자녀수는 몇 명입니까?				
8. 다음 중 해당되는 가족유형에 표시해 주세요. ① 부모와 자녀 ② 아버지와 자녀 ③ 엄마와 자녀 ④ 조부모와 자녀 ⑤ 친인척과 자녀 ⑥ 기타				

II. 자녀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녀 1 (가장어린자녀)		자녀2	
	만	세	만	세
다음은 영유아 자녀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자녀의 나이는 몇 세입니까?				
2. 자녀의 출생국가를 표시해 주세요. ① 중국 ② 한국 ③ 기타(_____)				
3. 자녀의 성별을 표시해 주세요. ① 남자 ② 여자				
4. 한국에 살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① 현재 살고 있음 ② 과거 경험 있음 ③ 없음				
※ 다음 문항 5번에서 7번까지는 현재 중국에 사는 아동에게만 질문합니다.				
5. 이 아이는 주로 누가 키우고 있습니까? ① 모 ② 부 ③ 조부모 ④ 조부모외 친인척 ⑤ 기타(_____)				
5-1.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돌봐주는 경우에만 질문) 이 분에게 월평균 얼마 정도를 지불하고 계십니까? (인민폐 기준)	_____	만원	_____	만원
6. 이 아이가 현재 다니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까? 있다면 해당 기관에 표시해 주세요. ① 조선족유치원 ② 조선족탁아소 ③ 한족유치원 ④ 한족탁아소 ⑤ 조선족·한족연합 유치원 혹은 탁아소 ⑥ 없음				

6-1. (탁아소, 유치원 등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만 질문) 월평균 얼마정도를 지불하고 계십니까?(인민폐 기준)	_____만원	_____만원
7. 이 아이는 현재 사교육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다면 사교육 종류수와 월평균 비용을 기입해 주세요(인민폐 기준).	_____종 _____만원	_____종 _____만원

IV. 부모님의 자녀양육 방식과 가치관에 관한 질문입니다.

1. 다음은 자녀양육관에 대한 문항입니다. 각 구분에서 제시된 두 보기 중 본인이 생각하는 바와 더욱 일치하는 것 **하나**를 선택해주시시오.

구 분	보 기
1-1. 육아와 나의 인생의 중요성	① 육아도 중요하지만 나의 인생도 소중히 여기고 싶다. ② 아이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 인생을 희생할 수 있다.
1-2. 엄마의 직접 양육의 중요성	① 아이가 3세가 될 때까지는 엄마가 키우는 것이 가장 좋다. ② 엄마가 항상 곁에 없더라도 애정을 갖고 키우면 크게 상관없다.
1-3. 아이 의사 존중 여부	① 아이의 교육은 부모가 판단해서 선택하는 것이 좋다. ② 아이의 교육은 아이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좋다.
1-4. 훈육방법	① 버릇없이 굴 때에는 매질을 해서라도 야단치는 것이 좋다. ② 버릇없이 굴 때에는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말로 타이르는 것이 좋다.
1-5. 아이의 능력 개발	① 아이의 능력은 선천적으로 정해져 있다. ② 아이는 자라는 환경에 따라 후천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1-6. 부모의 양육기관 선택 기준	① 조선족인 만큼 아이를 조선족탁아소 혹은 유치원에 보내고 있다. ② 아이의 장래를 위하여 아이를 한족탁아소 혹은 유치원에 보내고 있다. ③ 한족, 조선족 상관없이 집과 가까운 탁아소 혹은 유치원을 택한다

2. 자녀 양육시 느끼는 정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어떻게 느끼시는지 응답해주시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2-1. 아이를 키우면서 내 자신도 성장하고 있음을 느낀다.				
2-2. 아이양육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혼란스럽다.				
2-3. 아이가 귀찮고 짜증스러울 때가 많다.				
2-4. 아이를 키우면서 참고만 사는 것 같다.				
2-5. 아이를 키우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2-6. 아이에게 화풀이하고 싶어질 때가 많다.				
2-7. 아이가 장래에 잘 성장할 지 걱정된다.				

3. 현재 생활 및 자녀양육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항목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3-1.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도				
3-2. 현재 자녀성장 모습에 대한 만족도				

4. 현재 중국내 양육기관(탁아소, 유치원)에 대한 평가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어떻게 느끼시는 지 말씀해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4-1. 아이가 다니고 있는 유치원(탁아소)은 시설은 비교적 우월하다.				
4-2. 양육기관의 선생님들의 수준은 비교적 높다				
4-3. 양육기관의 활동프로그램은 다양하며 아이들의 적성에 맞는다				
4-4. 전체적으로 보아 당지의 조선족유치원은 한족유치원에 비해 차하지 않다				

IV. 부모만 현재 한국에 거주하거나 과거 거주 경험이 있는 경우만 질문합니다.

1. 한국에 거주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취업 ② 유학 ③ 친인척 방문 ④ 기타

2. 귀하의 자녀는 누가 키웠습니까(또는 키우고 있습니까)?

- ① 아이의 엄마 ② 아이의 아빠 ③ 조부모
④ 조부모 외 친인척 ⑤ 기타(적어주세요_____)

3. 현재(또는 과거에) 자녀를 한국에 데려가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자녀가 너무 어려서
② 한국에서 자녀양육을 도와 줄 사람이 없어서
③ 중국에서 지내는 것이 아이에게 더 좋을 것 같아서(정서적, 언어적으로)
④ 한국에서 자녀를 양육하기에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아서
⑤ 데려가고 싶었으나 비자 등 제도적으로 데려갈 수 없어서
⑥ 기타(적어주십시오_____)

4. 부모와 떨어져 생활한 것이 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가구 경제에는 도움이 되지만 자녀의 성장·발달에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② 조부모 혹은 친인척이 잘 키워준다면 아이의 성장·발달에 크게 영향이 없다
③ 경제적으로도 아이의 성장에도 별로 좋은 점이 없다.
④ 부모의 출국은 결국 소 잃고 외양간고치기
⑤ 기타(적어주십시오_____)

구 분	어느 기관으로 부터	무슨 지원
12-1. 주거		
12-2. 식품 등 식생활		
12-3. 의류		
12-4. 보건의료		
12-5. 교육 및 보육		
12-6. 상담 및 정보		
12-7. 친교 및 자조모임		

VI. 한국의 육아정책제도 및 기관에 대한 이해와 요구-응답자 모두에게 질문합니다.

- 만약 조건이 허락된다면 아이를 한국의 탁아소 혹은 유치원에 보내고 싶은 생각이 있으십니까?
 ① 보내고 싶다 ② 보내지 않겠다 ③ 상황에 따라 판단하겠다 ④ 잘 모르겠다
- 출국경험 및 드라마, 뉴스 등 매체를 통해 한국의 양육기관(탁아소, 유치원)에 대해 가장 부러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① 훌륭한 시설 ② 다양한 활동프로그램 ③ 선생님들의 수준
 ④ 비용지원 ⑤ 기타(적어주십시오_____)
- 만약 한국의 지원을 받는다면 어떤 방면의 지원이 필요할까요?
 ① 조선족탁아소, 유치원의 시설 개선 ② 다양한 활동프로그램지원
 ③ 선생님들의 연수활동지원 ④ 기타(적어주십시오_____)
- 중국동포로서 한국의 육아지원제도 및 정책 수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육아지원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에게 바라는 정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면접후 기록**

응답자 이름		응답자 연락처	
자녀와의 관계			

Abstract

Policy Development for supporting the childrearing Chosun-jok families in Korea

Suh, Moon-hee

Lee, Yoon-jin

Lee, Jung-won

Kim, Jin-kyung

Choi, Yoon Kyung

Park, Keum-hye

As the migration for employment in Korea increased in the Chosun-jok society, their family life and economic pursuits have dramatically changed. One of the most notable changes is family separation and the disintegration of their family functioning. The statistics show that the percentage of children separating from their parents was approximately 70% in the school-aged children. Their relationship with parents were disrupted and they suffered from lack of emotional attachment and educational support from parents.

This study's aim is to overview the current state of Chosun-jok family life, both in Korea and China, especially the lives of those who are rearing young children aged from zero to five. Through the overall picture of their daily challenges and struggles, this study sought to draw out the key issues and concerns of childrearing and the family functioning of the Chosun-jok families, specifically those residing in Korea. The most crucial demands of the Chosun-jok families are (1) bringing up of the children itself and (2) financial difficulties.

The investigations were implemented through the method of survey and in-depth interviews, both in Korea and China. The survey results showed that their employment rate is quite high and the portion of dual-income families is also substantial; more than 50%. However, the job description is mostly limited to the manual labor sector on temporary base. Thus, the majority of the Chosun-jok families in Korea are suffering from low income adversities, high cost in childrearing, child care, education, housing, and especially in having no medical insurance benefits. Also, the illegal alien status of parents directly influence on the quality of young children's development detrimentally and continue to affect the child's future.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e policy implications as follows: firstly, the policies should secure the children's education and child care. It should also be required that the stateless status of the parents not be transferred to the child. This is be a mandatory effort of the Korean government to abide by the UN Conventions on the Child's Right for Education a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s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Migrant Families. Also the child care subsidy should be gradually applied to the Chosun-jok children, equal to the financial supports for the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Secondly, the medical services and health care, such as immunizations, need to be set as a service for all children, irrespective of their nationality and membership of medical insurance. There should be open doors to medical insurance for the Chosun-jok families. Thirdly, the activities of non-government organizations for the Chosun-jok families should be more encouraged and diversified by coworking with the government delivery systems. Fourth, the information on child care services and counseling need to be more actively provided. Ultimately, the Chosun-jok children and their families need to be treated like any other Korean citizen because they are invaluable human resources for our future society and also because they were one of us in the past.